

제고를 위한 장애인식  
개선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교육과정  
운영 연구

2013. 12

제고를 위한 장애인식  
개선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교육과정  
운영 연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3. 12.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박 은 수  
연 구 원 안 성 배  
                  은 종 균  
보조 연구원 박 종 미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법원행정처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차례

제1장. 연구 개요 .....	1
1. 연구 목적 및 배경 .....	1
1) 장애인 복지 및 인권 관련 법률의 ‘교육 의무화’ 규정 .....	1
2) 장애인식 개선 및 인권보장을 위한 법원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 에 부응하는 연구의 필요성 .....	2
3) ‘약자친화’적 사법부의 상 정립에 기여 .....	7
4) 장애인식 개선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과정 연구 필요성 .....	7
5) 교육과정 개발 후 사법부의 장애인식 개선교육에 실제로 적용 .....	8
2. 연구방법론 및 추진 과정, 업무 분장 내역 .....	8
1) 연구 방법론 .....	8
(1) 국내외 문헌조사 .....	8
(2) 국내외 인식개선교육 실태, 교육 내용 및 성과 조사 .....	8
(3) 교육 실시 후 성과 조사 및 분석 .....	9
2) 연구 추진과정 .....	9
3) 연구 업무분장 내역 .....	10
3. 연구 범위 .....	10
1)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 절차 및 사법지원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 장애인식 개선교육 프로그램 개발 .....	10
2) 효율적, 효과적인 장애인식 개선교육 내용 연구개발 .....	11
3)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시 및 평가 .....	11
제2장. 유사 선행 연구 고찰 .....	12
1.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장애인개발원, 2008) .....	12
1) 주요 내용 .....	12
2) 평가 .....	14
2. <장애인을 위한 사법지원에 관한 정책 연구>(법원행정처, 2012) .....	15
1) 주요 내용 .....	15

2) 평가 .....	17
3.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자료>(서울특별시, 2012) .....	18
1) 주요 내용 .....	18
2) 평가 .....	18
<b>제3장.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b>	<b>20</b>
1. 장애인식 개선교육의 법적 근거 .....	20
2. 장애인식 개선교육 시행 실태와 문제점 .....	20
1) 장애인식 개선교육 시행 실태 개괄 .....	20
2) 국무총리 비서실, 국가보훈처 .....	21
3) 법무부 및 그 소속 기관 .....	21
4) 사회정책 관련 정부 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	22
(1)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시 현황 .....	22
(2) 교육부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시 현황 .....	23
5) 주요 공공기관 : 금융,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등 제반 사회 분야 .....	24
3. 장애인식 개선교육의 문제점과 시사점 .....	24
1) 현행 장애인식 개선교육의 문제점 .....	24
2) 시사점 .....	25
<b>제4장. 미국 법원의 장애인 사법접근성 제고 사례 .....</b>	<b>27</b>
1. 미국 법원의 장애인 서비스 지원과 ADA법 .....	27
2. 미국 법원의 장애인 코디네이터(ADA Site Coordinator) .....	29
<b>제5장.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식 개선 시범교육 준비</b>	
<b>과정과 교육 내용 .....</b>	<b>34</b>
1. 장애인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식 개선교육 주요 내용 .....	34
2. 장애인식개선 시범교육 개요 .....	34
3. 교육 준비 과정 및 절차 .....	36
4. 교육 형식 .....	39
5. 교육의 주요 내용 .....	40

1) 강사 소개 .....	40
2)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제 사례 1 - 용어 .....	42
3) 장애인 차별의 실제 사례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	43
4) 오늘의 주제 : 장애인 등 소수자 권익보호는 법원의 사명 .....	44
5) 장애도 하나의 개성에 불과 .....	46
6) 장애인에게 편리하면 모두에게 편리하다 : 유니버설 디자인 사례 .....	49
7) 장애인식 개선의 필요성 : 소수자 권리 보호와 사법부의 역할 .....	51
8)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사실 안내 및 활용 당부 .....	51
9) 장애체험 권고 .....	52
10) 마무리 : 설문조사 협조 당부 및 감사 인사 .....	53

## 제6장. 장애인식 개선 시범교육 실시 결과 분석 ..... 54

1. 설문조사의 설계 .....	54
2.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	54
3. 조사 결과 및 분석 .....	56
1) 교육 참여 동기 .....	56
2) 법정 의무교육 사전 인지 여부 .....	58
3) 교육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 .....	59
4) 법원 직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	60
5)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사전 인지 여부 .....	63
6) 교육확대 필요성 여부 .....	64
6-1) 교육확대가 필요한 이유 .....	65
7) 장애인식 개선교육 효과성 평가 .....	66
8) 교육 집중도 평가 .....	67
9) 교육에서 좋았던 점 .....	69
10) 보완해야 할 점 .....	71
11) 인구통계학적 측면 .....	71

## 제7장.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식 개선교육 프로그램 제작 표준 매뉴얼 ..... 73

1. 교육 준비와 기획 .....	73
2. 강사진 및 실무진 섭외 .....	73
3. 교육 내용 준비 및 주요 교육 내용 : 시나리오와 교본(PPT) 제작 ..	74
4. 사전 답사 .....	75
5. 교육 시행 .....	76
6. 장애인식 개선교육 표준 프로그램 : 교육에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	76
1) 강사 소개 .....	77
2)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제 사례 1 - 용어 .....	77
3) 장애인 차별의 실제 사례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	77
4) 장애인에 대한 기본 이해 및 현황 .....	78
(1) 장애의 개념과 범주 및 유형 .....	78
(2) 등록 장애인 현황 .....	79
5) 장애 유형별 특성 및 각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사법지원의 내용 및 장애인 민원 응대 요령 .....	80
(1) 시각장애 .....	82
(2) 청각장애 .....	83
(3)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	84
(4) 발달장애 .....	86
(5) 정신장애 .....	88
6) 장애인 등 소수자 권익보호는 법원의 사명이라는 점 .....	92
7) 장애도 하나의 개성에 불과하다는 점 .....	93
8) 장애인에게 편리하면 모두에게 편리하다는 점 : 유니버설 디자인 사례 ...	93
9) 장애인식 개선의 필요성 : 소수자 권리 보호와 사법부의 역할 .....	93
10)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사실 안내 및 활용 당부 ...	94
11) 장애체험 권고 및 감사말씀과 마무리 .....	94
7. 교육 성과 측정 및 평가 .....	95
<b>제8장. 결론 및 제언 .....</b>	<b>96</b>
1.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식 개선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교 육 시행방안 .....	96

1)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식 개선교육 시행의 필요성 .....	96
2)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태와 문제점 .....	96
3) 효과적인 장애인식 개선교육의 시행 절차와 형식 .....	96
2.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식 개선교육 표준 프로그램(안) .....	97
3. 정책적 제언 .....	98
4. 연구의 활용 .....	98
<b>참고 문헌</b> .....	<b>100</b>
<b>부록 1. 법무부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시현황(최근 3년간)</b> .....	<b>1</b>
<b>부록 2. 미국법원(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고등법원) 홈페이지 번역(일부)</b> .....	<b>21</b>
Central Justice Center .....	21
Harbor Justice Center Laguna Hills .....	26
West Justice Center .....	44
<b>부록 3. 장애인식 개선 시범교육 PPT</b> .....	<b>48</b>
<b>부록 4. 장애인식 개선교육 설문조사</b> .....	<b>64</b>
<b>부록 5. 장애인식 개선교육 설문조사 통계표</b> .....	<b>67</b>
<b>부록 6. 유형별/등급별 등록장애인 현황</b> .....	<b>76</b>

## <표 차례>

<표 1> 장애인복지법 및 장차법 상 교육 의무화 근거 조항 .....	1
<표 2> 영화 <도가니> 사태 이후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민의식 향상을 보여주는 경찰청 자료 .....	3
<표 3> 영화 도가니 사태가 사법부에 끼친 영향과 관련된 언론 보도 .....	5
<표 4> 연구용역을 수행할 인력 및 업무 분장 내용 .....	10
<표 5>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의 장애인식 개선교육 시행 실태 .....	22
<표 6> 미국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장애인 시설 안내' 내용 .....	27
<표 7> 미국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장애인 서비스 안내' 내용 .....	28
<표 8> 미국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미국장애인법(ADA)' 소개 내용 .....	29
<표 9> 미국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및 회신 안내	



문' 내용 .....	31
<표 10> 미국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편의제공 서비스 신청 안내' 내용 ·	33
<표 11> 장애인식개선 시범교육 개요 .....	34
<표 12> 법원 사전 답사 시 조사 체크 사항 서식 .....	36
<표 13> 시범교육 '강사 소개' 부분 대화 내용 .....	41
<표 14> 시범교육 '장애인 차별사례 - 용어' 대화 내용 .....	42
<표 15> 시범교육 '장애인 차별의 실제 사례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 식' 부분 대화 내용 .....	44
<표 16> 시범교육 '장애인 등 소수자 권익보호는 법원의 사명' 부분 대화내용 ···	45
<표 17> 시범 교육 '장애도 하나의 개성' 부분 대화 내용 .....	47
<표 18> 시범교육 '장애인에게 편리하면 모두에게 편리하다' 부분 대화 내용 ···	49
<표 19> 시범교육 '소수자 권리 보호와 사법부의 역할' 부분 대화내용 ···	51
<표 20> 설문조사 조사 설계 항목 .....	54
<표 21> 교육참여 동기 복수응답 빈도표 .....	57
<표 22> 법정 의무교육 사전 인지 여부 빈도표 .....	58
<표 23> 교육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 복수응답 빈도표 .....	60
<표 24> 법원직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복수응답 빈도표 .....	61
<표 25> 교육확대가 필요한 이유 복수응답 빈도표 .....	65
<표 26> 장애인식 개선교육 효과 평가 인구통계학적 변수 적용 교차 빈도 비교표 .....	67
<표 27> 교육 집중도 평가 인구통계학적 변수 적용 교차 빈도 비교표 ···	68
<표 28> 교육에서 좋았던 점 복수응답 빈도표 .....	70
<표 29> 교육에서 좋았던 점 인구통계학적 변수 적용 교차 빈도 비교표 ··	70
<표 30>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	78
<표 31> 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	80
<표 32> 장애유형별 사법지원의 내용 .....	81
<표 33> 장애인복지법상 시각장애인의 정의와 유형 .....	82
<표 34>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상 청각장애인의 정의와 유형 .....	83
<표 35>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상 지체장애인의 정의와 유형 .....	84
<표 36>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상 뇌병변장애인의 정의 .....	85

<표 37>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상 발달장애인의 정의와 유형 ..... 86  
 <표 38>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 상 정신장애인의 정의와 유형 ... 88

##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추진 과정 ..... 9  
 <그림 2>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고등법원 1층 평면도 ..... 27  
 <그림 3> MC-410 양식 영문 견본 ..... 30  
 <그림 4> 대법원 현장 답사 사진 ..... 37  
 <그림 5> 서울중앙법원 사전답사 시 휠체어 접근성 점검 사진 ..... 38  
 <그림 6> PPT 견본 : 강사 소개 ..... 40  
 <그림 7> PPT 견본 : 장애인차별 사례 - 용어 ..... 42  
 <그림 8> PPT 견본 : 장애인 등 소수자 권리보호는 법원의 의무 ..... 45  
 <그림 9> PPT 견본 : 장애인식개선 - 장애도 개성 ..... 47  
 <그림 10> PPT 견본 : 장애인에게 편리하면 모두에게 편리하다 ..... 49  
 <그림 11> PPT 견본 :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안내 ..... 52  
 <그림 12> 2013년 11월에 실시된 광주고법의 장애체험 모습 안내 ..... 53  
 <그림 13> 교육참여 동기 그래프 ..... 57  
 <그림 14> 법정 의무교육 사전인지 여부 그래프 ..... 58  
 <그림 15> 교육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 그래프 ..... 59  
 <그림 16> 법원직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그래프 ..... 61  
 <그림 17> 법원직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1순위 그래프 ..... 62  
 <그림 18> 법원직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2순위 그래프 ..... 62  
 <그림 19> 법원직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3순위 그래프 ..... 63  
 <그림 20> '가이드라인' 발간 사전인지 여부 그래프 ..... 64  
 <그림 21> 교육확대 필요성 여부 그래프 ..... 64  
 <그림 22> 교육확대가 필요한 이유 그래프 ..... 65  
 <그림 23> 장애인식 개선교육 효과 평가 그래프 ..... 66  
 <그림 24> 교육집중도 평가 그래프 ..... 68  
 <그림 25> 교육에서 좋았던 점 그래프 ..... 69  
 <그림 26> 보완해야 할 점 그래프 ..... 71

<그림 27> 성별 응답자 그래프 .....	72
<그림 28> 연령대별 응답자 그래프 .....	72
<그림 29> 근무연수별 응답자 그래프 .....	72

# 1장. 연구 개요

## 1. 연구 목적 및 배경

### 1) 장애인 복지 및 인권 관련 법률의 '교육 의무화' 규정

현행 <장애인복지법>(1981년 제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법 제25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2007년 제정, 이하 <장차법>)에서도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 차별 금지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법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7조 등).

<b>&lt; &gt; 상 장애인식 개선교육 의무화 근거 조항</b>
<u>25조(사회적 인식개선)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u>
②국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생략)
<b>&lt;장차법&gt; 상 장애인 차별금지교육 의무화 근거 조항</b>
제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 ①~④ (생략)
<u>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교육·지원·감독하여야 한다.</u>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①~② (생략)
<u>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u>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② (생략)

③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⑤ (생략)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① (생략)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 1> 장애인복지법 및 장차법 상 교육 의무화 근거 조항

그러나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뿐만 아니라, 각급 법원 등 사법기관에서도 이처럼 법정 의무교육으로 명시돼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장애인 차별금지 교육을 거의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에 현행 법률을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할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서부터 장애인식 개선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2) 개선 및 인권보장을 위한 법원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에 부응하는 연구의 필요성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법원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2011년 영화 「도가니」 상영을 계기로 장애인의 사법절차 상 접근권 보장, 장애인 피해자 보호 문제 등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으로 부

상하였다. 이에 따라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상당히 높아졌고, 자연스럽게 소수자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아졌다.

실례로, 아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11년 영화 ‘도가니’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신고가 증가하면서 꾸준히 늘어 왔으며, 올해의 경우 검거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미검율이 2%에 불과할 뿐 아니라 전년 동기간과 비교하여 44.4%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가니> 사태 이후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민의식 향상을 보여주는 경찰청 자료]

: 경찰청, 2013.10.30

(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한국농아인협회.한국지체장애인협회.한국장애인부모회.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 공동)

지난 5월 충북 제천시에서 한 장애인단체로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가족의 문제가 제보되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지적장애를 가진 엄마와 누나, 남동생이 함께 생활하던 이 가족은 노숙자들을 데려와 집에 재우는 남동생의 이상행동으로 인해 엄마와 누나가 성폭력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

즉시 경찰은 관련 장애인단체 및 지자체와 대책을 마련하였다. 행동 치료를 위해 남동생을 의료시설에 입소시키는 한편 누나는 보호시설로 안내하여 학업 및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혼자 남게 된 엄마는 고향집으로 인계하여 아들의 치료가 끝날 때까지 지내도록 하였다. (중략)

이 같은 일은 모두 그동안 경찰청이 장애인협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서로 신뢰를 쌓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난 3월 경찰청과 장애인협회는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 성폭력 근절에 함께 나서기로 하였으며, 4월부터 6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장애인 시설 및 재가

여성에 대한 방문·홍보' 활동을 벌여 성폭력 피해 장애인 38명을 발견해 구조하기도 하였다.

또한 경찰은 장애인협회 및 지자체와 정기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으로 지난 정기회의에서 제기된 수화 통역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농아인협회와 협조) 지방청별로 전문수화 통역사 인력풀(총 109명)을 지난 9월 구축하였으며, 장애인에 대한 교육 강화와 지원 대책 마련 요구에 따라, 교육부 특수교육원과 함께 지적장애인용 성폭력 예방교육 애니메이션을 제작·배포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성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서'의 점자본도 제작 활용 중에 있다.

- ※ '성폭력 대책 협의회', 전국 267개 쏘 경찰관서에 2,741명으로 구성
- ※ 전문수화 통역사 인력풀, 16개 지방청별 7명 (부산청 4명) 구성 (총 109명)

이러한 민관 합동의 노력으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근절 활동이 강화되면서 장애인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

구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미검률(%)
'09년	293	288	1.7
'10년	321	294	8.4
'11년	494	462	6.5
'12년	656	626	4.6
'12.9월	473	456	<b>3.6</b>
'13.9월	647	634	<b>2.0</b>
전년대비	36.8% ↑	39.0% ↑	<b>44.4% ↓</b>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11년 영화 '도가니'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신고가 증가하면서 꾸준히 늘어 왔으며, 올해의 경우 검거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발생건 또한 증가하였으나 올해 9월까지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미검율이 2%에 불과할 뿐 아니라 전년 동기간과 비교하여 44.4%가 감소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거의 예외 없이 처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전

성폭력 미검율 8.9%, 강도 미검율 4.7%와 대비하여 낮은 수준임.

※ : '11년 494건→'12년 656건(+32.8%) / '12.9월 473건→'13.9월 647건 (+36.8%)

앞으로 경찰은 11월 초부터 하반기 '장애인 시설 및 재가 지적장애 여성 방문·홍보'를 실시하여, 아직 암수 범죄로 남아있는 피해사례들을 추가 발굴하는 등 장애인 성폭력을 지속적으로 엄단할 방침이며 상대적으로 성폭력을 당하기 쉬운 지적장애인의 피해사실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림카드 등을 활용한 의사소통 도구를 개발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도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주변 이웃들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하였다.

< 2> 영화 <도가니> 사태 이후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민의식 향상을 보여주는 경찰청 자료

[ 도가니 사태가 사법부에 끼친 영향과 관련된 언론 보도]

“ **성폭력 엄벌**” ... 法에도 ‘도가니 효과’

2011.11.14/국민일보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한 법원이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피해자 보호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성폭력에 대한 국민 법감정과 실제 재판결과에 괴리가 있다고 판단한 사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성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장 61명은 14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성범죄의 양형과 피해자 증인의 보호'를 주제로 비공개 토론회를 열어 성폭력 범죄의 재판방식과 양형에 관해 의견을 교



참석자들은 현재 법원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실무가 국민들의 법감정과 다소 거리가 있었다는 점과 향후 양형실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 사회 변화나 국민들의 의식 변화에 맞춰 기존의 양형관행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양형을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2011년 11월 14일	전국 성범죄 전담 재판장 세미나
17일	성범죄에 관한 일반·전문가 설문조사 착수
2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논의
29일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 개선방안 공개토론회
2011년 12월 1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확정 발표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양형에 반영함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성범죄 특성상 금전으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는데도 재판부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집행유예 선고의 결정적 사유로 삼는 경향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아동이나 장애인 또는 친족인 경우 연령이나 정신지체,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합의의 진정성이 의문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와 함께 재판장들은 공판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 절차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중략)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성범죄 양형기준 개선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일반인 1000명과 전문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양형위는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성범죄 양형기준을 논의해 다음 달 19일 권고형량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형위는 오는 29일 오후 4시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아동·장애인 성범죄 양형의 개선방안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에는 영화 '도가니'의 원작자인 공지영씨가 토론자로 참석해 소설을 쓰게 된 동기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아동·장애인 성범죄 실태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양형위 관계자는 "공개토론회는 국민이 바라는 바를 법원이 진솔하게 듣기 위한 소통의 자리"라고 말했다. 김재중 우성규 기자 jkim@kmib.co.kr

< 3> 영화 도가니 사태가 사법부에 끼친 영향과 관련된 언론 보도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재판절차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뿐 아니라 민원처리 등 법원 내 절차에서 소통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장애인과의 정확한 의사소통은 단지 장애인을 배려하는 친절함의 마음과 언행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

따라서 장애 유형별 특성과 표현 행위의 특징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장애인식 개선교육의 준비절차와 형식, 프로그램 및 내용 등에 관한 표준 매뉴얼을 제작해 둘 필요가 있다.

### 3) ‘약자친화’적 사법부의 상 정립에 기여

앞서도 언급했듯이 현행 <장애인복지법>, <장차법> 등에 존재하고 있는 장애인 인권 교육 관련 조항을 대법원과 각급 법원이 솔선수범하여 준수하는 것은 사법부의 위상을 제고하고, ‘약자친화’적 사법부 상 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법원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장애인식 개선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와 시범 교육 프로그램 시행을 병행함으로써 모범적이고 효율적·효과적인 장애인식 개선교육 시행이 가능해지는데, 이 또한 법원 직원들의 인권 의식 향상과 함께 ‘약자친화’적 사법부 상 정립에 적지 않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4) 장애인식 개선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과정 연구 필요성

현재는 정부와 민간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매우 드물게, 비정기적으로 장애인식 개선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사법부에서도 2012년 법원행정처 주관 아래 장애인식 개선교육(강원래 초청)을 시행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이 연구 결과를 실제 연구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 5) 개발 후 사법부의 장애인식 개선교육에 실제로 적용

이 연구를 통해서 사법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식 개선교육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각급 법원 및 사법 기관에 연구 결과물을 배포함으로써 대법원이 모범적이고 효과적인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선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향후 각급 법원에 교육프로그램 매뉴얼을 제작·배포 하는 기초 연구 자료로 본 연구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연구방법론 및 추진 과정, 업무 분장 내역

### 1) 연구 방법론

#### (1) 국내외 문헌조사

본 연구에서는 우선 <장애인복지법>(1981), <UN장애인권리협약>(2006), <장차법>(2007) 등 장애인식 개선 및 권익보호와 관련된 기존의 법제도와 연구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식 개선교육 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장애인개발원, 2008), <장애인을 위한 사법지원에 관한 정책 연구>(법원행정처, 2012),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자료>(서울특별시, 2012) 등 유사 연구와 문헌자료를 분석·정리하여 연구에 임하였다.

#### (2) 국내외 인식개선교육 실태, 교육 내용 및 성과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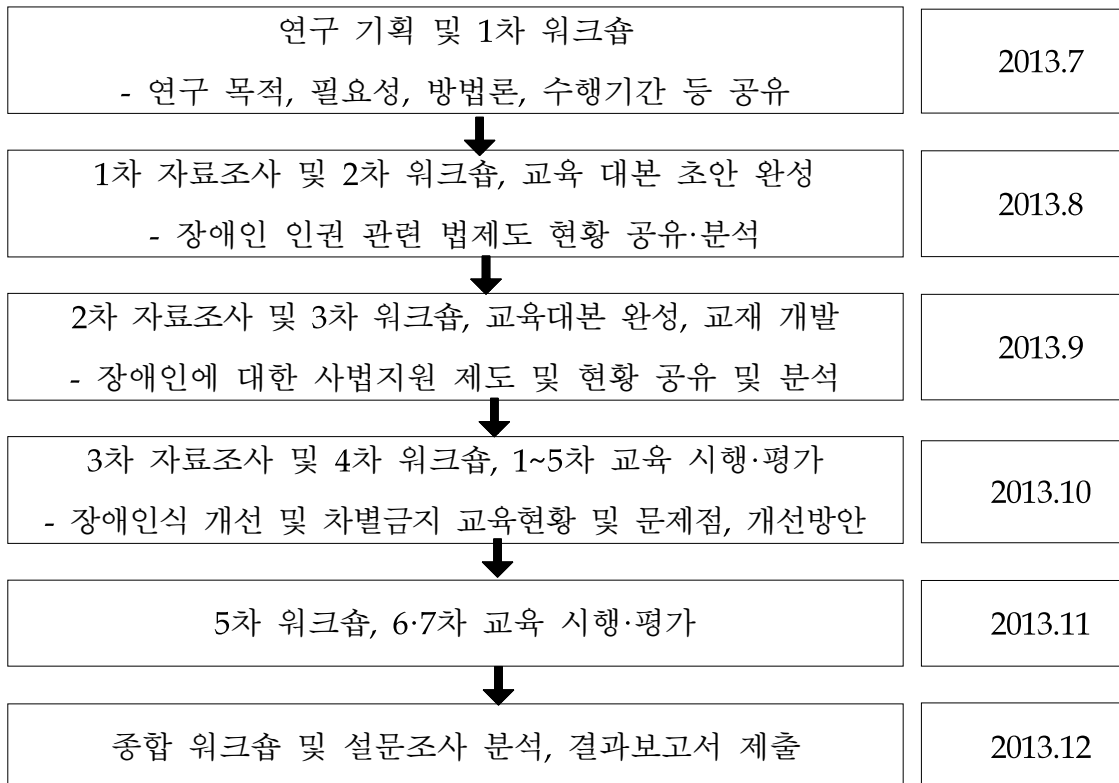
다음으로 몇몇 주요 행정부처와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태를 조사하였고, 미국 법원 홈페이지 번역을 통해서 'ADA 코디네이터' 등 미국 법원의 장애인 사법접근성 제고 사례를 조사하여 장애인식 개선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교육과정 운영 연구에 활용 및 참고하였다.

### (3) 교육 실시 후 성과 조사 및 분석

특히 새로운 기획과 내용으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시범 교육을 실시하고,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모범적인 장애인식 개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 방법을 제안하였다.

#### 2) 추진과정

연구추진 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다.



#### < 1> 연구추진 과정

### 3) 업무분장 내역

연구 수행에 있어서의 업무 분장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업무 분장	비고
책임 연구원	박은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 특임교수, 법무법인 울촌 변호사	- 연구 총괄, 책임 집필	
공동 연구원	안성배	제18대 국회 장애인 비례대표 박은수 국회의원의 보좌관	-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의 종류 와 범주 - 장애인식 개선 필요성 및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법제도 - 장애인식 개선교육 프로그램 현 황 및 프로그램 기획	
	은종균	한국장애인단체총 연맹 정책국장	- 상동	
연구 보조원	박종미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조교	- 자료 수집, 보고서 편집·제작, 회계·정산 등	
연구 자문	이준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 학장	- 연구 자문	

#### < 4> 연구용역을 수행할 인력 및 업무 분장 내용

### 3. 연구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1)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 절차 및 사법지원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 장애인식 개선교육 프로그램 개발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절차 및 사법지원 제도 현황 등이 포함된 장애인식 개선교육 프로그램 개발

- 민원 응대 및 재판절차에 있어서 사법부 구성원의 기본 마음가짐과 태도가 포함된 장애인식 개선교육 프로그램 개발

- 민원응대 및 재판절차에 있어 법원공무원이 파악해야 할 각 장애 유형별 특성 및 필요한 사법지원의 내용 등이 포함된 장애인식 개선교육 프로그램 개발

## 2) , 효과적인 장애인식 개선교육 내용 연구개발

- 기 시행 중인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태 및 프로그램 조사·분석
-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효율적인 장애인식 개선교육 내용 연구·개발
-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연구·개발

## 3)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시 및 평가

- 장애인식 개선교육 시행 : 약 7회
-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교육 프로그램의 성과 및 한계 등에 관한 평가

## 2장. 유사 선행 연구 고찰

### 1.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장애인개발원, 2008)

#### 1) 내용

장애인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장애인식 개선교육 매뉴얼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둔 연구로, 해외 사례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한편,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규명한 기초적 연구이다.

이 연구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의 법적·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 전반에서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한다는 점과, 고용·교육 등 사회 각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한 연구이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공무원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은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공무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15개 부처 및 16개 지자체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이해 및 소외상황 인지, 장애특성 인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 등을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첫 번째 결론을 보면,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장애인 근무관련 변인, 장애인인식교육 관련 변인 중 장애유형별 이해 및 소외상황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직급, 근무지, 근무기간, 학력, 장애관련 근무경험, 장애인식교육 받은 경험, 장애인편의증진교육 받은 경험, 장애인 복지과목 수강 경험, 장애인자원봉사 경험, 직무관련 장애인 만남정도가 있었다.

이에 따르면, 높은 연령일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장애유형별 이해 및 소외상황 인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부처보다 장애인과 관련한 정

보의 유입이 신속한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일수록 해당 변수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았다. 뿐만 아니라 장애유형별 이해 및 소외상황을 인지하는데 있어서 학력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고학력일수록 장애유형별 분류 및 장애인의 소외상황을 보다 잘 인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 장애인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공무원일수록, 직무와 관련하여 장애인을 만나는 빈도가 높은 공무원일수록 해당 변수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엇보다 본 연구와 관련해서 이 연구가 중요했던 것은 장애인인식교육 관련 변인을 설문조사에서 따로 조사했다는 점이다.

조사 결과 장애인인식교육을 받은 경험, 장애인편의증진 교육받은 경험, 장애인복지과목 수강 경험 모두는 장애유형별 이해 및 소외 상황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애인과 관련한 교육이 장애의 유형이나 장애인 소외상황의 인지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연구 결과로써, 본 연구의 필요성을 한층 더 확실하게 해 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 연구는 또, 장애인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에 있어서 장애인복지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공무원에게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설문조사를 통해 논증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장애유형별 이해 및 소외상황을 인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든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장애인을 직접 접할 수는 없으므로 향후 인식개선교육에 장애인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도출된 두 번째 결론은, 장애인 인식교육을 받은 공무원이 장애의 특성을 더욱 잘 이해하며, 장애인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을수록 장애 특성 인지 정도가 높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과 맥을 같이하여 이론과 실천이 접목된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해당 교육을 실시할 것과 정기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장애인과의 직접 접촉을 시도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로 알 수 있는 세 번째 결론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



일수록 연구가 이뤄진 해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으며, 석·박사 이상의 고학력을 가진 공무원일수록 법률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았다는 점이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계획·수립하고 실행하는 전반적인 상황을 아우르는 고위직 공무원일수록 관련법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결과가 나왔고, 장애인 인식교육과 직무와 관련하여 장애인과 만남을 갖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도 도출되었다.

이로 미루어볼 때,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 등 다른 방법을 동원하여 공무원이 직접 장애인을 경험함으로써 부정적인 인식을 제거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 연구는 설문조사의 네 번째 결론으로, 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증진의 필요성을 제고하게 하며, 사회전반의 인프라를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용이하게 해야 함을 연구 결과가 시사하고 있다고 서술하였다.

이 연구는 설문조사의 마지막 결론으로, 향후 장애인식 개선교육 매뉴얼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로 '공무원장애교육 방법 및 참여의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들은 '1년에 한번' 정도의 장애체험 강의 혹은 워크숍 교육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는 점을 제시하고, 공무원들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에티켓'과 '장애유형별 특성 이해' 및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이해'를 구체적으로 필요한 교육 내용으로 꼽고 있고,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하는 장애인식 개선교육에 대다수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는 점을 근거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있어 관련법이나 제도보다는 실제로 장애인을 대할 때 활용될 수 있는 실천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생각을 잘 반영하여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 2)

이 연구를 통해 중앙부처 공무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손쉽게

활용 가능한 매뉴얼을 제공하려 함으로써 장애인식 개선교육의 보편화를 유도하려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매우 크다.

특히 장애유형별 이해 및 소외상황 인지, 장애특성 인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의 정도가 장애인 정책 유관 근무 관련 변인,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및 장애인 편의증진교육 경험 관련 변인, 장애인 복지과목 수강 경험 관련 변인, 장애인 자원봉사 경험 관련 변인, 직무 관련 장애인 만남 유무 변인 등과 연령, 직급, 근무지, 근무기간, 학력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교차 분석을 통해 논증함으로써 장애인식 개선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서 더 나아가 교육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 연구의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추출하고 이를 단순 제시하는 데 머물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장애인식 개선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과과정 연구 등 보다 더 면밀하고 분석적인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해 보인다.

## 2. <장애인을 위한 사법지원에 관한 정책 연구>(법원행정처, 2012)

### 1) 내용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도가니 사태 이후 장애인 인권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랐지만, 장애인들에게 여전히 법원의 문턱은 높고 사법서비스는 멀리만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후 보루'로서 사법부에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특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장애 유형 및 연령, 사법지원 절차 등에 대해 매우 세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장애인을 위한 사법지원 체계를 매우 구체적으로 정리,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사법지원 조직 및 체계를 갖출 것, 인식과 태

도를 바꿀 것, 이를 위한 교육을 시행할 것, 장애인 판사와 직원을 늘릴 것, 장애인 권리옹호를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갖출 것 등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를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가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을 비롯한 소송 법규와 법원조직법 등 사법절차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권리협약 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

둘째, 이런 전제 아래 이 연구에서는 민사소송법이 청각, 언어 장애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장애인에 대한 절차상의 특례나 장애인 편의제공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소송구조에서 장애인을 포함하지 않은 점, 형사소송법의 신뢰관계자 동석 규정의 한계와 문제점, 국선변호인 규정, 진술조력인의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였다.

셋째, 장애인들이 증인, 배심원, 판사, 혹은 변호사가 되는 것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법령, 규제, 정책 혹은 관행을 파악하여 개정해야 한다는 것과,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 인권기준이 정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장애인들의 인권 보호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법률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들을 직접 참여시켜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법서비스 접근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파악하며, 가능한 해법을 찾을 것을 주문한다.

넷째, 장차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무엇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 제공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해 대법원 규칙 또는 예규 등 하위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예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이 연구는 특히 미국 등 해외 사례를 근거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및 사법지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직무지침)과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차별법제,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복지법제, 인신보호 등 법제와 그에 관한 소송절차의 특징 등을 정리하는 실무제요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여섯째, 이 연구는 또 사법부가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이행계획을 세우고,

조직체계를 갖추어 미국장애인법이 요구하는 내용을 실행해 나간 미국의 예를 제시하면서 이행계획과 조직적 체계를 갖추야 한다고 서술했다.

일곱째, 이 연구는 장애인을 위한 사법지원의 구체적 내역을 정리하였는데, 이는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사법지원의 내용(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기타 장애)과 연령 등의 분류에 따라 필요한 사법지원의 내용(장애여성, 장애아동, 장애인), 사법절차에서의 역할에 따라 필요한 사법지원의 내용(당사자, 증인 등 재판참여자, 기타 민원인), 개별 사법절차에 따라 필요한 사법지원의 내용(민사재판절차, 가사재판절차, 행정소송절차, 형사소송절차 등)에 관하여 장애계의 구체적 의견을 청취하고, 정리하여 실질적인 장애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제시한 점은 매우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위한 사법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체계 및 프로세스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과, 장애인 판사 및 직원의 임용을 확대하고, 장애인 권리옹호를 위한 변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법지원의 체계를 마련할 것을 역설했다.

## 2)

이 연구는 현행 사법절차상 매우 부족한 ‘장애인의 보호’와 ‘법원의 후견적 조치’에 대해 연구를 수행한 체계적인 연구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장애 유형 및 연령 등에 따른 장애인 사법지원 체계를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정리, 제시한 점은 이 연구의 가장 큰 성과이자 업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는 몇 가지 한계 혹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 소송법제, 법원조직법제 등이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본격적으로 연구하지는 못했다.

둘째, 법원이 장애인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한 이행계획 수립, 조직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추진을 함에 있어서 생기는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에 관한 연

구가 후속 과제로 남아 있다.

셋째, 이와 함께 장애인 사법지원에 있어서 개별 소송절차 중 가사절차, 행정절차 등의 특징에 따른 지원방안 등은 더 보완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의 사법지원을 위한 구체적 인프라, 프로그램, 시스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일부 제시하였으나,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 3.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자료>(서울특별시, 2012)

#### 1) 내용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에서 발간한 장애인 인식 개선 관련 교육 자료로서,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관련 국내 법률과 국제 협약의 내용 및 관련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자료는 선행 연구라기보다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 자료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지만, 자료 내용 중에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장애인 관련 법제 현황 및 구체 내용이 포함돼 있고,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 해고, 입학 거부 등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와 관련된 매우 구체적인 사례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UN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 인권규약의 전문과 각 조항들에 대한 해설을 매우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 2) 평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전문 연구 자료는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보기 드물게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을 위해 자료집을 펴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장애의 개념과 장애인의 범주 및 유형, 유형별 특성 및 행정편의 서비스의 구체적 사례 등 공무원들이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이 다수 빠져 있어 본격적인 장애인식 개선교육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평

가가 가능하다.

또한, 교육자료의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고 깊어서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더 멀고 딱딱하게 다가가게 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장애에 대한 개념, 장애인의 유형 등 기본적으로 담겨야 할 사항들을 보충하는 한편, 보다 쉽고 대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 자료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장.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 1. 장애인식 개선교육의 법적 근거

본 연구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듯이 장애인식 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적 의무 사항이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보다 구체적인 법 조문은 본 연구의 1쪽을 참조). 또,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이 조항에 대해 무지한 상태이거나, 알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장에서는 국내 주요 중앙 행정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 2. 장애인식 개선교육 시행 실태와 문제점

#### 1) 개선교육 시행 실태 개괄

본 연구는 어떤 내용과 프로그램, 방식으로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를 알아보는 데 그 핵심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방법론 중의 하나로 현재 다른 중앙 행정부처나 기관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시사하는 바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에 법무, 사법, 교육, 문화, 복지 등의 분야에서 몇몇 행정부처와 독립기관,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태에 관한 자료를 임의 표본 추출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래 내용에서 드러나고 있는 바와 같이 장애인식 개선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시되고 있다 하더라도 전문성조차 크게 없는 1인 강사에 의한 일방향적 교육이나 동영상 시청이나 시설 견학 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 2) 비서실, 국가보훈처

조사 결과, 국무총리실과 국가보훈처는 최근 3년 간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보훈처가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다소 충격적인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실은 여타 중앙행정기관의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보훈 업무의 대상인 상이군인들은 대부분이 장애인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1952년 4월 부산 육군병원에서 제대한 1차 상이군인 통계만으로도 상지절단 1,098명, 하지절단 923명, 안구상실 651명, 관통상 25,597명 등 모두 53,814명의 상이군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의지보조기 역사> 조일호, 2008). 이를 보더라도 국가보훈처가 장애인식 개선교육에 소극적인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3) 법무부 및 그 소속 기관

위 국무총리실이나 아래 사회 정책 분야 부처에 비해 그나마 법무부의 경우에는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인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태는 부록 1 참조).

본 연구팀이 법무부 산하 100개 기관의 장애인식 개선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무부 및 법무부 산하기관인 각급 교정시설과 출입국 관리소, 보호관리소, 청소년 보호·관찰 시설 등에서는 2011년부터 최근 3년 간 437건, 연 평균 145회에 달하는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이 교정시설인 교도소, 구치소, 보호관찰소, 교정청 등에서만 이뤄지고, 대검찰청 소속 일선 지검 등에서는 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전국 50개에 달하는 교정청, 59개에 이르는 대검 산하 지검과 지청, 21개의 출입국사무소, 구치소 11개, 교도소 36개, 지소 3개, 민영교도소 1개에 다, 각각 수십 개 씩에 달하는 보호관찰소,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등 100개를 훌쩍 뛰어넘는 법무부 산하기관 전체 수를 고려하면, 교육 실시 횟수는 1개 기관 당 1년에 1회가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검찰 등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기관은 교육을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고, 교도소 등 교정시설 제소자들을 중심으로 동영상 등을 통한 일방적 강의만 이뤄지고 있어서 교육 실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다소간은 회의적이었다.

교육을 담당한 강사의 경우 강사 없이 일방적으로 동영상을 틀어주는 경우가 많았으며, 교도소장이나 총무과장 등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강사를 맡은 경우도 일부 있었다.

#### 4) 관련 정부 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 (1)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시 현황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16개 소속 기관을 거느리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했다고 답한 소속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 등 5곳에 불과했다.

기관명	실시 년도	일시	장소	강사	주요내용	비 고
문화체육 관광부	2013	1.29 ~2.5	평창 및 강릉	현장 실습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관 람 및 정책현장실습을 통해	

(본부)			일원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인식 개선 도모	
국립중앙도서관	2013	4.22	국제회의장	신현기 단국대 특수교육학과 교수	장애인 인식제고 교육 : 우리는 마음 밖에 무엇을 심고 사는가?	
국립국악원	2013	3.19.	우면당	(동영상 시청)	장애 인식 개선	
국립민속박물관	2013	2.4~ 2.5	평창	현장실습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관람 및 정책현장실습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인식 개선 도모	
	2013	6.26	대강당	(동영상 시청)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동영상 시청	
전통예술중고등학교	2013	4.11	강당	성 프란체스코 장애인복지관 강사	장애체험 및 이해교육	
	2012	9.25	강당	서울시립보라매 청소년수련관 강사	장애체험 및 이해교육	
	2011	9.29	강당	본교 교무부장	장애이해교육 및 영상교육	
예술원사무국	2013	1.30	문학분과 회의실	(동영상 시청)	장애인 차별 금지법 교육	

< 5>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의 장애인식 개선교육 시행 실태(문화부, 2013)

(2) 교육부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시 현황

교육부의 경우는 더 열악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 “②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에 따라 일선 학교의 장애인식 개선교육까지 책임져야 하는 교육부가 정작 교육부 본부는 물론이고 국사편찬위원회 등 6개 소속 기관 전체를 통틀어 단 한 번도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심지어는 장애인 교육정책 주무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조차도 비장애인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5) 공공기관 : 금융,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등 제반 사회 분야

이 같은 실정은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대표적 세 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은 최근 3년 간 단 한 번도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로 한국장학재단, 한국연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등 대표적 기관 세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장애인식 개선교육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금융 분야의 두 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경우, 금융위원회만 직원 129명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에 동영상 시청을 통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고, 금융감독원의 경우에는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 3. 장애인식 개선교육의 문제점과 시사점

### 1) 현행 장애인식 개선교육의 문제점

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장애인식 개선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정부 부처와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한 몇몇 중앙 행정부처 및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교육 시행 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거나, 단순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교육 방식에 있어서는 대부분 교육 방식이 전문성도 높지 않은 1인 강사의 일방적인 교육이거나, 동영상 시청, 시설 견학 등에 머무르고 있었다. 동영상 시청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피교육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려는 노력이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미 정해져 있는 내용을 기계장치를 통해 VCD 화면으로 틀어주기만 할 경우에 피교육자들이 얼마나 집중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교육성과가 높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러다보니 피교육자들의 업무 강도, 주제에 대해 느끼는 흥미의 정도, 교육 시간대, 성별, 연령 등 피교육자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교육 내용이나 방식을 정하라는 제안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열악한 실정이었다.

연구팀이 해당 기관의 담당자들과 얘기를 나눠본 결과 교육 내용의 경우에도 1인 강사에 의한 일방적 주입식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보니, 장애인에 대한 이해, 장애유형 및 장애유형별 특징, 의사소통이 어려운 시청각 장애인을 대할 때의 요령 등 꼭 필요한 내용보다는 강사가 자신의 경험담을 장황하게 늘어놓거나, 장애인복지법 등 법제를 일반적으로 소개하거나, 편의시설을 보여주고 견학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강사의 경우에는, 특수교육 전공자나 장애인복지관 관장 등 일부는 전문성이 있었지만, 교육을 시행한 기관의 간부나 청소년수련관 소속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하는 등 대체로 전문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강사들이 교육을 맡는 경우도 많았고, 적지 않은 경우가 동영상 시청이나 현장 견학으로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대체하는 행정편의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 2)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식 개선교육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장애인식 개선교육이 활발하게 실시되고, 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법령 개정은 우선,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시행하지 않으면 벌칙을 부과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개정도 가능하겠지만, 그보다는 교육을 시행하는 부처 및 기관의 장에게 교육 시행에 따른 인센티브 및 인사 상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포지티브(positive)한 방식의 교육 활성화 유도책이 법령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 의무 대상 기관을 보다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

컨대 교육 의무 대상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라고 개정한다던가 시행령에서 보다 명확하게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향후 교육 의무 대상기관에서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기획 및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교육 형식과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회성 행사가 아닌 정기적 행사로 추진할 것

▲피교육자들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이 이뤄지도록 할 것

▲되도록 흥미를 끌 수 있도록 1인 강사 위주의 일방적·주입식 교육보다는 2인 방식의 토크쇼나 애니메이션 제작·방영 등 다양한 기획을 활용할 것

▲강사 섭외의 경우, 되도록 전문성이 있는 강사를 섭외하고, 2인 이상이 함께 교육을 진행할 경우 주 강사를 장애인단체 전문가나 장애인 당사자를 섭외할 경우에는 피교육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함께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보조 강사를 함께 섭외하는 등 각별히 신경을 쓸 것

▲교육 내용도 너무 전문적이거나, 너무 감성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시각의 교본(시나리오)과 영상자료(PPT) 등을 준비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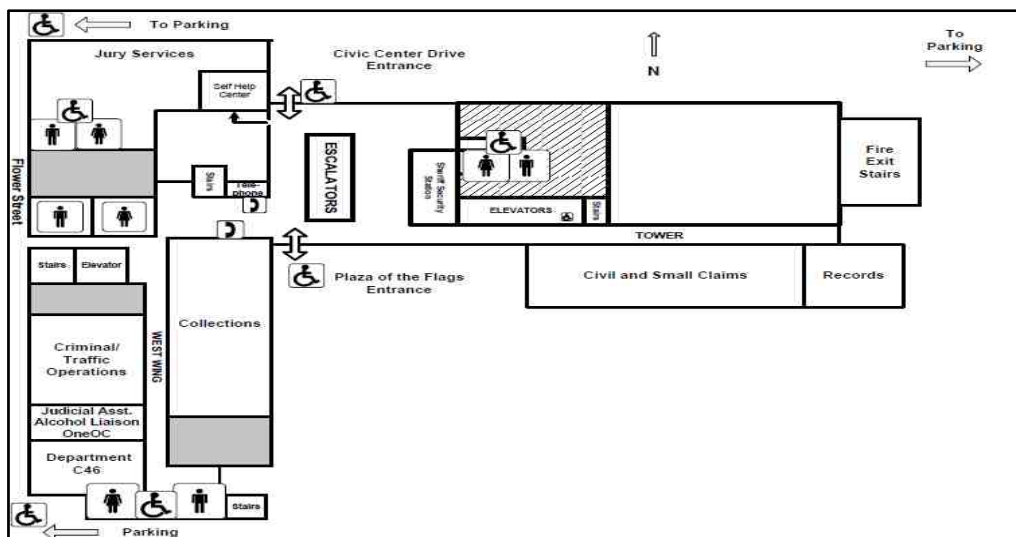
## 4장. 미국 법원의 장애인 사법접근성 제고 사례

이 장에서는 장애인식 개선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참고가 될 만한 외국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고등법원의 홈페이지를 번역하여 미국 법원이 장애인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 1. 미국 법원의 장애인 서비스 지원과 ADA법

미국 법원은 미국 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법원의 프로그램, 서비스, 혜택이나 활동에 대한 이용, 접근이나 운영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의무규정에 따라 미국 법원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누구나 아래와 같이 법원 내부 구조를 안내하는 그림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엘리베이터나 장애인 화장실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중심으로 한 층별 건물 평면도가 자세히 소개돼 있다.



< 2>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고등법원 1층 평면도  
(출처 :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고등법원 홈페이지,  
[http://www.occourts.org/directory/ada/cjc\\_floorplan.pdf](http://www.occourts.org/directory/ada/cjc_floorplan.pdf))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배심원용 주차장을 포함하는 장애인 주차 시설과

### 장애인 시설 안내

**주차** : Parton Avenue와 Bush Street에 위치한 주차 미터기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료입니다. Civil Center West 및 Flower Street에 위치한 건물 근처에 있는 장애인용 유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배심원용 (Juror) 주차장** : 이에 대한 정보는 Office of the Jury Commissioner의 연락처인 (714) 834-70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 장애인용 화장실은 전층에 있습니다. 1층 화장실은 서관 남쪽 끝에 위치한 보안 창구 근처에, 2층 화장실은 서관 승강기 근처에, 3층 화장실은 승강기 사이에, 4층부터 11층에 있는 화장실은 승강기 서쪽에 있습니다.

(출처 :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고등법원 홈페이지

<http://www.occourts.org/directory/ada/cjcada.html>)

< 6> 미국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장애인 시설 안내' 내용  
화장실 위치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전체 번역본은 부록2 참조).

또, 장애인 보조견, 장애인용 공중전화,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신장치(TDD, Telephone Device for the Deaf) 서비스, 언어 및 미국 표준 수화(ASL, American Sign Language), 보조청각장비, 컴퓨터 지원에 의한 전사 장비, 이동성 등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지원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매우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 장애인 서비스 안내

장애인용 편의제공에 대한 정보는 법원 메인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개별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원 직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안내 서비스는 신청하시는 경우 제공됩니다.

**장애인 보조견(Service animals)**을 환영합니다.

**공중전화** : 장애인용 전화가 1층 및 3층부터 11층에 있습니다.

**TDD(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신장치) 유료 전화**는 서관 3층 승강기 옆과 Jury Services에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경우 **언어 및 미국표준수화(ASL) 통역사**가 도움을 드립니다(아래 신청서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청각장비 또는 컴퓨터 지원에 의한 전사 장비**는 청각을 상실한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법원 방문시 이러한 보조청각장비, 컴퓨터 지원에 의한 전사 장비 또는 ASL 통역사가 필요하신 경우, 미리 아래 링크의 편의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657) 622-729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성.** 보안관(Sheriff)이 귀하가 증인, 소송당사자 등으로 법원을 방문하는 경우 어디로 가실지 또한 대체 서비스를 찾으시는 경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귀하가 심리에 참여하거나 증인인 경우, 편의제공 사무실 연락처인 (657) 622-776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직원이 귀하의 필요에 따른 요청에 응할 것입니다.

(출처 :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고등법원 홈페이지

<http://www.occourts.org/directory/ada/cjcada.html/>)

< 7> 미국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장애인 서비스 안내' 내용

## 2. 미국 법원의 장애인 코디네이터(ADA Site Coordinator)

미국의 법원들은 이와 같이 ADA법 상의 모든 의무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고 있으며, 각급 법원에 “ADA 코디네이터(ADA Site Coordinator)”를 고용하여 “법원 관련 ADA 사안에 대한 질문, 불만이나 추가 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이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되면 법원의 ADA 코디네이터는 “모든 불만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도록 하게 되어 있다. 또, “모든 불만은 차별적인 행위가 발생되었다고 주장되는 날부터 구십(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미국의 법원들은 이를 위해 ADA 코디네이터의 주소와 연락처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사법지원센터(Central justice center) 홈페이지 안내문 일부를 국문 번역해서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미국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고등법원은 장애를 이유로 법원의 프로그램, 서비스, 혜택이나 활동에 대한 이용, 접근이나 운영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법원 관련 ADA 사안에 대한 질문, 불만이나 추가 정보 요청은 법원의 ADA 코디네이터(ADA Site Coordinator)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ADA 코디네이터는 모든 불만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불만은 차별적인 행위가 발생되었다고 주장되는 날부터 구십(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Central Justice Center의 ADA 코디네이터의 주소와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700 Civic Center Drive West Santa Ana, CA 92071

전화: (657) 622-7766

오렌지 카운티 고등법원 및 다른 사법 센터의 시설/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는 법원 홈페이지 [www.occourts.org](http://www.occourts.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고등법원 홈페이지

<http://www.occourts.org/directory/ada/cjcada.html>)

< 8> 미국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미국장애인법(ADA)’ 소개 내용

미국 법원은 또, 위 표에 있는 바와 같이 장애인이 법원 측에 서비스 불편이나 불만, 차별 사례, 질문 또는 추가정보 요청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신청서 양식 및 구체적인 작성 안내에 따라 편리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APPLICANT'S INFORMATION TO BE KEPT CONFIDENTIAL MC-410

APPLICANT (Print)  
APPLICANT is  Witness  Juror  Attorney  Party  Other (Specify)

PLEASE PRINT/TYPE NAME  
APPLICANT'S ADDRESS  
TELEPHONE NO.

NAME OF COURT  
STREET ADDRESS  
MAILING ADDRESS  
CITY AND ZIP CODE  
BRANCH NAME  
JUDGE  
CASE TITLE DEPARTMENT  
CASE NUMBER

**REQUEST FOR ACCOMMODATION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ESPONSE**

Applicant requests accommodation under rule 1.100 of the California Rules of Court, as follows:

1. Type of proceeding:  Criminal  Civil  Other

2. Proceedings to be covered (for example, bail hearing, preliminary hearing, trial, sentencing hearing, family, probate, juvenile):

3. Date or dates needed (specify):

4. Impairment necessitating accommodation (specify):

5. Type or types of accommodation requested (specify):

6. Special requests or anticipated problems (specify):

I declare under penalty of perjury under the laws of the State of California that the foregoing is true and correct.  
Date: \_\_\_\_\_  
(TYPE OR PRINT NAME) SIGNATURE

**RESPONSE**

The accommodation request is **GRANTED** and the court will provide the  
 requested accommodation, in whole  
 requested accommodation, in part (specify below): \_\_\_\_\_  
 For the following duration:  
 For the above matter or appearance  
 From (date) \_\_\_\_\_ to \_\_\_\_\_  
 Indefinite period

The accommodation is **DENIED** in whole or in part because it:  
 fails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rule 1.100.  
 creates an undue burden on the court.  
 fundamentally alters the nature of the service, program, or activity.  
 For the following reason (attach additional pages, if necessary): (See Cal. Rules of Court, rule 1.100(g), for the review procedure)  
 The court will provide the alternative accommodation as follows: \_\_\_\_\_

Date response delivered in person or sent to applicant: \_\_\_\_\_  
 (TYPE OR PRINT NAME) SIGNATURE SIGNATURE FOLLOWS THE LAST PAGE OF THE RESPONSE

Page 1 of 1  
 Form Approved by National Law Center Council of California  
 MC-410 (Rev. January 1, 2015) Cal. Rules of Court, rule 1.100 and associated rules

For your protection and privacy, please press the Clear This Form button after you have printed the form.  
 Save This Form Print This Form Clear This Form

<그림 3> MC-410 양식 영문 견본

장애인은 법원 방문 시 도움이 필요하면, 위 그림과 같은 신청서(MC-410)를 작성하면 되고, 아래 안내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신청서 작성 시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법원직원이나 ADA 코디네이터에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면 법원은 장애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해서 조치를 하고, 만약에 장애인의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장애인이 그런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내문 (Instruction Sheet) MC-410 (법원 이용자용) - 번역본**

원문은 [www.occourts.org/directory/ada/mc410\\_cjc.pdf](http://www.occourts.org/directory/ada/mc410_cjc.pdf)에 있습니다.

**장애인의 편의제공 신청서 및 회신 (Per. C.R.C. 1.100)**

참고로 본 안내문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1. 법원 방문 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 신청서 MC-410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원 직원에게 요청하시거나 ADA 코디네이터의 연락처인 657-622-7766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 : 질문이 있으신 경우 “편의제공 신청서”의 신청인 부문에 귀하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해당하는 경우)를 남기시면 직원이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2. 작성하신 신청서를 법정이나 제출 카운터에 있는 직원에게 제출하시거나 다음 주소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최소 5일 전에 법원에 해당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Central Justice Center ADA Site Coordinator 귀하  
700 Civic Center Drive West Santa Ana CA 92702

법원 공무원이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할 것입니다. 법원이 귀하의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귀하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C.R.C.1.100참조). 귀하는 가능한 한 우편으로 또는 해당하는 경우 다른 형식으로 본 조치에 대한 회신을 받을 것입니다. 귀하의 신청 상태에 대하여 확실하지 않으시면, ADA 코디네이터 연락처인 657-622-7766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개정. 2009년 12월 21일)

(출처 :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고등법원 홈페이지

<http://www.occourts.org/directory/ada/cjcada.html>)

## INSTRUCTION SHEET

### MC - 410

(For Court Users)

REQUEST FOR ACCOMMODATION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ESPONSE

(Per C.R.C. 1.100)

#### **KEEP THIS INSTRUCTION SHEET FOR REFERENCE**

1. Please complete the MC-410 form to request assistance during your visit to the courthouse. If you need help with the form, please ask court staff or call the ADA Site Coordinator at 657-622-7766.

NOTE: Please provide your phone number and fax number (if available) in the Applicant section of the "Request for Accommodations" form to allow staff to contact you if there are any questions.

2. Submit the completed form to staff in the courtroom or at any filing counter, or mail to the address below. You should give the court at least 5 days notice whenever possible.

Central Justice Center

Attention: ADA Site Coordinator

700 Civic Center Drive West

Santa Ana CA 92702

The form will be reviewed by a court officer. In the event the court determines your request to be inappropriate and you disagree with the court's decision, you have the right to appeal. (See C.R.C. 1.100.) You will receive a copy of this action by mail, as may be appropriate, and/or if applicable, in an alternative format. If you are unsure about the status of your request, please call the ADA Site Coordinator at 657-622-7766 for information. (Rev. 12/21/09)

#### < 9> 미국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및 회신 안내문' 내용

캘리포니아 주 사법위원회는 법원의 존재 이유를 "가능한 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고 평등하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법원 절차에 참

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특별 편의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법원 규칙(Rule of Court)를 제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편의제공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법원 내 카운터에 비치된 편의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고등법원, ADA 정보 웹사이트(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Orange ADA Information Website)에서 열람 또는 사법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직접 “편의제공 신청서”라는 문서를 다운로드 해서 법원으로 보내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편의제공 서비스 신청

법원의 목적 중 하나는 가능한 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고 평등하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사법 위원회(California Judicial Council)는 법원 절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특별 편의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법원 규칙(Rule of Court)을 제정하였습니다. 편의제공 신청서는 법원 내 모든 카운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신청서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고등법원, ADA 정보 웹사이트(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Orange ADA Information Website)에서 열람하시거나 사법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직접 “편의제공 신청서”라는 문서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본 신청서를 읽기 위해서는 어도비 프로그램(Adobe Acrobat Reader)이 필요합니다. 동 프로그램 다운을 위하여 여기를 클릭하세요. 작성된 신청서를 제출 카운터 직원에게 제출 하시거나 다음 주소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Superior Court, Harbor Justice Center – Laguna Hills Facility

**Court Administration/ADA Site Coordinator**

23141 Moulton Parkway Laguna Hills, CA 92653

(출처 :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고등법원 홈페이지

<http://www.occourts.org/directory/ada/hjcnbada.html>)

< 10> 미국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편의제공 서비스 신청 안내’ 내용

## 5장.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식 개선 시범교육 준비과정과 교육 내용

### 1. 장애인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식 개선교육 주요 내용

장애인 사법접근성 제고 방안에는 ▲민원응대 및 재판절차에 있어서 사법부 구성원의 기본 마음가짐과 태도 ▲장애에 대한 기본 이해와 장애유형별 특성 ▲민원응대 및 재판절차에 있어 법원공무원이 파악해야 할 각 장애 유형별 특성 및 필요한 사법지원의 내용 ▲민원응대 요령 및 재판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사법지원 내용 ▲장애유형별 민원 응대 요령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된 장애인식 개선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2013년 10월부터 약 7회에 걸쳐 시범 교육을 실시하였다.

### 2. 장애인식개선 시범교육 개요

법원행정처가 주관한 장애인식개선 시범교육은 10월 21일(월)부터 11월11일(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시범 교육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장애인식개선 시범 교육 개요>

##### 1. 주최 / 주관

- 주최 : 대법원 등 각급 법원
- 주관 : 법원행정처

##### 2. 일시 / 장소 / 교육 시간

날짜	시간	법원
10월 21일 (월)	10:30	서울고등·중앙지방법원
	15:00	인천지방법원
10월 24일 (목)	15:00	대법원
11월 4일 (월)	10:30	서울가정·행정법원

	15:00	수원지방법원
11월 11일 (월)	10:30	서울남부지방법원
	16:30	서울동부지방법원

※ 교육시간 : 매 회당 1시간 이내

### 3. 장애인식 개선교육(토크쇼) 개요

- 시행 목적 : 사법부 구성원의 진정한 공감과 이해를 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이고 친화적인 교육 시행
  - 참신한 기획 : 기존의 딱딱하고 일방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과격적이고 참신한 프로그램으로 기획
  - 대담 형식(토크 쇼) 도입 : 김현주(배우) VS 박은수 변호사(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를 섭외하여 비장애인들이 쉽게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토크쇼 형식으로 시행
- 출연자 : 박은수(전 국회의원, 변호사), 김현주(영화배우, 텔런트)
- 대담 내용 : 장애인식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하위 주제들을 적절히 배치
  - \* opening : 등장 및 강사 소개
  - \* 교육의 취지 : 법원이 꼭 해야 할 일+법적 의무
  - \* 박 변호사 살아온 이야기로 본격 토크쇼 시작
  - \* 김현주 씨 교육 참여 동기
  - \* 장애인 차별의 실제 사례 : 용어에 있어서의 차별
  - \* 장애인 차별의 실제 사례(유형별 사례) : 영화 '오아시스', 루즈벨트 사례, 법원 재판정 사례, 유럽사례(저상버스), 보도블럭 등
  - \*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 장애도 개성, 장애로 인해 새로 태어나는 능력, 장애인에게 편리하면 모두에게 편리하다. 낫선 나라에 가면 누구나 장애인.
  - \* 소수자 보호와 법원의 역할 : 장애인 등 소수자 권리의 보호는 법원의 의무. 장애 체험 권고.
  - \* closing & 당부 및 감사의 말, 장애인식 개선교육 및 확산 필요성 강조
  - \* 가정법원 교육 시 : 성년후견제 관련 내용 추가

#### < 11> 장애인식개선 시범교육 개요

### 3. 교육 준비 과정 및 절차

위와 같은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8월까지 교육의 내용 및 형식에 대한 기획을 위해 연구진 간의 2회에 걸친 토론이 진행되었다.

기획이 완료된 후, 8월 말까지 교육 내용 및 시나리오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하였다.

9월에는 강사(박은수 변호사, 본 연구의 책임자)와 보조 강사(토크쇼 사회자, 배우 김현주)가 공동 연구진과 2회에 걸쳐 만나 시나리오에 대한 토론과 내용적 리허설을 진행하였다.

토론과 내용 리허설 과정에서 사회자이자 보조강사인 배우 김현주 씨로부터 본인이 하고 싶고, 듣고 싶은 이야기를 따로 제출받아 교육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박은수 변호사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의 장애인단체의 협조 및 자문을 받아 내용 보완 및 PPT 교본에 쓰일 영상 자료를 확보하였다.

그 후 PPT 교본 초안 및 교육 평가용으로 피교육자들에게 배포될 설문지 초안을 작성하여 연구진 간 내용 검토 후에 PPT 교본과 설문조사지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내용적 준비가 끝난 후에 각 법원들에 대한 사전 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체크 리스트를 제작하여 각급 법원 방문 시 꼼꼼하게 체크하였다.

#### < 사전 답사 시 조사 체크 사항 >

원 명 / 주 소 :

담당자 및 연락처 :

교육 일시 및 장소 :

객석 수 : \_\_\_\_\_ 석

예상 참석인원 : \_\_\_\_\_ 명

편의시설 및 동선 : 휠체어 접근성, 주차장으로부터의 동선

조명 : 조도, 온/오프 장치(위치, 작동법 등)  
 객석 조명 : 조도, 온/오프 장치(위치, 작동법 등)  
 무대 음향 : 마이크(유·무선) 및 PPT 음악(대기, 배경음악 크기, 출력 방식 등)  
 테이블 위치 및 의자 세팅 : 무대에서 테이블과 의자가 놓이는 위치,  
 수병, 음료, 펜 등 제반 준비 사항  
 스크린 : 작동 방식(커튼 또는 롤 스크린 방식 VS 붙박이 방식, 스크린 위치 및 크기,  
 조명과의 어울림 여부 등)  
 빔 프로젝터 호환성 여부 : USB 별도 파일 필요 여부, 빔프로젝터 방사 위치

이외 아래 사항을 점검 및 협의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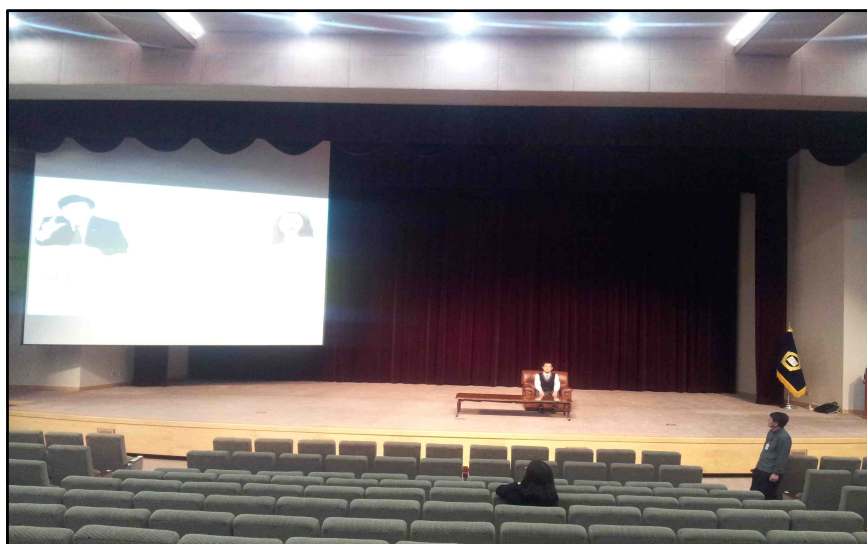
\* 필요 부수 및 배부 장소와 수거 방식

※ 위 사항들 중 사진 촬영이 필요한 것들은 미리 촬영하여 강사진들과 사전 공유

※ 법원 주소는 사전에 파악하여 강사진, 실무진 등과 미리 공유 : 네비게이션 안내용

#### < 12> 법원 사전 답사 시 조사 체크 사항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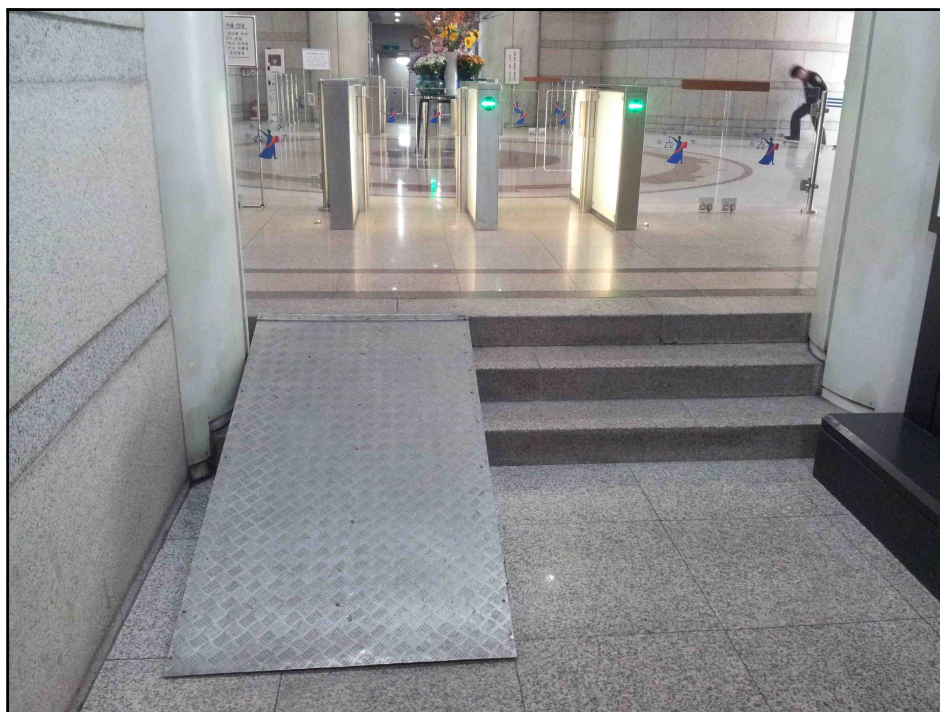
이렇게 사전답사를 진행하고, 체크리스트에 따라 체크된 사항들을 공동 연구진과 강사들에게 교육 당일로부터 최소 3일 이전에 송부 및 공유하였으며, 이렇게 답사 결과를 공유한 후에도 마찬가지로 테이블 위치나 조명 밝기 등에 대해 유무선을 통한 개별 토론을 진행하여 준비를 마쳤다.



<그림 4> 대법원 현장 답사 사진



사전 답사 시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드시 체크하였고,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교육장이 있을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전문기관과 함께 휠체어 이동 대책을 미리 마련하는 등 세심한 준비를 하였다.



< 5> 서울중앙법원 사전답사 시 휠체어 접근성 점검 사진

교육 당일에는 담당 실무자는 교육 시작 최소 1시간 전, 강사진은 최소 30분 전에 도착하여 테이블 세팅 상태, PPT 정상 작동 여부, 음향·조명·스크린 등의 이상 유무 등에 대한 체크를 마치고, 행사 시작 20분 전부터 경쾌한 대기 음악을 틀어 놓아 교육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또한, 교육장 앞에 설문지를 미리 준비해 놓고 피교육자들이 입장할 때 개별 배포하였다.

교육 시작 5분 전에 강사들은 대기실에서 대기 상태로 있다가 교육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나오면 사회자인 배우 김현주 씨가 나와서 자기 소개 및 주 강사인 박은수 변호사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교육이 시작되도록 준비하였다.

#### 4. 교육 형식

앞서 말한 대로 교육은 1인 강사의 일방적 교육이 아닌, 2인이 공동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토크쇼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장애인 정책 전문가인 박은수 변호사가 주 강사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온 김현주 배우가 사회자 겸 보조 강사를 맡아 진행하였다.

사회자는 장애인 아닌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바탕을 둔 질문을 던짐으로써 청중들의 의문을 대신 제기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해 주 강사인 박은수 변호사는 의문에 대한 대답을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분석하여 알려주는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강연은 사전에 제작된 시나리오와 PPT 교본을 토대로 진행하였으나, 그 때 그 때의 상황에 따라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거나, 있던 내용이 빠지기도 하는 등 자유로운 대화 방식을 취했다.

이 경우에는, 강연 내용을 준비하고 PPT 제작을 맡은 인력이 교육 시 현장 진행과 PPT 실연 등을 계속해서 담당하도록 하여(실제 교육 시에는 본 연구의 공동 연구자가 실무를 맡았음), 강사인 두 사람은 장애인식 개선과 관련된 대화를 진행하고, 현장 진행 및 PPT 실연을 맡은 담당자는 대화의 내용에 걸 맞는 화면을 계속해서 스크린에 무대배경으로 깔아주는 역할을 하도록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강사 1인에 의한 일방적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포인터 등을 사용해서 화면을 지시하면서 강의하는 것 보다는 친한 친구 사이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진행하는 것처럼 교육을 진행하고, 참고가 될 만한 화면은 교육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실무자가 진행되는 교육 내용에 걸 맞는 화면과 음향 등을 적절하게 배경으로 깔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 5. 교육의 주요 내용

이렇게 진행된 장애인식개선 시범교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자세한 교육 내용은 법원행정처에 별도 제출한 동영상 CD 참조).

### 1) 소개

- 사회자(배우 김현주) 자기 소개 및 강연자(박은수 변호사)의 활동 내역 소개
  - 학창시절, 판사·변호사 및 국회의원
- 사회자가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소개
- 강사 소개 PPT 영상 자료 견본은 아래와 같다(PPT 영상자료 원본은 부록 3 참조).

**강사소개 : 박은수**



**나는.. 눈물 나는  
해피엔딩이 좋다**

- ✓ 대구출생(1956)
- ✓ 서울대 법대
- ✓ 사법고시 22회
- ✓ 판사(마산, 대구)
- ✓ 변호사
-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 ✓ 18대 국회의원
- ✓ 법무법인 울촌 고문

3

### < 6> PPT 견본 : 강사 소개

위와 같은 PPT 영상을 배경으로 해서 실제 강의에서는 보조강사인 사회자와 주 강사 사이에 아래와 같은 대화가 진행되면서 피교육자와 강사 사이의 거

리가 좁혀지고, 집중도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강사소개는 교육 첫 시작 부분에서 있게 되므로, 강사들과 피교육자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매 교육 시마다 비교적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는데, 실제로 대법원 강의에서도 10분이 넘게 강사소개를 하면서 다양한 장애인 차별사례나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추세, 법원과 입법부의 변화된 상 등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0.24(월) 대법원 강당에서 실시된 장애인식 개선교육 강사 소개 대화 내용**

(이하 대화내용은 모두 동일 장소, 일시에서 진행된 것임)

**사회자 :** (등장) 안녕하세요? 배우 김현준입니다. (중략)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구요. 다른 분이 함께 하실 예정인데요, 소개할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행복전문 변호사라고 소개드려 볼게요. 박은수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강연자 :** 감격스럽습니다. 이런 날도 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사법고시 22회로 합격을 해서, 사법연수원 12기인데요. 그때는 1982년 무렵인데, 마침 연수원 동기 중에서 저와 비슷하게 신체장애를 가진 분이 네 명이 있었습니다. (하략)

**사회자 :** 저는 중학교 때 은사님이 계신데, 저의 첫 사랑이었어요. 그 선생님이 지금은 특수교사로 장애학교에 계세요. 선생님을 뵈려고 학교에 우연히 갔다가 거기서 장애 아이들을 만나게 돼서 지금까지 그 아이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계신 곳이 '차름'이라는 공동체인데, 놀토와 방학 때 지적장애, 발달장애 아이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 놀토와 방학 때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차름 공동체의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데요, 제가 꽃꽂이를 배웠는데,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 수화통역사가 있을 경우 같이 소개

**< 13> 시범교육 '강사 소개' 부분 대화 내용**

2) 대한 차별 실제 사례 1 - 용어

용어에 있어서의 차별 사례 PPT 견본은 아래와 같다.



< 7> PPT 견본 : 장애인차별 사례 - 용어

용어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 사례와 관련해서는 실제 시범교육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들로 토크쇼가 진행되었다.

**사회자** : 저는 지적장애, 발달장애 아이들과 함께 자주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을 칭하는 용어들 이런 데서도 차별이 많다면서요? 우리는 지적장애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쓰는 잘못된 용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강연자** : 어떤 용어가 잘못됐다, 어떤 용어를 써야한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애인을 같은 인간, 동등한 인격으로서 예우하고 존중하는 마음, 저는 그것을 '친절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사실 더 중요해요. 말은 조금 잘못 쓰더라도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수하면 용서가 되고 용인이 되는데, 과거에 저렇게, 장님, 맹인, 봉사, 절름발이, 병어리, 바보, 천치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청소하시는 분들도 환경미화원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니깐 그렇게 불러드리고 그러잖아요?

과거에 사법서사라고 불렀던 분들도 지금은 법무사라고 하구요.

**사회자** : 네.

**강연자** :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도 언어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 실수하기 쉬운 게 정상인, 장애인 - 이런 거예요. 무심코 이런 말을 쓰는데, 정상인 그러면, 장애인은 그 순간 바로 비정상인이 되잖아요? 장애자는 사람 인(人)이 아니라 놈 자(者) 자를 쓰니까 비하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조금만 더 관심과 애정을 가진다면 우리가 언어에서도 실수하는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우리가 언어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 아닌가...(중략)

**강연자** : 미국의 경우에도요, 아버지 부시 때인 1990년에 처음으로 미국 장애인법인 ADA, 그러니까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법이 제정이 되는데요. 1960년대 미국 흑인 민권운동, 그 전에는 여성 그 다음이 흑인, 그 다음이 장애인 인권 문제로 나아가면서 1990년에 드디어 미국에서 ADA 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 법의 명칭이 DAA 그러니까 Disabled Act of America였거든요. 이것만 해도 큰 진전인데, 미국 장애인들이 이것도 싫다! 왜 그 사람의 약점을 먼저 내세우느냐, 디스에이블도 다 같은 어메리칸인데, ADA로 하자. 이랬거든요. 이랬던 것이 그 다음에 가서는 왜 디스에이블이나? 디퍼런틀리 에이블(differently able) 즉, 조금 다른 능력을 가진 것 뿐이다, 이러면서 다시 어메리칸 워드 디퍼런틀리 에이블 액트로 하자. 이렇게 용어에 있어서 계속 변화가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읽는 언론이 에이블뉴스(ablenews), 인터넷 언론이고요, 장애인들이 휠체어 같은 보조기를 구입하는 데 가장 많이 찾는 몰(mall)이 에이블 몰(able mall)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하략)

< 14> 시범교육 ‘장애인 차별사례 - 용어“ 대화 내용

3) 차별의 실제 사례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 교육, 노동, 이동권(저상버스), 시각장애인 유도 블럭 사례 등
- 차별행위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인식의 내용

- 우리 사회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 수준 및 개선 방향

이 부분과 관련한 토크쇼의 실제 대화를 실례로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사회자** : 올 여름에 독일에 다녀오셨어요?

**강연자** : 네, 올 여름에 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장애인 대학생들이 외국 연수를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단장 자격으로 다녀왔습니다.

**사회자** : 저 버스(PPT 영상을 보며)가 저상버스인가요?

**강연자** : 네, 독일이나 유럽 선진국에서는 아주 일반화된 버스인데요. 장애인들이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낮은 바닥으로 돼 있는 버스이고, 저렇게 안으로 경사판이 접혀져 있다가 접이식으로 펴서 장애인이 쉽게 탈 수 있도록 하는 버스죠. 제가 복지선진국에 가서 늘 느끼는 것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휠체어를 타고 나가면 사람들이 자꾸 쳐다봅니다. 저 사람은 인물은 그럴 듯 한데, 왜 휠체어를 타나?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지요.

**사회자** : 더구나 미모의 사모님과 함께 다니면 저 사람은 휠체어를 탔는데, 어떻게 부인도 저렇게 예쁘냐? 하는 눈초리로 쳐다보겠는데요? (웃음)

**강연자** : 그렇지요. 선진국에서는 휠체어를 타든 말든 크게 신경을 안 쓰다가도 휠체어를 탄 사람이 어려움이나 곤경에 처하거나 하면 너나없이 달려들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로 평소에는 힐끗힐끗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정작 장애인이 턱을 만나서 휠체어가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간다면 하는 일이 있으면 모두 다 외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진국의 기준은 '친절성' 그런 거 아닌가...

**사회자** : 어떤 시설을 잘 갖췄냐 아니냐 하는 것 보다도...

**강연자** : 그럼요, 그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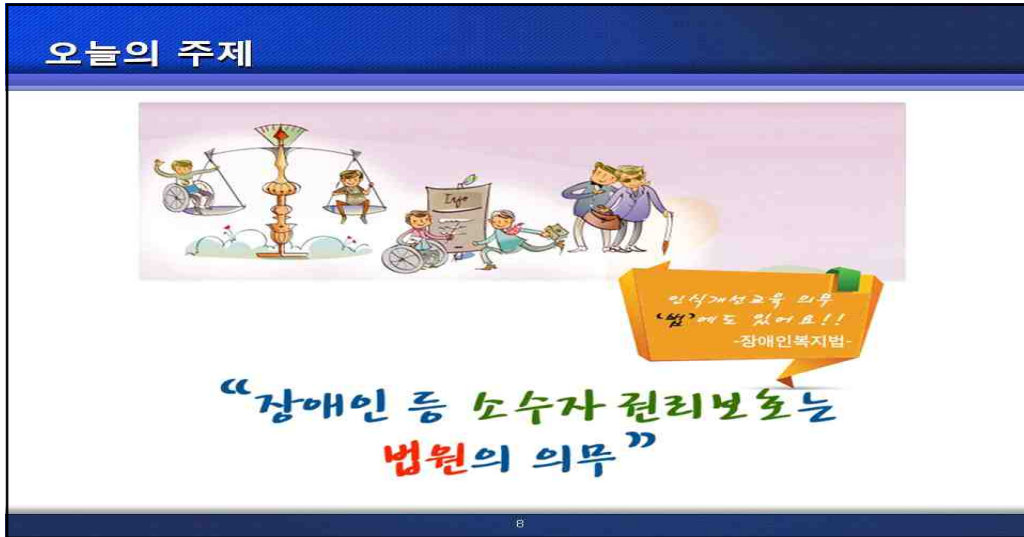
**사회자** : 저도 영국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하락)

< 15> 시범교육 '장애인 차별의 실제 사례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분 대화 내용

4) 주제 : 장애인 등 소수자 권익보호는 법원의 사명

- 소수자들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 헌법상 평등권

- “동등하다”는 의미 : “똑같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
-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다른 점을 채워주는 사회적 시스템 필요
- 배려가 아닌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 8> PPT 견본 : 장애인 등 소수자 권리보호는 법원의 의무

이와 관련된 강의 내용을 대화록으로 정리해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사회자 :** 오늘의 주제가 장애인 등 소수자 권리보호는 법원의 의무인데  
 요.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강연자 :** 장애인을 자꾸 이상한 존재, 특별한 사람,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그냥 똑 같은 사람, 이 사회를 살아가는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고 돈 없는 사람에게 돈 꿔주듯이 그렇게 다리가 불편한 사람에게는 이동을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지요. 특별히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나 이런 것 보다는...

**사회자 :** 저도 제가 지적장애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이들이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지 다보니까 감정 능력도 떨어지거나 없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도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고 그럴 줄 알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



과 오랜 시간 만나다 보니 아이들의 감정 표현을 읽을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물론, 초반에는 잘 모르지만 아이들도 성격이 모두 다르고 각기 개성이 있어요. 막 웃고 다니는 아이도 있고, 쉽게 화를 내는 아이도 있고, 다른 친구를 막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다르듯이 그 친구들도 서로 다르다는 것, 그것만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강연자 :** 현주씨가 정말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저도 장애인 운동을 하면서 반성을 해본다면, 지적장애인 문제를 그 동안 많이 신경을 못 썼어요. (중략)

**사회자 :** 자꾸 보니까 사랑스럽고 오래 보니까 예쁘다는 나태주 님의 시처럼 여러분들도 옆에 장애인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옆에 있었다는 것을 가정해 본다면, 장애인 문제는 그게 어려운 문제거나 하는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실제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 중에서 65.7%가 나는 친구가 한 명도 없다고 답변했다고 해요. 특히 비장애인 친구는 하나도 없다... (하략)

< 16> 시범교육 ‘장애인 등 소수자 권익보호는 법원의 사명’ 부분 대화내용

#### 5) 하나의 개성에 불과

- 스티비 원더(Stevie Wonder), 이지선, 강원래, 이희아,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 김진호, 김세진(이상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 선수), 오토다케 히로타다(おとたけひろただ) 등의 사례

PPT 견본은 아래와 같다.

## 장애인식개선 - 장애도 개성



Stephen Hawking



Stevie Wonder



おとたけひろただ



강원래



이희야 -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지선



김세진 - 절단장애 / 수영국가대표



김진호 - 자폐성장애 / 수영선수

22

### < 9> PPT 견본 : 장애인식개선 - 장애도 개성

실제 강의에서 이 부분은 대단히 호응이 높았는데, 특히 이지선 씨의 사례나 스티비 윈더에 대한 얘기는 피교육자들에게 상당한 공감을 얻어왔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 연구 제6장의 3. 조사결과 및 분석 “3) 교육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에 관한 언급을 참조할 것)

위 영상을 보면서 보조 강사와 주 강사가 전개한 대화는 아래와 같다.

**사회자 :** 실제로 보면, 장애인들도 서로 다를 뿐이고, 정말 그렇거든요. 제가 꽃꽂이를 아이들과 해 보면, 정말 서로 너무 다른 개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엄마들이 오시면, 금방 이건 우리 애가 한 거, 이렇게 알아보시거든요. 실제로 우리 능력이 특출한 장애인들 정말 많잖아요? 화면에 보시면, 스티비 윈더, 아~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Isn't She Lovely~ 그 노래 정말 좋잖아요? 안 좋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Isn't She Lovely가 딸 아이를 한 순간이라도 보고 싶었다고 딸에게 바치는 노래였다고 해요. 그리고 오체불만족 이 책 정말 감동깊게 읽었거든요. 강원래씨는 작년에 아마 강연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강원래 씨도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요. 장애는 하나

의 개성일 뿐이다. 이렇게...

**강연자** : 그래요.

**사회자** : 이희아 씨, 손가락이 네 개 뿐인데요. 정말 피아노 잘 치시잖아요. 연주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열 개인데도 잘 못치는데... 이지선씨도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 전에 힐링캠프라는 프로그램에 나오셨는데, 이경규 씨가 사고 전으로 돌아가라면 돌아가겠느냐, 하니까 이지선씨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경규씨가 방송이라고 가식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지선씨가 세상을 왜 이렇게 뼈뺏하게 보십니까? 꼬아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느꼈거든요.

**강연자** : 저도 이지선씨 나오는 그 장면을 봤는데, 정말 이지선씨가 대단하더라고요. 저 같으면, 다리 낮게 해 준다면, 얼른 좋습니다. 당장 고쳐주세요, 할 텐데 어째서 저렇게 대답을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요... 장애로 인해 새로 태어나는 능력, 이것을 이지선씨가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처음에 중도장애인이 되면 한 5년 동안은 매일매일 자살만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세월을 보내고 나면 장애인이 되면 정말 새로운 능력이 생깁니다. 비장애인들은 모르는 새로운 능력,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라든지, 자기보다도 더 장애가 심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나에게도 세상이 시키는 나의 역할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아마 이지선씨는 그런 것들을 모르면서 자기 잘난 맛에 혼자만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돌아가고 싶지 않다, 아마 이지선씨가 얘기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었을까? (중략)

**사회자** : 저, 김진호 저 친구 저 너무 팬이에요. 자폐성 장애지만, 수영 너무 잘하고, 잘생겼고, 몸도 너무 예쁘고... 호호호

**강연자** : 실제로 제가 지적장애인들과 경험한 건데요. 100m 달리를 하면 다른 비장애인 친구들은 모른 체 하고 달려가는데 이 친구들은 함께 달리다가 친구가 넘어지면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취업을 하면, 월급이 100만원이다, 그런데 집에 가서 월급 봉투를 열어보니까 만

원이 더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잠을 못자요. 이 돈 돌려줄 때까지. 그러면 과연 우리 사회에서 누가 장애인인가... (하락)

< 17> 시범 교육 '장애도 하나의 개성' 부분 대화 내용

6) 편리하면 모두에게 편리하다 : 유니버설 디자인 사례



<그림 10> PPT 견본 : 장애인에게 편리하면 모두에게 편리하다

위 PPT 견본 그림은 “장애인에게 편리하면 모두가 편리하다”는 소주제를 설명하는 그림이다. 그림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걸을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계단, 버튼을 누르면 계단이 한꺼번에 3개가 나란히 펼쳐 휠체어나 유모차도 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 등의 사례가 소개되었고, 이 또한 많은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에 대해서도 제6장 3. “3) 교육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참조할 것)

이 부분에서는 비데가 두 팔이 없는 장애인을 위해서 발명되었다가 지금은 모두에게 편리한 기기가 되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강연자 : 우리가 외국 여행을 할 때 보면, 리무진 버스 같은 것들이 있잖

아요?

**사회자** : 네.

**강연자** : 그런데, 우리나라 리무진 버스는 계단이 높잖아요? 그래서 공항에 가는 승객들이 킁킁대면서 무거운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잖아요? 근데, 외국에는 저상버스가 많아서 무거운 짐을 가볍게 밀고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편리하고 노인분들도 너무 좋아하죠.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80, 90세 넘어서까지 살게 되는데, 저렇게 사회 모든 분야를 장애인에게 편리하게 해 놓으면 비장애인은 물론이고 나중에 우리에게도 너무나 편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에게 편리하면 모두에게 편리하다' -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회자** : 아, 그렇군요.

**강연자** : 아무리 건장한 남자라도 무거운 짐을 든 순간에는 장애인이에요. 전국 법원의 법정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고 수십년 넘게 싸웠는데, 이제 모든 법원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든 법정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니까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저 같은 장애인들일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법원 직원들이었거든요? 정말로 사건 기록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데, 이거 정말 판사들은 잘 몰라요. 법원 직원들은 그 무거운 것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번에 대법원장 공관도 싹 고쳤는데, 이 때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삿짐센터 아저씨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계단이 싹 없어져서 짐 나르기가 편리하니까.

**사회자** : (PPT 동영상을 보며) 저 계단은 뭐가요?

**강연자** : 그렇습니다. 저게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계단이라고 하는 건데요. 기존에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라 해서 장애인 전용 계단이 있어서 장애인이 친구나 애인이랑 같이 가다가도 헤어져서 따로 가야 했는데, 이제는 저렇게 계단과 경사로가 함께 있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따로 헤어질 필요가 없는 거지요.

**사회자** : 그래요. 정말 디자인적으로도 정말 예쁜 것 같구요. 비데도 사

실은 두 팔이 없는 장애인을 위해서 발명된 건데,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다구요? (하락)

< 18> 시범교육 ‘장애인에게 편리하면 모두에게 편리하다’ 부분 대화 내용

7) 개선의 필요성 : 소수자 권리 보호와 사법부의 역할

- 다수에 의해 선출된 권력으로 구성된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사법부는 선출된 권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도록 한 헌법의 원리 ⇒ 소수자의 권리가 다수의 권력에 의해 무시되지 않도록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사법부에게 맡김.

- 사법부가 아니면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국가기관이 없다는 점 강조함으로써 사법부구성원으로 하여금 “우리의 역할이자 의무”임을 전파

- 장애유형별 특성 및 민원응대 등에서의 유의할 점
- 실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각 단계별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설명
- 가정법원 교육 시 : 성년후견제 설명

위 내용과 관련된 대화 내용을 정리해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사회자** :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 등 소수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원의 의무, 사명 같은 게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강연자** : 저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대법원장님을 너무 존경하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장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이게 헌법정신이라는 거예요. 다수에 의해 선출된 권력으로 구성된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사법부는 선출된 권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도록 한 헌법의 원리라는 게 소수자의 권리가 다수의 권력에 의해 무시되지 않도록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사법부에게 맡겼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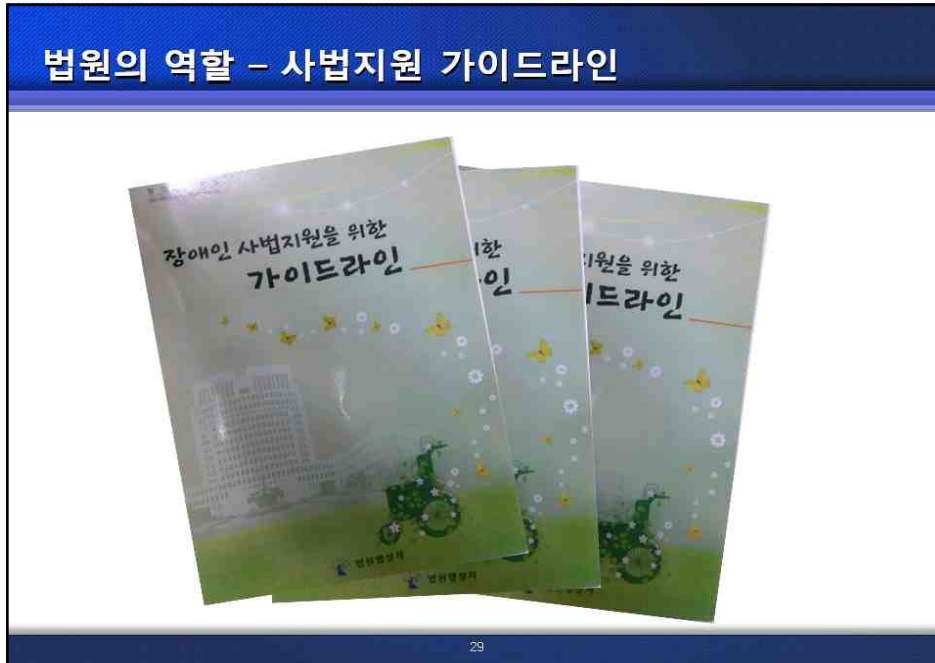
**사회자** : 네.... (하락)

<표 19> 시범교육 ‘소수자 권리 보호와 사법부의 역할’ 부분 대화내용

8)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사실 안내 및 활용 당부

-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책자 소개 및 활용 당부.

PPT 견본은 아래와 같다.



< 11> PPT 견본 :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안내

이 부분에서는 보조강사가 법원 직원들이 많이 인지하고 활용했으면 하는 뜻에서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책자 발간 사실을 알리고 많이 활용할 것을 당부했는데, 구체적인 대화내용은 생략한다.

## 9) 권고

여기에서도 보조강사가 판사 등을 비롯한 모든 법원 구성원들에게 한 번쯤은 장애체험을 해 볼 것을 권고하였는데, PPT 견본과 구체적인 대화내용은 생략한다.



< 12> 2013년 11월에 실시된 광주고법의 장애체험 모습

10) : 설문조사 협조 당부 및 감사 인사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와 함께 설문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당부를 끝으로 교육이 마무리되었다(PPT 견본 및 구체 대화 내용은 생략).



## 6장. 장애인식 개선 시범교육 실시 결과 분석

### 1. 설문조사의 설계

교육 실시 후 평가를 통해 성과가 있었던 것은 계승을 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는 주로 교육 참여 동기, 법정 의무교육 사전 인지 여부, 교육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 법원 직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 발간 사전 인지 여부, 교육 확대 필요성 여부 및 그 이유, 교육 효과 및 집중도 평가, 좋았던 점, 보완해야 할 점 등을 알아보려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 2.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과 질문 방식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자세한 설문조사 내용은 부록 4 참조).

질문	답변 문항	비고
1. 교육 참여 동기	① 법원 방침, 상관 지시 ② 주위 권유 ③ 연예인 출연 ④ 포스터, 언론보도 ⑤ 평상시 관심 ⑥ 업무상 필요 ⑦ 기타	복수 응답
2. 법정 의무교육 사전 인지 여부	① 그렇다 ② 아니다	
3. 새롭게 알게 된 점	① 장애인 차별적 용어 및 사례 ② 장애인 권익 보호는 법원의 의무	복수 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③ 장애는 '개성'이고, '차이'에 불과</li> <li>④ 장애인에게 편리하면 모두에게 편리</li> <li>⑤ '동정'이 아니라 '권리'가 필요하다는 인식</li> <li>⑥ &lt;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gt; 발간</li> <li>⑦ 잘 모르겠다.</li> </ul>	
4. 법원 직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장애인 차별 용어</li> <li>② 장애유형별 차별 사례</li> <li>③ 장애인 권익 보호는 법원의 의무</li> <li>④ 장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점의 정립</li> <li>⑤ '동정'이 아니라 '권리'가 필요하다는 인식</li> <li>⑥ &lt;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gt; 발간 및 활용 팁</li> <li>⑦ 잘 모르겠다.</li> </ul>	3순위 응답
5. '가이드라인' 발간 사전 인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그렇다 ② 아니다</li> </ul>	
6. 교육 확대 필요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li> <li>④ 조금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li> </ul>	5점 척도
6-1. 교육 확대 필요한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가 법원 의무라서</li> <li>② 직무에 도움되므로</li> <li>③ 사회적 약자 이해에 도움되므로</li> <li>④ 법원 이미지가 좋아지므로</li> </ul>	복수 응답

	⑤ 준법은 법원의 의무이므로 ⑥ 잘 모르겠다.	
7. 장애인식 개선교육 효과 평가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5점 척도
8. 교육 집중도 평가	④ 조금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9. 좋았던 점	① 연예인을 볼 수 있었던 점 ② 기획 참신 ③ 모르는 것을 많이 알게 된 점 ④ 직무에 도움된 점 ⑤ 기타	2개 복수 응답
10. 보완해야 할 점	① 산만함 ② 음향, 배경 등 무대장치 ③ 내용 부실(알맹이 부족) ④ 짧은 시간 ⑤ 기타	
※ 인구통계학적 질문	성별 / 연령 / 근무 연수	
※ 기타	하고 싶은 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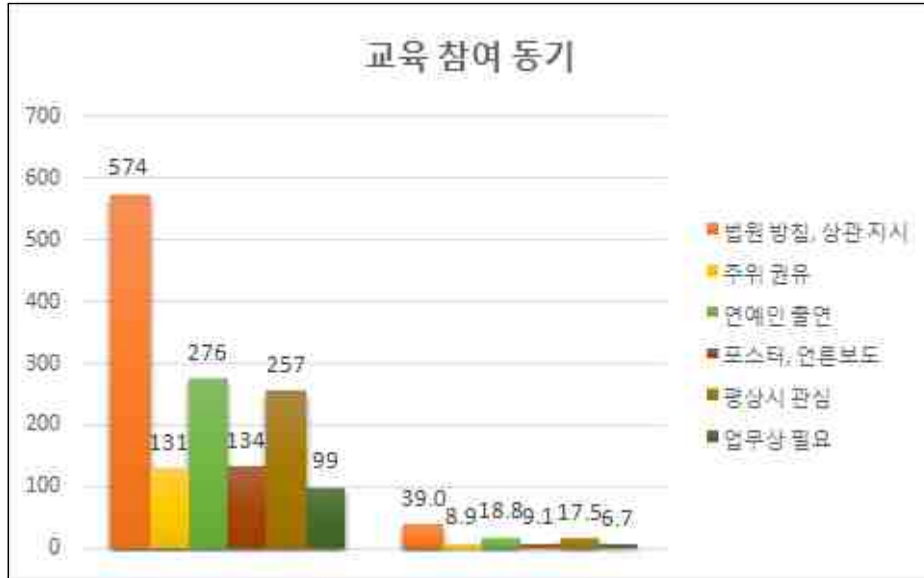
< 20> 설문조사 조사 설계 항목(음영은 無순위 복수응답 가능 항목)

### 3. 조사 결과 및 분석

이번 설문에는 총 1,094명의 피교육자가 응답하였다. 교육에 참여한 법원 직원이 대략 1,850여 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통상적으로 법원 교육에서는 교육 참가 여부가 체크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현장에서 설문지가 직접 배포·수거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설문조사 응답률이 59.1%인 것은 다소 의아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향후 교육 효과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 시에는 응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 1) 참여 동기

교육 참여 동기는 '법원방침 및 상관지시'가 전체 1471건의 응답 중 574건 (39%)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 13> 교육참여 동기 그래프

그 다음이 연예인 출연(18.8%), 평상 시 관심(17.5%) 순이었다.

이 질문은 무순(無順)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제시된 것이었기 때문에 누적 응답 건수가 많은 답변일수록 실제로 교육에 참여하는 데 가장 많은 동기를 부여한 답변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장애인식 개선교육과 같은 법정 의무교육은 되도록 법원의 방침으로 정해서 의무적으로 참석을 유도하는 것이 교육참석율 및 효과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강사진 섭외와 교육 주제 선정도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다.

복수응답 빈도표		응답	
		N	퍼센트
교육 참여 동기	법원 방침, 상관 지시	574	39.0

	주위 권유	131	8.9
	연예인 출연	276	18.8
	포스터, 언론보도	134	9.1
	평상시 관심	257	17.5
	업무상 필요	99	6.7
	합계	1471	100.0

< 21> 교육참여 동기 복수응답 빈도표

## 2) 의무교육 사전 인지 여부

법정 의무교육인지를 사전에 알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답변이 674건(62.3%)으로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답변과 비교해 6:4의 비율로 장애인식 개선교육이 교육 참여 이전에는 법정 의무교육인지를 몰랐다는 답변이 더 많았다.



<그림 14> 법정의무교육 사전인지 여부 그래프

이에 따르면, 법원이 소수자 권익 보호를 최고의 사명으로 삼아야 하는 만큼, 장애인식 개선교육이 성폭력 예방 교육처럼 법정 의무교육이라는 점을 널리 주지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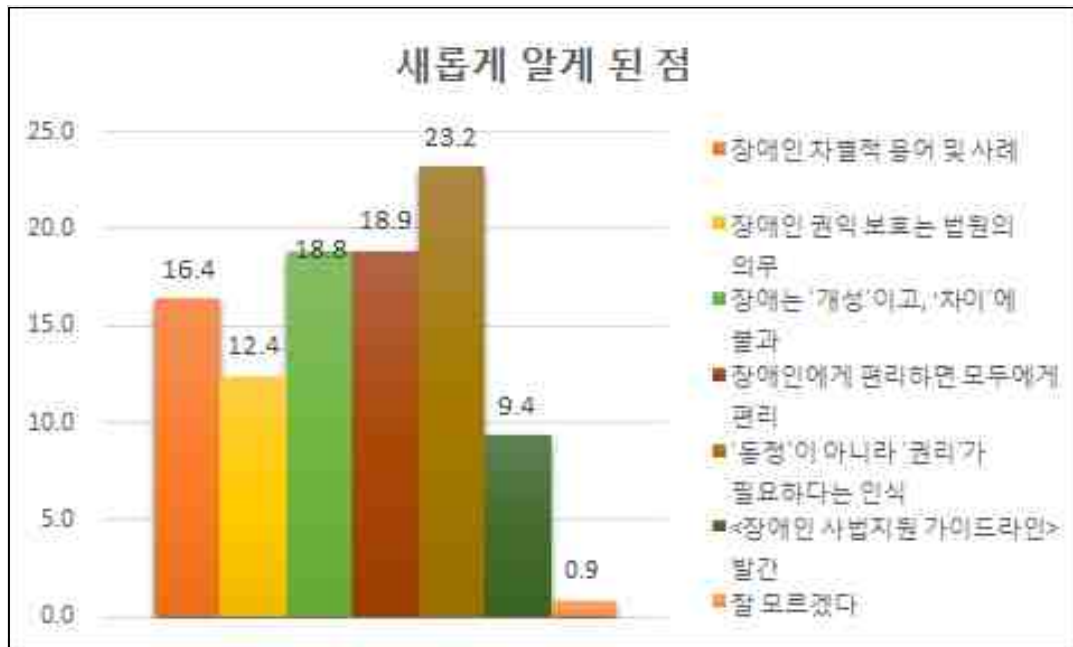
빈도표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	----	-----	--------	-------

법정 의무교육 사전 인지 여부	그렇다	407	37.2	37.7	37.7
	아니다	674	61.6	62.3	100.0
	합계	1081	98.8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3	1.2		
합계		1094	100.0		

< 22> 법정 의무교육 사전 인지 여부 빈도표

### 3)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

교육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 무엇인냐를 무순(無順) 복수응답 가능 질문으로 묻는 질문에서는 “‘동정’이 아니라 ‘권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누적 퍼센트 41.4%(응답건수 435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장애인에게 편리하면 모두에게 편리”(33.7%, 354건), “장애는 ‘개성’이고, ‘차이’에 불과하다”(33.5%, 352건)을 차지했다.



<그림 15> 교육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 그래프

그밖에도 “장애인 차별적 용어 및 사례”(29.2%, 307건), “장애인 권익 보호는 법원의 의무”(22.2%, 233건)도 무시할 수 없는 응답률을 보였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교육 내용에서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응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즉, 강의안과 교재를 어떻게 준비하고, 강사진들이 어떤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 피교육자들이 느끼는 인식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교육에서도 장애인을 특수한 어떤 사람, 특별히 배려해야 할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이 좋고, 장애는 단지 차이에 불과할 뿐,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여러 차례 강조된 바 있다.

또한, 강사진 소개 직후 곧바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소개했던 부분이나, “입법부나 행정부처럼 사법부를 선출직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한 것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라는 헌법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라는 현 대법원장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장애인 권익 보호가 법원의 의무라는 점을 강조한 것도 실제 교육에서는 피교육자들에게 강하게 어필한 내용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복수응답 빈도표		응답		케이스 퍼센트
		N	퍼센트	
새롭게 알게 된 점	장애인 차별적 용어 및 사례	307	16.4	29.2
	장애인 권익 보호는 법원의 의무	233	12.4	22.2
	장애는 '개성'이고, '차이'에 불과	352	18.8	33.5
	장애인에게 편리하면 모두에게 편리	354	18.9	33.7
	'동정'이 아니라 '권리'가 필요하다는 인식	435	23.2	41.4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 발간	176	9.4	16.7
	잘 모르겠다	16	0.9	1.5
합계		1873	100.0%	178.2%

< 23> 교육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 복수응답 빈도표

#### 4) 직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법원직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3순위까지 묻는 질문에서는 “장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점의 정립”이라는 응답과 “‘동정’이 아니라 권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누적 응답률에서 각각 23%를 차지해 새롭게 알게 된 점과 상관성을 보였고, “장애인 권익 보호는 법원의 의무라는 사실”과 “장애인 차별 용어”가 각각 20.9%와 13.8%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16> 법원직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그래프

이러한 통계치는 향후 법원에서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기획하고, 교재를 만들 때 상당히 참고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복수응답 빈도표		응답		케이스 퍼센트
		N	퍼센트	
법원직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장애인 차별 용어	399	13.8%	37.9%
	장애유형별 차별 사례	319	11.0%	30.3%
	장애인 권익 보호는 법원의 의무	605	20.9%	57.5%
	장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점의 정립	664	23.0%	63.1%
	'동정'이 아니라 '권리'가 필요하다는 인식	664	23.0%	63.1%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 발간 및 활용 팁	228	7.9%	21.7%
	잘 모르겠다.	12	.4%	1.1%
합계		2891	100.0%	274.5%

< 24> 법원직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복수응답 빈도표

법원 직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순위별로 살펴봐도 이러한 맥락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1순위 응답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한 것은 역시 “장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점의 정립(29.1%)”이었고, 그 다



음이 “장애인 권익 보호는 법원의 의무라는 사실(24.2%)”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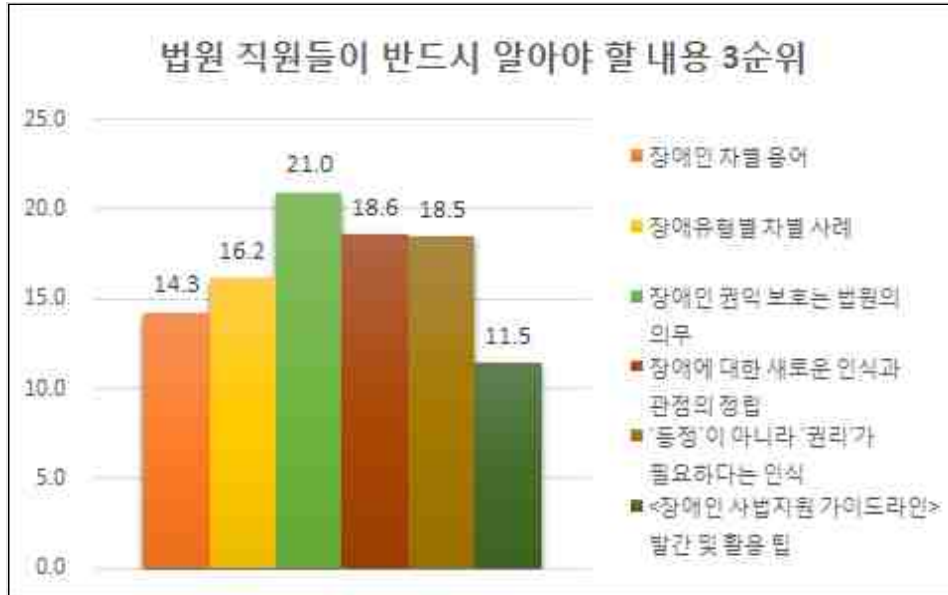


< 17> 법원직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1순위 그래프

이는 2순위와 3순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서, 2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권리가 필요하다는 ‘인식’(31.5%)” 이었고, 3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장애인 권익 보호는 법원의 의무라는 사실(21%)”이었다.



<그림 18> 법원직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2순위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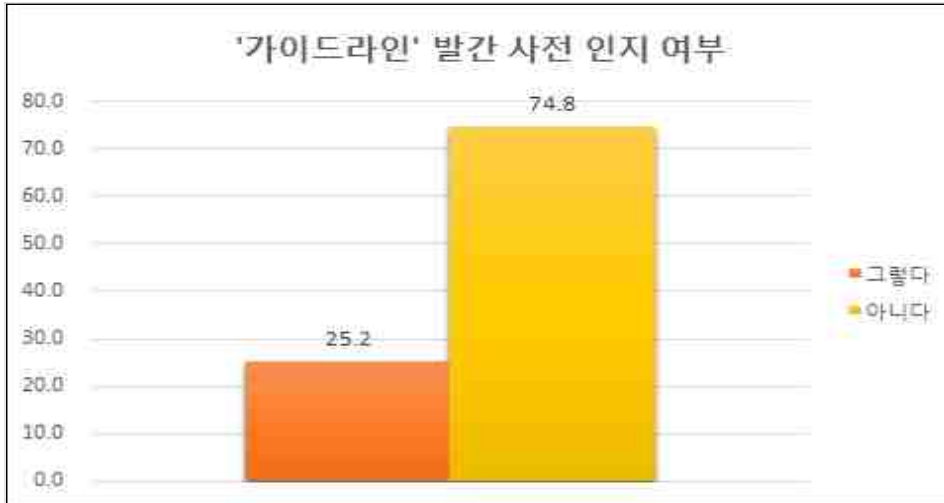
< 19> 법원직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3순위 그래프

그밖에도 꾸준히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장애인 차별 용어”였는데, 이는 상식적인 수준에서라도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법원 직원들의 인식의 발로가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다.

5) <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사전 인지 여부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사실을 교육을 듣기 전에 알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74.8%에 이르는 법원 직원들이 몰랐다고 답변해 가이드라인 발간 사실을 널리 홍보하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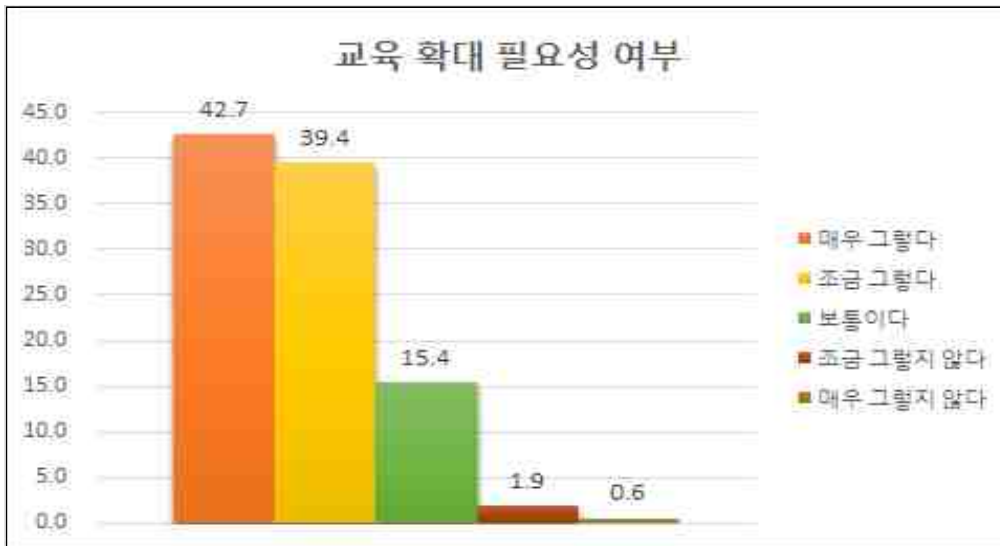
- 특히 시범 교육이 실시된 공간적 범위가 수도권이었고, 가이드라인이 수도권의 중심인 법원행정처에서 발간된 점을 견주어 생각해 보면,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소재하는 법원에까지 가이드라인 발간 사실을 폭넓게 알리고 이를 잘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원행정처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인 것으로 판단된다.



< 20> '가이드라인' 발간 사전인지 여부 그래프

#### 6) 필요성 여부

교육 확대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당연히 82.1%가 넘는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며, 부정적 답변은 2.5%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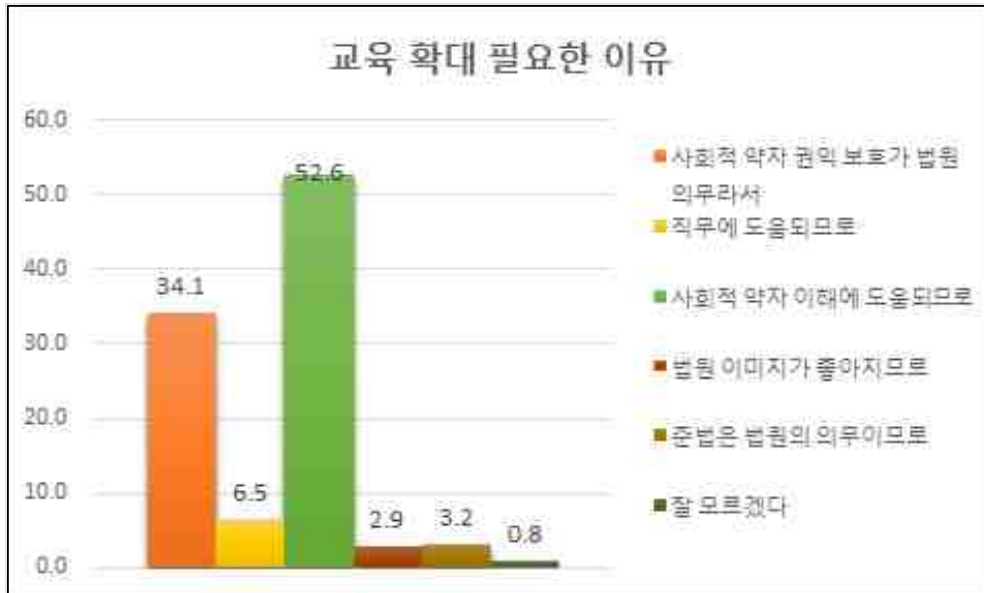


<그림 21> 교육확대 필요성 여부 그래프

그러나 162명(15.4%)에 이르는 응답자들이 긍정도 부정도 아닌 답변을 한 점에 비춰보면, 교육 내용을 조금 더 내실 있게 하고,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세심하게 교육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다.

6-1)                   **필요한 이유**

왜 교육확대가 필요하냐고 묻는 질문에서는 52.6%인 699명의 응답자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므로”라고 압도적인 답변을 보여주었고,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가 법원 의무라서” 라는 답변도 34.1%인 453명이 응 답해 적지 않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 22> 교육확대가 필요한 이유 그래프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법원 직원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자신의 직무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욕망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법원 직원으로서의 직업윤리 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 보호의 실체적 내용에 대해 알고 싶은 직업적 호기심을 법원 직원 상당수가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을 준비하고 내용을 만들 때 이런 점을 잘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복수응답 빈도표		응답		케이스 퍼센트
		N	퍼센트	
교육 확대 필요한 이유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가 법원	453	34.1%	49.2%

의무라서			
직무에 도움되므로	86	6.5%	9.3%
사회적 약자 이해에 도움되므로	699	52.6%	76.0%
법원 이미지가 좋아지므로	38	2.9%	4.1%
준법은 법원의 의무이므로	42	3.2%	4.6%
잘 모르겠다	11	.8%	1.2%
합계	1329	100.0%	144.5%

< 25> 교육확대가 필요한 이유 복수응답 빈도표

7) 개선교육 효과성 평가

시범 교육 형식으로 치러진 이번 장애인식 개선교육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교육확대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답변보다 약간 높은 85%의 응답자가 그렇다는 답변을 한 반면, 강한 부정을 한 답변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교육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림 23> 장애인식 개선교육 효과 평가 그래프

다만, 강한 긍정(34.9%)보다는 약한 긍정(50.1%)을 보인 응답자가 더 많았다는 점에서, 조금 더 세련된 음향이나 내실 있는 PPT 자료 준비 등을 통해서 교육 효과를 더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특이한 사실은 긍정적인 응답층은 성별에 따라서는 강한 긍정이나,

약한 긍정이나 하는 점에 있어서 큰 경향성이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연령대와 근무연차에 있어서는 나이가 많은 직원일수록, 그리고 오래 근무한 직원일수록 교육 효과를 묻는 질문에서 강한 긍정의 비율은 높은 대신, 약한 긍정의 비율은 점점 더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는 고연령층 및 오래 근무한 직원층에서 더 강하게 이번 교육이 매우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주는 결과로 분석되는 것이어서, 향후 이와 같은 장애인식 개선교육이 각급 법원 및 사법부 전체로 시급히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치라 하겠다.

			장애인식 개선교육 효과 평가				전체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지 않다		
성별	남	빈도	258	276	71	3	608	
		%	42.4%	45.4%	11.7%	.5%	100.0%	
	여	빈도	104	237	70	11	422	
		%	24.6%	56.2%	16.6%	2.6%	100.0%	
전체		빈도	362	513	141	14	1030	
		%	35.1%	49.8%	13.7%	1.4%	100.0%	
연령	20대	빈도	21	47	2	0	70	
		%	30.0%	67.1%	2.9%	0.0%	100.0%	
	30대	빈도	115	242	69	5	431	
		%	26.7%	56.1%	16.0%	1.2%	100.0%	
	40대	빈도	136	164	44	9	353	
		%	38.5%	46.5%	12.5%	2.5%	100.0%	
	50대	빈도	88	60	26	0	174	
		%	50.6%	34.5%	14.9%	0.0%	100.0%	
	60대이상	빈도	2	0	0	0	2	
		%	100.0%	0.0%	0.0%	0.0%	100.0%	
	전체		빈도	362	513	141	14	1030
			%	35.1%	49.8%	13.7%	1.4%	100.0%
근무 연수	5년 이하	빈도	84	146	14	2	246	
		%	34.1%	59.3%	5.7%	.8%	100.0%	
	5~10년	빈도	62	140	46	0	248	
		%	25.0%	56.5%	18.5%	0.0%	100.0%	
	10~15년	빈도	52	107	36	6	201	
		%	25.9%	53.2%	17.9%	3.0%	100.0%	
	15~20년	빈도	67	45	15	0	127	
		%	52.8%	35.4%	11.8%	0.0%	100.0%	
	20년 이상	빈도	95	72	30	6	203	
		%	46.8%	35.5%	14.8%	3.0%	100.0%	
	전체		빈도	360	510	141	14	1025
			%	35.1%	49.8%	13.8%	1.4%	100.0%

< 26> 장애인식 개선교육 효과 평가 인구통계학적 변수 적용 교차 빈도 비교표

8) 집중도 평가

이번 교육이 집중이 되었느냐는 질문에서도 역시 78%의 응답자가 긍정적 답변을 했고, 이 중에서 45.7%에 이르는 응답자가 매우 집중이 되었다고 답변함에 미루어 이번 교육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교육 효과성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연령층일수록, 오래 근무한 직원일수록 집중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강한 긍정은 높아지고, 약한 긍정은 낮아지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였는데, 이 또한 이러한 형태의 장애인식 개선교육이 각급 법원과 사법부 전체로 확대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보여주는 통계치가 아닌가 판단된다.



< 24> 교육집중도 평가 그래프

			교육 집중도 평가					전체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성별	남	빈도	301	183	101	11	3	599
		%	50.3%	30.6%	16.9%	1.8%	.5%	100.0%
	여	빈도	163	144	90	16	3	416
		%	39.2%	34.6%	21.6%	3.8%	.7%	100.0%
전체		빈도	464	327	191	27	6	1015
		%	45.7%	32.2%	18.8%	2.7%	.6%	100.0%
연령	20대	빈도	24	28	11	2	3	68
		%	35.3%	41.2%	16.2%	2.9%	4.4%	100.0%
	30대	빈도	186	144	86	12	3	431

	40대	%	43.2%	33.4%	20.0%	2.8%	.7%	100.0%
		빈도	157	121	60	10	0	348
	50대	%	45.1%	34.8%	17.2%	2.9%	0.0%	100.0%
		빈도	95	34	34	3	0	166
	60대이상	%	57.2%	20.5%	20.5%	1.8%	0.0%	100.0%
		빈도	2	0	0	0	0	2
전체	%	100.0%	0.0%	0.0%	0.0%	0.0%	100.0%	
	빈도	464	327	191	27	6	1015	
근무 연수	5년 이하	%	45.7%	32.2%	18.8%	2.7%	.6%	100.0%
		빈도	104	96	33	6	3	242
	5~10년	%	43.0%	39.7%	13.6%	2.5%	1.2%	100.0%
		빈도	108	87	55	3	0	253
	10~15년	%	42.7%	34.4%	21.7%	1.2%	0.0%	100.0%
		빈도	84	67	39	7	3	200
	15~20년	%	42.0%	33.5%	19.5%	3.5%	1.5%	100.0%
		빈도	64	29	22	5	0	120
	20년 이상	%	53.3%	24.2%	18.3%	4.2%	0.0%	100.0%
		빈도	102	45	42	6	0	195
	전체	%	52.3%	23.1%	21.5%	3.1%	0.0%	100.0%
		빈도	462	324	191	27	6	1010
전체	%	45.7%	32.1%	18.9%	2.7%	.6%	100.0%	
	빈도	462	324	191	27	6	1010	

< 27> 교육 집중도 평가 인구통계학적 변수 적용 교차 빈도 비교표

### 9) 좋았던 점

이번 교육에서 특히 좋았던 점이 무엇이었냐를 묻는 질문에서는 많은 응답자들이 “모르는 것을 많이 알게 된 점(38.2%, 누적응답 건수 564건)”을 꼽아 작지 않은 교육 성과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호 연계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5> 교육에서 좋았던 점 그래프



또, “연예인을 볼 수 있었던 점(25.2%)”과 같은 대중 흥미성 답변보다는 “기획이 참신해서 좋았다(34%)”는 답변이 더 많아 긍정적이었다.

복수응답 빈도표		응답		케이스 퍼센트
		N	퍼센트	
좋았던 점	연예인을 볼 수 있었던 점	372	25.2%	35.5%
	기획 참신	502	34.0%	47.9%
	모르는 것을 많이 알게 된 점	564	38.2%	53.8%
	직무에 도움된 점	34	2.3%	3.2%
	기타	6	.4%	.6%
합계		1478	100.0%	141.0%

< 28> 교육에서 좋았던 점 복수응답 빈도표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진한 글씨체 통계수치 참조), 이러한 수치는 성별, 연령대, 근무연수와 상관없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연예인에 상대적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2~30대나 여성층에서도 기획이 참신해서 좋았다는 답변이 다른 연령대나 남성층에 비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은 참고로 기록해 둘 만한 일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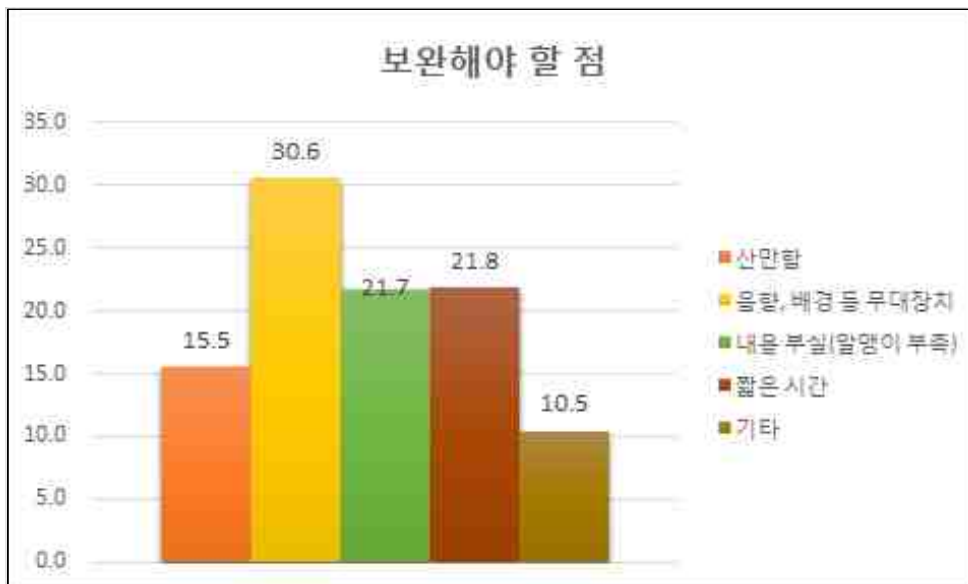
			좋았던 점					합계	
			연예인을 볼 수 있었던 점	기획 참신	모르는 것을 많이 알게 된 점	직무에 도움된 점	기타		
성별	남	총계	234	272	328	21	0	855	
		%	27.4%	31.8%	38.4%	2.5%	0.0%		
	여	총계	130	219	227	13	6	595	
		%	21.8%	36.8%	38.2%	2.2%	1.0%		
합계		총계	364	491	555	34	6	1450	
연령	20대	총계	26	27	45	6	3	107	
		%	24.3%	25.2%	42.1%	5.6%	2.8%		
	30대	총계	173	221	194	14	0	602	
		%	28.7%	36.7%	32.2%	2.3%	0.0%		
	40대	총계	100	165	204	11	3	483	
		%	20.7%	34.2%	42.2%	2.3%	.6%		
	50대	총계	65	78	110	3	0	256	
		%	25.4%	30.5%	43.0%	1.2%	0.0%		
	60대이상	총계	0	0	2	0	0	2	
		%	0.0%	0.0%	100.0%	0.0%	0.0%		
	합계		총계	364	491	555	34	6	1450
	근무연수	5년 이하	총계	100	120	129	14	3	366
%			27.3%	32.8%	35.2%	3.8%	.8%		
	5~10년	총계	87	132	112	10	0	341	

		%	25.5%	38.7%	32.8%	2.9%	0.0%	
10~15년	총계		80	88	115	5	0	288
	%		27.8%	30.6%	39.9%	1.7%	0.0%	
15~20년	총계		30	62	78	2	3	175
	%		17.1%	35.4%	44.6%	1.1%	1.7%	
20년 이상	총계		67	89	119	3	0	278
	%		24.1%	32.0%	42.8%	1.1%	0.0%	
합계	총계		364	491	553	34	6	1448

< 29> 교육에서 좋았던 점 인구통계학적 변수 적용 교차 빈도 비교표

### 10) 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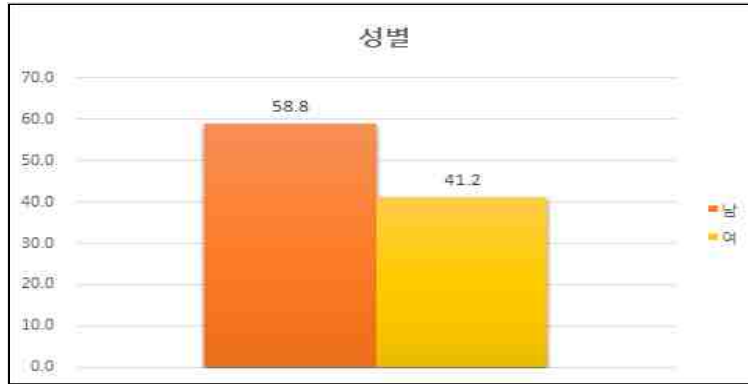
보완해야 할 점으로는 “음향, 배경 등 무대장치”를 꼽은 응답자가 30.6%로 가장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시간이 짧았다는 답변도 21.8%나 되어 기획이 참신하고 유명 강사진이 참여할 경우에는 10분 정도 교육 시간을 더 늘리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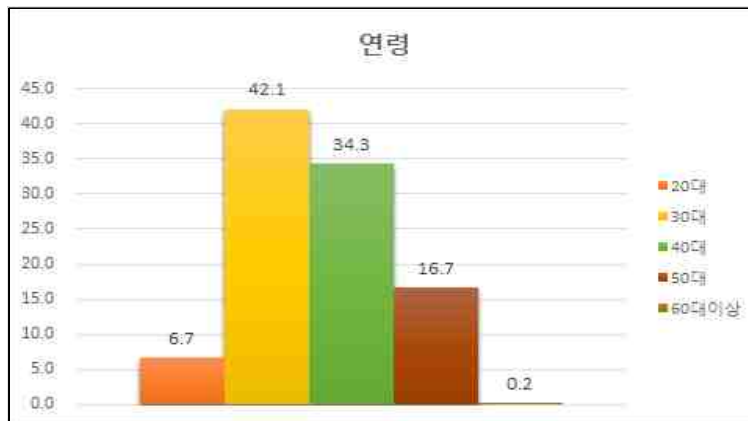
<그림 26> 보완해야 할 점 그래프

### 11) 인구통계학적 측면

이번 조사에는 남성이 58.8%를 차지해 여성보다 6:4의 비율로 더 많이 참여했고, 연령층은 30대가 42.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40대(34.3%), 50대(16.7%) 순이었다.



< 27> 성별 응답자 그래프



<그림 28> 연령대별 응답자 그래프

근무연수는 5~10년이 24.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5년 이하 (23.8%), 10~15년(19.9%), 20년 이상(19.6%) 순이었다.



<그림 29> 근무연수별 응답자 그래프

## 7장.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식 개선교육 프로그램 제작 표준 매뉴얼

제6장의 논의는 앞 제4장에서 소개한 시범교육의 준비 과정과 교육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4장과 교차해서 살펴보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1. 교육 준비와 기획

교육 준비 단계에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교육 기획안이 작성되면 법원장 등 간부들의 지지와 지원 이끌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중의 하나다.

기획 단계에서는 국내외 사례 수집과 강사진 리스트 작성, 장애인 정책 전문가들과 법원의 행정실무 책임자로 구성된 기획단(또는 기획위원회)을 꾸려서 여러 차례의 회의와 논의를 통해서 참신하고 새로운 기획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

교육준비 기간 및 섭외, 시나리오 작성, PPT 교본 작성, 사전답사 등 일련의 과정을 고려할 때, 교육을 기획하고 준비단계에 돌입하는 것은 최소 2달 전쯤에는 이뤄져야 한다.

### 2. 강사진 및 실무진 섭외

기획이 완성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담당 실무진과 강사진 섭외에 돌입해야 한다.

예산,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실무진은 장애인식 개선교육 경험이 있거나, 유사한 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풍부한 2인 내외의 전문가로 꾸리는 것이 적

절하다.

그 다음에는 실무진과 함께 논의하여 가장 적절한 강사진을 섭외하는 일에 돌입해야 한다. 이번 시범교육처럼 두 명이 함께 하는 토크쇼 방식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주 강사를 맡게 될 장애인 또는 장애인 정책 전문가는 자신의 이야기, 장애운동 또는 장애인 정책적 차원의 전문성과 에피소드 중심의 가벼운 이야기를 균형 잡아서 배치할 수 있는 인사로 섭외하는 것이 적절하다.

보조진행을 맡게 되는 사회자로는 유명 연예인이나 명망가를, 사회공헌적 차원에서 섭외하면 좋을 것이다. 이 경우, 유명 연예인이나 명망가에게는 사회공헌의 기회와 명예를 주고, 법원 측으로서는 노 개런티 또는 낮은 가격의 개런티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보조진행자를 섭외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것은 직접적으로 자신이나 가족의 얘기를 하는 장애인 당사자 또는 장애인 가족보다, 평소에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객관적 위치에서 강의를 리드하면서 보다 많은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적절한 섭외 시기는 가급적 빠르면 좋겠지만, 시나리오 및 PPT 교본 제작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교육이 이뤄지기 40~50일 이전에는 섭외가 되어야 한다.

### 3. 교육 내용 준비 및 주요 교육 내용 : 시나리오와 교본(PPT) 제작

시나리오 제작 시에는 반복적으로 2~3회 집중적인 토론과 워크숍을 열 필요가 있다. 토론에는 강의를 이끌어갈 주 강사와 보조강사, 그리고 교육장에서 현장 진행을 담당할 전문 인력과 법원의 행정실무 책임자가 함께 참여해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최대한 많은 대화를 통해서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들을 공동으로 취사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 초안이 작성되면 유무선 소통을 통해 시나리오를 다듬어 가면서 시나리오를 완성한다. 시나리오 완성 후 PPT 제작 기간, 사전 답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교육 시작 20일 전에는 이뤄져야 한다.

시나리오가 완성되면 주장사와 보조강사는 시나리오의 주요 내용을 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 숙지하고, 실무 담당 전문인력과 법원의 행정실무 책임자는 PPT를 제작해야 한다. PPT 제작을 위해서는 장애인정책 담당 부처 및 공공기관인 보건복지부, 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관련 영상 자료를 확보를 요청하고, 장애유형별 장애인단체와 이동권, 편의시설, 차별철폐 등 각 테마별 장애인운동 단체에게도 영상자료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애니메이션 제작자나 만화가 등을 섭외하여 적절한 그림을 확보하거나, 애니메이션 효과를 PPT 동영상에 삽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원활하고 효과적인 장애인식 개선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PPT 제작 과정에서 강사진들과도 계속 소통을 하면서 강사진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확보해 PPT에 반영하는 한편, PPT의 내용적 흐름이나 형식 등에 대해서도 강사진들에게 자문을 구해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 4. 사전 답사

앞서 제4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육에 앞서 반드시 해당 법원의 교육장을 찾아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조건인지 여부를 사전에 미리 점검해서 강사진 및 실무진들과 공유해야 한다. (<표 12> 법원 사전 답사 시 조사 체크 사항 서식 참조)

- 사전 답사 시 체크 항목은 법원명, 네비게이션 안내용 주소, 담당자 이름, 연락처, 교육일시 및 장소, 객석수, 예상 청중수, 장애인 이동 동선 및 접근성, 편의시설, 음향(마이크, PPT 음향 출력 방식 및 크기의 적정성), 조명(조도 및 작동법, 무대 VS 객석), 테이블 위치 및 의자 세팅 상태(무대에서 테이블과 의자가 놓이는 위치, 수병, 음료, 펜 등 제반 준비 사항), 스크린 작동 방식(커튼 또는 롤 스크린 방식 VS 붙박이 방식) 및 스크린 위치 및 크기, 빔 프로젝터 호환성 여부(USB 별도 파일 필요 여부), 빔프로젝터 방사 위치 등이며, 교육

성과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지 필요 부수 배포 장소 및 설문조사지 배부 수거 방식 등이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에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매우 중요한데, 만약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서 시급히 보완해야 할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하여 휴대용 경사로 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했듯이 이러한 사항들을 체크리스트 서식으로 만들어 답사 시 체크한 후 답사 시 찍은 사진과 함께 강사진 및 실무진과 반드시 공유해야 한다는 점이다.

## 5. 교육 시행

이렇게 사전 답사까지가 모두 끝나고 교육 당일이 되면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강사진의 경험이나 호흡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는 교육 시행에 앞서 리허설을 실시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교육 시행일에는, 강사진은 최소 30분 이전, 실무진은 최소 1시간 이전에 교육 장소에 나와야 한다. 강사진은 교육 준비를, 실무진은 현장 최종 점검(테이블 세팅, 조명, 음향, 스크린, PPT 정상작동 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 체크) 등을 실시하고 교육에 들어가게 된다.

교육 진행시에 강사진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청중들을 보며 사전에 짜인 각본에 맞추어 대화를 진행하고, 실무진은 그 대화에 걸 맞는 내용의 PPT 영상자료를 배경화면으로 띄우고, 상황에 맞는 음향효과 등을 적절히 곁들여야 한다.

## 6. 장애인식 개선교육 표준 프로그램 : 교육에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

본 연구진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식 개선교육이 될 수 있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시범교육을 실시하고 설문조사 형태로 피교육자들의 반응과 시범

교육의 성과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교육내용에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1) 소개

이 부분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보조강사(사회자) 자기 소개
- 주 강사의 장애인 관련 활동 내역 소개
- 사회자가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소개

### 2)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제 사례 1 - 용어

여기에서는 아래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사례를 소개하고 올바른 언어 사용에 대해 얘기할 필요가 있다.

- 장애인, 정상인, 바보, 천치, 불구, 청맹과니, 소경, 장님, 봉사 등 다양한 용어 차별 사례의 소개
- 기타 장애우 등 장애인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이해
- ‘장애인’이라는 명칭이 가장 일반적이고 합당하며, ‘특별한’ 사람이라는 인식보다는 흔히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친구나 가족, 동료처럼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중요함.

### 3) 장애인 차별의 실제 사례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여기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광범위하게 다뤄질 수 있다.

- 교육, 노동, 이동권(저상버스), 보험 가입, 시각장애인 유도 블럭 사례, 장



에이용 주차장 등 실제 생활에서의 장애인 차별 사례

- 차별행위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인식의 내용
- 우리 사회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 수준 및 개선 방향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인식 제고 방안 : 장애인 친구를 사귀거나,

동료 중에 장애인이 있는 등 일상 생활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아무런 불편 없이 자연스럽게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4) 대한 기본 이해 및 현황

이 부분은 장애인식 개선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내용 중 하나이므로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뤄줄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장애의 개념, 장애의 유형, 장애인의 현황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1) 장애의 개념과 범주 및 유형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따르면 장애는 의학적 손상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세계보건기구는 능력의 손상이 장애의 개념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장애의 개념을 정의할 때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사회생활의 참여에 대한 제한까지를 장애의 개념에 포함되도록 하는 추세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장애의 개념은 현행 장애인 관련 법률의 목적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대표적 장애인 관련 법률인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장애를 구분하고 있다.

신체적 장애는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며,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의 종류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만성신부전증 및 신장이식자
		심장장애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심장기능 이상자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호흡 기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기 능 이상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질
	장루·요루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정신적 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 애, 반복성 우울장애
	발달 장애	자폐성 장애	소아자폐, 비전형적 자폐 등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

< 30>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2) 등록 장애인 현황

2012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251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지체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절반을 넘는 133만 여명을 차지하고 있고, 시·청각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이 각각 전체의 10% 내외인 25만 명 내외를 차지, 이들 세 유형의 장애인만 77만 명을 넘는다.

등급별로는 1등급이 20만 여명, 2등급이 35만 여명, 3등급이 43만 여명을 각각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4~6급 장애인이 150여만 명이다.

등록 장애인은 2001년 113만명에서 최근 10년 간 100% 이상 급증하여 2009년까지 250만 명을 육박하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장애인 등록기준과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면서부터 상승세가 둔화 또는 정체되어 250만 명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다.

□ 유형별 장애등록 현황

(11.12월말, 천명)

종 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인 원	2,519	1333	261	251	261	17	3	60
구성비(%)	100	52.9	10.3	10.0	10.4	0.7	0.1	2.4

종 별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간질	지적	자폐성	정신
인 원	10	15	8	13	9	167	16	95
구성비(%)	0.4	0.6	0.3	0.5	0.4	6.6	0.6	3.8

□ 등급별 등록인원

(11.12월말, 천명)

등 급	전 체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인 원	2,519	208	351	433	389	531	607
구성비	100%	8.3	13.9	17.2	15.4	21.1	24.1

□ 연도별 등록인원

(단위: 천명)

연 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등록인원	1,134	1,294	1,454	1,611	1,777	1,968	2,105	2,247	2,429	2,517	2,519

< 31> 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2012, 보건복지부)

5) 유형별 특성 및 각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사법지원의 내용 및 장애인 민원 응대 요령

장애유형별 특성을 피교육자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포괄되어야 한다. 특히 15가지 장애유형 모두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현황만 소개해 주되, 뇌병변 장애, 발달장애의 특성 등은 사례를 들어서 제시하도록 한다.

특히 장애유형별 사법지원 내용 및 민원응대 요령과 관련해서는 미국 등의 해외사례와 함께 최근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장애인을 위한 사법지원에 관한 연구>나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보고서 등을 활용해 장애유

형별 특성이나 민원응대 시 유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도록 한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되는 15가지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뇌병변 장애, 발달장애 등 특수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 ex) 영화 ‘오아시스’를 통해 뇌병변 장애가 지적 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알려줌.
- 미국 법원의 장애인 코디네이터(ADA Site Coordinator) 사례 소개
- 장애유형별 특성 및 민원응대 등에서의 유의할 점
- 실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각 단계별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설명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므로 유형별로 간단한 사법지원 내역과 장애유형별 특징 및 유형에 따른 민원응대 요령 등을 소개하기로 한다.

가령 예를 들면, 장애의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지원이 요구된다(미국 위싱턴주 법원이 만든 가이드라인에서 원용)는 점을 소개한다. <장애인을 위한 사법지원에 관한 연구>(법원행정처, 2012) P48에서 재인용.

장애의 유형	가능한 지원의 예
요로 감염증	심리 중 수시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불안장애	반려 동물의 동반 허용
시각장애	심리 기일 통고를 큰 글자로 인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시청각 집중 방해 요소 감소
만성 피로	변호사 선임
다발성 경화증으로 외출 불가	자택에서의 심리
청각장애	수화통역사 제공
지체장애	시설의 장애물 제거, 접근이 가능한 법정에서 심리 실시
지적장애	인지 통역사(cognitive interpreter)의 허용
조울증	심리진행 중 발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리적 배려
학습장애(난독증)	문서로 된 정보를 읽어주기
강박신경증	다른 자리 배치하기

허리 부상	안락의자(reclining chair) 제공
-------	--------------------------

< 32> 장애유형별 사법지원의 내용(법원행정처, 2012)

아울러 의사소통, 심리적 배려, 신체적 배려, 보조동물 또는 보조기구의 지원 등 모든 장애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법지원 서비스를 적시하고, 각 장애유형별로 맞춤형으로 필요한 사법지원 서비스의 내역을 아래와 같이 소개할 필요가 있다. 이하 논의는 <장애인을 위한 사법지원에 관한 연구> P45~117까지의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보다 구체적인 유형별 특징 및 사법지원 내역은 이 책을 참조할 것).

(1) 시각장애

- **시각장애의 의의와 특성** : 시각장애는 선천적, 후천적 요인으로 보는 기능에 이상이 생겨 보지 못하거나, 보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시각장애인은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상 시각장애인은 다음과 같다(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참조).

가.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표 33> 장애인복지법상 시각장애인의 정의와 유형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사법서비스 접근 관련 법령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시각장애인 여부를 준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법지원이 필요한 '시각장애인'은 시각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법서비스 접근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을 두루 포함시켜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 12월 말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은 25만3천 명에 이른다(유형별/등급별 등록장애인 현황은 부록 6 참조).

시각장애인의 경우 사법서비스 접근에 있어, 시각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이동의 어려움, 소송 전반에 있어 정보 습득의 어려움이 따른다. 구체적으로는 법원 및 법정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성, 통상 인쇄물로 제공되는 소송 관련 자료

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로 연결된다.

-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사법지원의 내용 : 위와 같은 시각장애의 유형별 특성에 대한 소개와 함께 웹 접근성 지원, 민원인용 PC에 스크린 리더 설치, 음성출력 바코드 및 확대경, 음성출력기, 점자안내도 등의 구비, 점자 소송안내서 비치와 음성 청사안내 및 음성 소송안내 시스템 구축 등 시각 장애의 여러 유형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사법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 (2) 청각장애

- 청각장애의 의의와 특성 : 청각장애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거나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의 장애유형이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청각장애인 등록 숫자는 2012년 12월 말 기준 약 25만9천 명에 이른다.

- ①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②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 ③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④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34>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상 청각장애인의 정의와 유형

청각장애는 그 정도에 따라,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거나 잔존 청력이 있더라도 소리만으로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를 농(聾)이라 하고, 보청기와 같은 기구의 도움으로 잔존 청력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를 난청이라 한다. 농의 경우 그 특성 상 수화 등의 별도 통역수단이 필요한 반면 난청의 경우에는 보청기 등을 통해 소리를 크게 들려주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청각장애의 정의와 장애 정도에 따른 분류에 비춰보면, 청각장애인에게 획일적인 사법서비스가 제공되기보다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세분화된 편의제공이 필요하다. 청각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재판절차의 '의사소통'에서 소외되는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편의제공 역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2008년 조사에 의하면, 청각장애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사소통방법은 말(85.8%)이고, 다음으로 수화(5.6%), 구화(4.1%), 몸짓(3.3%), 필담(글로 쓰기)(1.1%) 순이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는 수단도 그에 상응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사법지원의 내용** : 이상과 같은 청각장애의 특징 소개와 함께 수화통역사 지원(수화통역사 선택권 및 교체권 인정, 수화통역사의 비밀유지 등을 포함), 청각 보조기기의 제공(난청인에 대한 FM 보청기 등), 법정 밖에서의 의사소통 지원(화상 전화, 온라인 문자상담 서비스), 문자통역 지원 등의 사법지원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 (3)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 **지체·뇌병변장애의 의의와 특성** : 지체장애는 사지와 몸통의 운동기능장애를 말한다. 사지는 상지와 하지로 나뉘며, 상지는 어깨관절에서 손가락 끝까지, 하지는 골관절에서 발가락 끝까지, 몸통은 척추를 중심으로 한 상반신과 목과 머리 부분을 말한다. 운동기능장애란 운동에 관계하는 기관이 있는 중추신경계, 근육과 뼈, 관절 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기간 일상생활이나 자기 혼자 보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지체장애는 일반적으로 열다섯 가지 장애유형 중에서 장애인 수가 가장 많다. 2012년 12월 말 기준, 132만2천명이 지체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다. 지체장애의 유형으로는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이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체장애인의 정의와 유형은 다음과 같다(장애인복지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별표 1).

- |  |
|--|
| <p>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p> <p>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p> <p>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p> |
|--|

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35>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상 지체장애인의 정의와 유형

뇌병변장애는 뇌손상,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별표 1).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표 36>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상 뇌병변장애인의 정의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유형별 장애인 출현 빈도를 보면, 어느 사회에서나 지체장애인이 가장 많고, 시각과 청각장애인은 서로 엇비슷한 수준이며, 그 다음 순서가 뇌병변장애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뇌졸중의 증가로 인해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뇌병변장애인 수는 시각장애인보다는 약 5천명이 많고, 청각장애인보다는 약 1천명이 적은 25만8천 명 가량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운동기능장애 및 신체적 장애의 특성상 법원 및 법정 등 시설과 설비 이용함에 있어 물리적 편의시설을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고,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여기에 더해 언어 능력 손상을 감안하여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 시범 교육에서도 영화 <오아시스>의 예를 들어 뇌병변장애가 언어능력 손상이 있기 때문에 지적 능력까지 떨어지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례가 많은데, 지적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장애라는 점을 설명한 바 있다.



- 지체·뇌병변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법지원의 내용 : 위와 같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의 유형 및 특성을 소개한 후, 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엘리베이터, 경사로 등), 보조기구 및 보조인 지원, 절차 진행의 배려(공판 및 변론기일에 오전 시간 및 출퇴근 시간 기피권 부여 등), 충분한 진술 시간 보장 등 의사소통 지원(언어소통에 지장이 있는 뇌병변 장애의 경우)과 같은 사법지원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 (4) 발달장애

- 발달장애의 의의와 특성 : 발달장애는 2007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제2호의 정의에 따른 장애유형으로, 동법 시행령에서는 발달장애를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로 분류하고 있다(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2012년 12월 말 기준,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인 17만3천명을 비롯하여 약 19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적장애인(知的障礙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특히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礙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 37>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상 발달장애인의 정의와 유형

발달장애는 나라마다, 학자에 따라, 개념을 규정하는 데 많은 차이가 있고, 한 마디로 정의하는 데 한계가 많은 장애유형이다. 그러나, 어떠한 개념 규정이건 간에 “정신적, 신체적 손상으로 인하여 지적능력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한 장애, 혹은 언어표현, 자기조절, 사회적응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독립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라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보인다.

발달장애의 가장 큰 특성은 ‘자기결정 능력의 부족’과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이다. 발달장애인은 스스로, 혼자 힘으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자기보

호조차 힘든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하여 학대, 무시, 성적 착취, 경제적 착취, 법적 권리침해, 인권침해의 희생자가 될 위험이 높다. 그래서 부모나 후견인이 그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무조건 발달장애인의 의사능력을 부정하고 의사소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의사능력이 부분적으로 제한되지만 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장애인의 특성과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의사소통 양식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신의 부족한 기억능력을 보완하여 기억재생을 용이하게 하고 그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시각적 자료를 활용한다든가, 보다 쉬운 차원의 설명 자료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또, 2013년 7월 도입된 성년후견제에 따른 후견서비스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 성년후견제는 도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제도 이용 매뉴얼이나 해설서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다행히 최근 <알고 이용하자! 성년후견제도 -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답게>(박은수, 2012, 남출판) 등 몇몇 서적이 출간돼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한편,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에 있어서는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발달장애인은 일관된 진술을 하기 어렵고, 질문자의 질문의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라도 언제 어느 분위기에서 진술을 하느냐, 어떤 질문형태로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진술이 달라진다. 유도신문을 하게 되면 유도한 대로 대답하게 된다. 형사절차에서는 경찰, 검찰, 법원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하게 되는데, 여러 차례의 진술이 반복될 경우 때면 진술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게 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에 의하여 자백이 성립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사법지원의 내용 : 이상과 같은 발달장애의 개념과 유형을 소개한 후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의 중요성과 진술 조력인 지원, 진술 특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실무 매뉴얼 마련, 녹화진술의 활용, 쉬운 용어 사용, 그림카드와 인형 등 보조도구의 활용, 진술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 조성, 이밖에 발달장애에 관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마련 필요성 등을 사법지원의 내용으로 제시한다.

(5) 정신장애

- **정신장애의 의의와 특성** : 정신장애는 일반적으로 정신기능의 손상으로 적절한 자기통제 내지 사회적 적응이 되지 않은 정신적 이상상태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정신장애인을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성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12월까지 등록된 정신장애인은 9만4천명이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정신장애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b>정신분열병</b>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과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으로 인격변화와 퇴행이 존재하는 경우
<b>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b>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
<b>반복성 우울장애</b>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

< 38>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 상 정신장애인의 정의와 유형

신체적 장애와 달리 정신장애는 시설에의 접근성과 지원의 문제보다는 장애 상태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교육, 전문가 참여의 보장 측면이 강조된다. 특히 유형별로 대표적 증상이나 재발요인, 접근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법절차 진행에 있어서 해당 장애별 증상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 소송지휘권 행사를 통해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사법지원의 내용** : 정신장애의 특징 소개(장애 유형을 특정하기 힘들 정도로 편차가 큰 장애임을 주지시키고, 사법지원의 핵심이 원활한 의사소통에 있음을 소개), 심리 및 의사소통의 편의 제공, 진술 조력인 또는 보조인 지원(필요 시), 신뢰관계인 및 후견인 지원(요청 시), 이밖에 정신장애인에 관한 별도의 교육과 매뉴얼 마련 필요성 등

지금까지 <장애인을 위한 사법지원에 관한 연구>를 기초로 장애 유형별 특

성 및 각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사법지원의 내용을 알아보았다.

여기에서는 이밖에도 민사 및 형사재판 절차에서의 사법지원 내용에 대한 것도 교육 내용에 포함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다.

- **민사재판 절차에서의 장애인 사법지원** : 접수, 소장심사 및 송달 과정에서의 장애인 사법지원, 제1회 기일 전 장애인 사법지원,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재판기일의 운영, 판결의 선고와 장애인 사법지원, 화해·조정 절차에서의 장애인 사법지원

- **형사재판 절차에서의 장애인 사법지원** : 형사소송에서의 장애인 사법지원 시 유의점, 공소제기 전 과정에서의 장애인 사법지원, 공소제기 후 제1회 공판기일 전 장애인 사법지원, 공판기일의 심리와 장애인 사법지원, 국민참여 재판에서의 장애인 사법지원, 판결 선고 과정에서의 장애인 사법지원

예컨대 민사재판 절차에서 소장 접수단계의 장애인 사법지원에 관한 내용을 하나 소개하면, 맨 처음 소장 접수 단계에서는 장애인 유무를 확인하고 장애인인 경우 유형에 맞는 장애인 사법지원 절차와 내용을 소개하도록 해야 한다. 또, 접수 담당직원은 부전지 등 적절한 방식을 사용하여 담당 재판부에 장애인 당사자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p45, 법원행정처, 2013).

이밖에 보다 구체적인 민·형사 절차에서의 장애인 사법지원에 관한 내용은 앞서 말한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P43~139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다음으로 장애인 사법지원 차원의 민원응대 요령을 <장애인을 위한 사법지원에 관한 연구>에 기초하여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이 민원인으로 법원을 찾을 경우를 대비하여 우선 법원의 홈페이지에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안내 메뉴가 있어야 한다. 장애의 유형에 따라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와 관련하여 누구에게 연락하면 되는지, 편의제공 신청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안내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안내제도는 홈페이지 뿐 아니라 민원 창구에서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장애인이 관련된 사건이 접수된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는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에 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결정권이 진정으로 보장되려면 미리 관련 지식 및 정보가 충분히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은 장애인이 해당 소송의 당사자이건 민원인이건 간에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①사전 안내에 따른 장애인의 편의제공 신청 ==> ②장애여부 확인 등 편의제공에 관한 조사 및 검토 ==> ③편의제공 여부에 관한 결정 ==> ④편의제공 사실 통지 ==> ⑤편의 제공

- **장애인의 편의제공 신청** :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제공을 신청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편의제공 신청은 미국 법원의 사례와 같이 서면으로 하거나 구두로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상당수의 장애인은 서면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두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면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표준 양식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미국 법원의 장애인 편의신청서 서식은 <그림 3>과 <표 9> 참조). 신청은 해당 절차의 담당판사, 법원 직원 또는 민원창구, 장애인 지원센터나 전담 직원 누구에게나 할 수 있어야 한다.

편의제공 신청서에는 편의를 필요로 하는 장애에 대한 진술 부분과 함께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편의제공 신청은 편의제공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편의제공이 필요한 시기의 5일 전에 마감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일의 여유를 두지 못하고 편의제공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편의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부득이 그럴 수 없는 때에는 기일을 변경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여야 한다.

- **편의제공에 관한 조사 및 검토** : 편의제공 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한 빨리 사안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개인별, 사안별로 적절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사안을 평가할 때 유연성을 잃지 말아야 하며, 가능하다면 불필요한 검토 과정은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와 어떠한 편의를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는 ①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률에 관한 검토, ②신청인의 장애 및 제공을 요청한 편의의 필요성과 제공 가능성에 대한 검토, ③개별적인 소송 및 해당 절차의 특징을 검토하여야 한다.

- **편의제공 여부에 관한 결정** : 편의제공이 필요한 소송 예정일 또는 편의제공이 필요한 날로부터 5일 이전에 신청을 받은 경우 또한, 신청인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편의를 제공 받을 자격을 갖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닌 한 해당 편의가 제공된다.

- (A) 법원에서 신청된 편의를 해당 소송 일자에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B) 다른 당사자에 대한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편의제공이 불허될 수 있다. 만일 신청된 편의를 법원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러한 편의(대체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A) 신청인이 관련 규정에 따른 편의제공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 (B) 요청된 편의가 과도한 재무 또는 행정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 (C) 요청된 편의가 근본적으로 법원의 사법절차,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경우
- (D) 신청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경우 신청인 또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경우

- **통지 및 편의제공 기간** : 법원은 신청인의 편의제공 신청을 받아들이거나 불허하는 경우 그에 관한 결정을 신속하게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사유를 밝혀야 한다. 편의제공은 이를 필요로 하는 기간

동안 유효하게 제공된다. 편의제공을 허가하는 결정을 할 때 유효기간을 명시할 수 있다. 이 때는 명시된 기간 동안 유효하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은 특정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편의 제공을 허가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이 민원인으로 소송에 단순 참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의사소통, 정보, 시설 등의 측면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 편의제공을 불허하거나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 장애인이 소송의 당사자 또는 민원인으로 법원을 찾았을 때의 응대 요령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장애인을 위한 사법지원에 관한 연구> 148~150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장애 유형별 특성 및 각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사법지원의 내용과 장애인 민원 응대 요령을 10여 쪽에 걸쳐 비교적 상세히 살펴보았다. 이어서 장애인 등 소수자 권익보호가 법원의 사명이라는 점을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 6) 등 소수자 권익보호는 법원의 사명이라는 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고, 장애인의 권익이 '동정적, 시혜적' 시각이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얘기하는 내용은 장애인식 개선교육의 핵심 중 하나이기 때문에 꼭 포함되어야 한다.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 소수자들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 헌법상 평등권
- “동등하다”는 의미 : “똑 같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
-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다른 점을 채워주는 사회적 시스템 필요

- 동정적 시각에 입각한 '배려'가 아닌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 7) 하나의 개성에 불과하다는 점

실제 시범교육에서 가장 호응이 높았던 내용 중 하나이다. 아래 사람들의 사례를 열거하면서 장애가 특별한 어떤 것, 또는 동정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키가 작고 큰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저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 스티비 원더(Stevie Wonder), 이지선, 강원래, 이희아,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 김진호, 김세진(이상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 선수), 오토다케 히로타다(おとたけひろただ) 등의 구체적인 사례

#### 8) 장애인에게 편리하면 모두에게 편리하다는 점 : 유니버설 디자인 사례

이 부분도 실제 시범 교육에서는 호응이 높았던 부분이다. 기존의 배리어프리(barrier-free) 단계에서 벗어나 왜 유니버설 디자인(UD, universal design)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필요한지를 구체적 영상 자료를 통해서 제시하면서, 고령화 사회에서 UD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UD가 얼마나 인권친화적인지 등을 설명하도록 한다. 여기에서 제시될 영상 자료나 교육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걸을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계단
- 버튼을 누르면 계단이 한꺼번에 3개가 나란히 펼쳐 휠체어나 유모차도 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
- 비데가 두 팔이 없는 장애인을 위해서 발명되었다가 지금은 모두에게 편리한 기기가 되었다는 점 등

#### 9) 장애인식 개선의 필요성 : 소수자 권리 보호와 사법부의 역할



위 6)번과 유사하지만 다른 내용이다. 7번에서는 동정이나 시혜가 아니라 '권리'적 측면에서 장애인의 권익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면, 여기에서는 장애인 등 소수자 권익보호가 왜 법원의 사명인지에 대한 설명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간략하면서도 분명하게 얘기해야 한다.

- 다수에 의해 선출된 권력으로 구성된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사법부는 선출된 권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도록 한 헌법의 원리 ⇒ 소수자의 권리가 다수의 권력에 의해 무시되지 않도록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사법부에게 맡김.

- 사법부가 아니면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국가기관이 없다는 점 강조함으로써 사법부구성원으로 하여금 “우리의 역할이자 의무”임을 전파

※ 가정법원 교육 시 : 2013년 7월 새로 도입된 성년후견제 설명

#### 10) <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사실 안내 및 활용 당부

마지막 단계에서는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책자 발간 사실을 소개하는 등 법원 직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책자 소개 및 활용 당부 등 사법부의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노력 소개 및 참여 호소

#### 11) 장애체험 권고 및 감사말씀과 마무리

장애체험 권고와 함께 감사말씀, 작별 인사 등을 하는 최종 단계다.

- 보조강사가 판사 등을 비롯한 모든 법원 구성원들에게 한 번쯤은 장애체험을 해 볼 것을 권고

- 감사 인사

## 7. 교육 성과 측정 및 평가

이렇게 교육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고 미흡한 점과 보완해야 할 점, 계승해야 할 점을 정리하여 향후 시행될 교육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설문조사를 통한 성과 평가 시에는 교육 참여 동기, 새롭게 알게 된 점, 교육 효과 평가, 교육 집중도 평가, 좋았던 점과 보완해야 할 점 등이 반드시 평가항목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법원 특성이나 시기적 특수성에 따라 이번 시범 교육에서처럼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사실 사전 인지 여부나, 장애인식 개선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이었는지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알아보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설문조사 통계가 나오면, 반드시 강사진과 실무진 등 관계자들과 공유하고, 향후 교육 시에 참고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 8장. 결론 및 제언

### 1.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식 개선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교육 시행방안

#### 1) 제고를 위한 장애인식 개선교육 시행의 필요성

장애인식 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부터 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법원의 역할에 대한 사법부 안팎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확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장애인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약자친화'적 사법부의 상을 정립하고, 사회 각계에 그 효과가 널리 퍼지게 할 필요가 있다.

#### 2)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태와 문제점

앞서 살펴보았듯이 장애인식 개선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법정 의무교육인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하지도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이겠지만, 실시하고 있는 부처 및 기관의 경우에도 문제점은 적지 않았다. 우선 교육 실시도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데다,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 단체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해서 공감도가 낮은 일방적인 1인 강사 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함으로써, 집중도와 효과성이 떨어지고 실제로 장애인식 개선에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 3) 효과적인 장애인식 개선교육의 시행 절차와 형식

이에 본 연구에서는 7차례에 걸친 시범교육을 통해서 “기획 ==> 섭외 ==> 시나리오 및 강의안 제작(워크숍, 회의) ==> 법원 선정 ==> 사전답사 ==> 리허설 ==> 교육 시행” 등으로 이어지는 철저하고 체계적인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하였고, 가능하면 1인 강사 위주의 일방적 주입식 교육이 아닌 2인 토크쇼 방식 등 참신한 기획으로 교육에 임하는 것이 교육 효과성 및 집중도 측면에서 매우 좋은 방안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 2.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식 개선교육 표준 프로그램(안)

본 연구에서는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식 개선교육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려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필수적으로 교육 내용(프로그램)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강사 소개 : 주 강사 및 보조강사와 강사로 참여하게 된 동기
-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제 사례 1 : 장애인, 정상인, 불구, 바보 등 용어에 있어서의 차별
- 장애인 차별의 실제 사례 2 : 교육, 노동, 이동권(저상버스), 보험 가입, 시각장애인 유도 블럭 사례 등
- 장애의 유형 및 유형별 특성 :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되는 15가지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뇌병변 장애, 발달장애 등 특수 유형에 대한 이해
- 각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사법지원의 내용 및 유형별 민원 응대 요령 : 미국 법원의 장애인 코디네이터(ADA Site Coordinator) 사례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인식 제고 방안
- 장애인 등 소수자 권익 보호는 법원의 사명이라는 점
- 장애도 하나의 개성에 불과하다는 점 : 스티비원더, 이지선 씨 등의 사례
- 장애인에게 편리하면 모두에게 편리하다는 점 : 유니버설 디자인 사례
- 장애인식 개선의 필요성과 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 : 헌법

상 사법부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구성된 이유

-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사실 안내 및 활용 당부
- 장애체험 권고 및 마무리

### 3. 정책적 제언

사법부는 국회나 행정부(수반인 대통령)와는 달리 국민의 직접 투표에 의한 선출직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이는 선출직들이 주로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다수의 이익에 충실한 점을 고려하여 대법원은 소수자의 권익보호에 철저하라는 헌법적 정신의 발로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법원을 위시한 사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법부 전체 차원에서 대대적이고, 체계적이며, 정기적인 장애인식 개선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바로 이 장애인식 개선교육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7차례에 걸친 시범교육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방안들과 미국 법원의 장애인 코디네이터 등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하여 장애인의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식 개선교육이 사법부에서 실시하는 일상적인 교육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급히 시행할 것을 제언 드린다.

### 4. 연구의 활용

본 연구는 효과적·효율적인 장애인식 개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로서 사법부 내에서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장애유형별 특성 및 이에 따라 필요한 사법지원의 내용에 관한 민원 업무 및 재판업무에 있어서 매뉴얼 등을 개선하는데 부분적 또는 전반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법원에서 장애인을 위한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직체계 및 실행방안을 수립할 때 본 연구에서 번역·소개한 ADA 코디네이터 등 미국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각급 법원 또는 지원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헌법재판소 등 사법·준사법 기관에서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제로 실시할 때 적지 않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진이 연구보고서와 함께 제출한 강의 동영상과 PPT 자료를 참고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 문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장애인개발원, 2008)

<장애인을 위한 사법지원에 관한 정책 연구>(법원행정처, 2012)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자료>(서울특별시, 2012)

<UN 장애인권리협약>(UN, 2006)

<UN 해설집>(국가인권위원회, 2007)

<UN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 상황 검토> p522, 경북대 법학논고 제39집, 권건보, 2012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국가인권위원회, 2011)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장애인들의 차별금지법 입법논의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김광이, 2005)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김대성, 2005)

<장애인복지법>(김종인·우주형·이준우, 2007, 서현사)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위한 헌법 개정 방안”(박은수, 2009)

<장애인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보건복지가족부, 2008)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경과와 의의”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염형국, 2009)

<장애인먼저 에티켓>(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2010)

<장애인을 위한 사법지원에 관한 정책연구>(법원행정처, 2012)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법원행정처, 2013)

<의지보조기 역사>(조일호, 2008)

참고한 홈페이지 <http://www.occourts.org> 2013년 10월 검색 및 번역

# 부록



부록 1. 법무부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시현황(최근 3년간)

연 번	실시 연도	주관기관	장소	강사	주요내용	비고
1	2011	청주교도소	직원교육실	김**	장애인 인식 개선 관련	
2	2011	창원교도소	창원교도소	김**	장애인 차별금지 내용	
3	2011	김천소년교 도소	직원교육실	윤**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4	2011	통영구치소	직원교육실	총무과 장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5	2011	천안개방교 도소	천안개방교 도소	오**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6	2011	대전소년원	대전소년원	김**	장애인날 관련 장애인 에티 켓 및 눈높이 교육 등	
7	2011	군산교도소	보안과 직원 교육실	동영상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동영상 교육(보 건복지부제작)
8	2011	부산교도소	부산교도소	문**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9	2011	여주교도소	청사직원교 육실	소장	월례조회 및 직무교육(장애 인식 개선 관련 동영상시청)	
10	2011	순천교도소	순천교도소	동영상	장애인 인식개선	동영상 교육
11	2011	김천소년교 도소	직원교육실	윤**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12	2011	춘천교도소	춘천교도소	현**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13	2011	홍성교도소	대회의실	이**	장애인식개선 동영상 시청	
14	2011	춘천보호관 찰소원주지 소	춘천보호관 찰소 원주지 소	허**	개인정보 보호법, 장애인 차 별금지법	
15	2011	의정부보호 관찰소	의정부보호 관찰소	이**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 제 등	
16	2011	대구보호관 찰소구미지 소	대구보호관 찰소구미지 소	이**	장애인차별금지 법률해설 등	
17	2011	청주보호관 찰소충주지 소	청주보호관 찰소충주지 소	이**	장애인차별금지법등 장애인식개선관련교육	
18	2011	춘천보호관 찰소속초지 소	춘천보호관 찰소속초지 소	이**	장애인정보접근성 등	
19	2011	공주교도소	대강당	이**	장애인차별금지 관련교육	
20	2011	경북직업훈 련교도소	경북직업훈 련교도소	권**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 제 등에 관한 법률교육	
21	2011	경북북부제1 교도소	청사 교육실	동영상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 배 려정책 동영상 시청	동영상 시청
22	2011	전주교도소	직원교육실	총무과 장	장애인차별금지법	
23	2011	해남교도소	해남교도소	총무과	장애인식개선 관련 동영상	

				장	시청	
24	2011	부산청소년 비행예방센 터	센터 내 1강 의실	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 제 등에 관한 법률	
25	2011	경북직업훈 련교도소	경북직업훈 련교도소	유**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 제 등에 관한 법률교육	
26	2011	청주교도소	직원교육실	최**	장애인 인식 개선 관련	
27	2011	청주여자교 도소	직원교육실	총무과 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집합교육	
28	2011	경북직업훈 련교도소	경북직업훈 련교도소	배**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 제 등에 관한 법률교육	
29	2011	청주출입국 관리사무소	청주출입국 관리사무소	과장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동영 상시청	
30	2011	통영구치소	직원교육실	총무과 장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31	2011	광주교도소	광주교도소	소장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32	2011	청주보호관 찰소	청주보호관 찰소	신**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33	2011	서울남부구 치소	서울남부구 치소대회의 실	경**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훈시 및 동영상 시청
34	2011	강릉교도소	강릉교도소 대강당	김**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35	2011	김천소년교 도소	직원교육실	윤**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36	2011	대구보호관 찰소	대구보호관 찰소	손**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도입 배정 및 주요내용	
37	2011	서울동부보 호관찰소	우리 소 강 당	송**	장애인차별금지법 취지 등	
38	2011	수원출입국 관리사무소	수원출입국 관리사무소	강**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내용	
39	2011	제주출입국 관리사무소	제주출입국 사무소 3층 회의실	김**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40	2011	전주출입국 관리사무소 군산출장소	전주출입국 관리사무소 군산출장소	연**	장애인 차별금지법 자체 교 육	
41	2011	의정부보호 관찰소고양 지소	의정부보호 관찰소고양 지소	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 제 등	
42	2011	천안교도소	직원교육실	김**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43	2011	서울소년분 류심사원	서울소년분 류심사원	한**	장애인 인권관련 조례 개정 설명	
44	2011	수원보호관 찰소안산지 소	수원보호관 찰소안산지 소	정**	장애인차별금지 법률 교육	
45	2011	성동구치소	성동구치소	동영상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46	2011	대구보호관	대구보호관	김**	장애인식개선 교육	

		찰소영덕지 소	찰소영덕지 소			
47	2011	창원교도소	창원교도소	윤**	장애인 차별금지 내용	
48	2011	충주구치소	교육실	김**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	
49	2011	장흥교도소	장흥교도소 교육실	김**	장애인 차별 금지법 등 예 방교육	
50	2011	안양교도소	안양교도소	이**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51	2011	청주소녀원	청주소녀원 회의실	김**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52	2011	서울소년분 류심사원	서울소년분 류심사원	한**	장애인 인권 및 처우 등 차 별 금지	
53	2011	치료감호소	2층 소강당	두**	장애인차별금지및차별사례	
54	2011	진주교도소	진주교도소	김**	장애인식개선 관련 내용	
55	2011	여수출입국 관리사무소	여수출입국 관리사무소	관리과 장	장애인 차별금지법	
56	2011	청주여자교 도소	직원교육실	총무과 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집합교육	
57	2011	청주청소년 비행예방센 터	청주청소년 비행예방센 터	동영상	장애인 차별 인식 개선교육	
58	2011	제주교도소	제주교도소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59	2011	대전교도소	대전교도소	김**	종교편향방지, 장애인차별금 지법	
60	2011	포항교도소	청사2층대회 의실	동영상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61	2011	대전보호관 찰소공주지 소	대전보호관 찰소공주지 소	김**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62	2011	전주소녀원	원내회의실	오**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63	2011	대구교도소	대구교도소 직원교육실	김**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64	2011	전주출입국 관리사무소 군산출장소	전주출입국 관리사무소 군산출장소	연**	장애인 인식개선위한 내용 (동영상시청등)	
65	2011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총무과 장	장애인차별금지	
66	2011	군산교도소	보안과 직원 교육실	동영상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동영상 교육(보 건복지부제작)
67	2011	대전보호관 찰소홍성지 소	대전보호관 찰소홍성지 소	양**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68	2011	청주출입국 관리사무소	청주출입국 관리사무소	과장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동영 상시청	
69	2011	안산청소년 비행예방센 터	이노아카데 미	한**	장애인식개선 관련 동영상 시청	
70	2011	안동교도소	청사 직원교 육실	권**	장애인 차별금지법 교육	

71	2012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총무과 장	장애인차별금지및장애인인식 개선	
72	2011	목포교도소	보안과 직원 교육실	동영상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보건복지부제공 동영상강의
73	2011	대전지방교 정청	대회의실	동영상	장애인식개선 동영상교육	
74	2011	제주소년원	제주소년원 회의실	문**	장애인 차별금지 홍보 동영 상 교육	
75	2011	대구구치소	대회의실	총무과 장	장애인식개선 관련 동영상	
76	2011	경북북부제2 교도소	청사 대회의 실	소장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77	2011	대구소년원	대구소년원 회의실	동영상	장애인 차별 금지	
78	2011	경주교도소	직원교육실	동영상	장애인식개선 동영상교육	
79	2011	수원출입국 관리사무소	수원출입국 관리사무소	이**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동영상 교육
80	2011	전주출입국 관리사무소	전주출입국 관리사무소	송**	장애인식개선 관련 내용	
81	2011	인천구치소	인천구치소	서**	장애인식개선 동영상 시청 등	
82	2011	부산교도소	부산교도소	문**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83	2011	강릉교도소	강릉교도소 대강당	김**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84	2011	여주교도소	청사직원교 육실	소장	월례조회 및 부패방지 교육 등(장애인식 개선 관련 동영 상 시청)	
85	2011	창원보호관 찰소진주지 소	창원보호관 찰소진주지 소	박**	장애인차별금지인식개선용 동영상 시청	
86	2011	공주교도소	대강당	정**	장애인차별인식개선 동영상	
87	2011	청주여자교 도소	직원교육실	총무과 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집합교육	
88	2011	춘천보호관 찰소강릉지 소	춘천보호관 찰소강릉지 소	김**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89	2011	안양소년원	안양소년원 직원회의실	오**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90	2011	영월교도소	청사 대회의 실	동영상	장애인차별금지법 동영상시청	
91	2011	청 주 보호관찰 소영동지 소	청 주 보호관찰 소영동지 소	안**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92	2011	서울소년원	서울소년원 대회의실	권**	공직사회 내 장애인 공생발 전 및 인식개선교육	

93	2011	창원보호관찰소통영지소	창원보호관찰소통영지소	강**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94	2011	춘천보호관찰소영월지소	춘천보호관찰소영월지소	안**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95	2011	서울구치소	보안과 직원교육실	동영상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영상	
96	2011	서울소년부류심사원	서울소년부류심사원	한**	장애인 복지관련 세심한 배려요망	
97	2011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동영상	장애인식개선 동영상교육	
98	2011	경북북부제2교도소	청사 대회의실	소장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99	2011	해남교도소	해남교도소	총무과장	장애인식개선 관련 동영상시청	
100	2011	홍성교도소서산지소	청사교육실	강**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101	2011	김천소년교도소	직원교육실	윤**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102	2011	대전보호관찰소	대전보호관찰소	동영상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103	2011	부산보호관찰소	본소 2층 직원회의실	조**	장애인식개선 관련 내용	
104	2011	인천보호관찰소	인천보호관찰소	박**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105	2011	울산구치소	울산구치소 직원교육실	박**	장애인식개선 및 인권 교육	
106	2011	수원구치소	수원구치소	동영상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107	2011	서울소년부류심사원	서울소년부류심사원	한**	장애인 편의시설 등 환경 조성	
108	2011	광주보호관찰소해남지소	광주보호관찰소해남지소	조**	장애인식개선 관련 동영상시청등 교육	
109	2011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과장	장애인차별금지법	
110	2011	서울소년부류심사원	서울소년부류심사원	한**	장애인 차별금지 등 관련 규정 숙지	
111	2011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출입국사무소 3층 회의실	김**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112	2011	부산소년원	대회의실	동영상	장애인협회제공 동영상시청	
113	2011	대전보호관찰소논산지소	대전보호관찰소논산지소	김**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114	2011	청주보호관찰소제천시지	청주보호관찰소제천시지	정**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115	2011	의정부교도소	직원교육실	동영상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116	2011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직원교육실	송**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시청각 및 법령 교육
117	2011	청주여자교도소	직원교육실	총무과 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집합교육	
118	2011	경북북부제2교도소	청사 대회의실	소장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119	2011	원주교도소	원주교도소	동영상	장애인 인식개선 동영상	
120	2012	제주출입국 관리사무소	제주출입국 사무소 3층 회의실	김**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121	2012	수원출입국 관리사무소 오산출장소	수원출입국 오산출장소	주**	장애인 인권교육 관련 내용	
122	2012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김**	장애인차별금지 관련교육	
123	2012	춘천보호관찰소	춘천보호관찰소	최**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124	2012	광주보호관찰소해남지소	광주보호관찰소해남지소	조**	장애인식개선 관련 동영상 시청등 교육	
125	2012	대구보호관찰소영덕지소	대구보호관찰소영덕지소	김**	장애인식개선교육	
126	2012	수원구치소	수원구치소	동영상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127	2012	청주보호관찰소제천지소	청주보호관찰소제천지소	정**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128	2011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청사2층 교육실	안**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129	2012	공주교도소	대강당	정**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130	2012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 관리과	사무소내 3층 중회의실	관리과 장	장애인인식개선 동영상 시청 등	
131	2012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 조사과	사무소내 회의실	조사과 장	장애인인식개선 동영상 시청 등	
132	2012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	사무소내 회의실	출장소 장	장애인인식개선 동영상 시청 등	
133	2012	경북북부제2교도소	청사 대회의실	소장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134	2012	청주외국인 보호소	청주외국인 보호소	과장	장애인차별금지법 내용	
135	2012	수원보호관찰소	수원보호관찰소	김**	장애인 차별 인식개선	

136	2012	창원청소년 비행예방센 터	자체회의실	센터장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137	2012	제주출입국 관리사무소	제주출입국 사무소 3층 회의실	김**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138	2012	수원출입국 관리사무소	수원출입국 관리사무소	박**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내용	
139	2012	전주출입국 관리사무소	전주출입국 관리사무소	전**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140	2012	대전보호관 찰소홍성지 소	대전보호관 찰소홍성지 소	최**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141	2012	대전보호관 찰소서산지 소	대전보호관 찰소서산지 소	동영상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142	2012	전주보호관 찰소정읍지 소	전주보호관 찰소정읍지 소	서**	종교편향방지 및 장애인차별 금지법 교육	
143	2013	화성외국인 보호소	3층 대회의 실	소장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동영상	동영상 교육
144	2012	천안교도소	직원교육실	강**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145	2012	서울구치소	청사3층 대 회의실	최**	인권의 의의 및 인권보장 방안	
146	2012	청주여자교 도소	직원교육실	총무과 장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147	2012	통영구치소	직원교육실	총무과 장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148	2012	청주교도소	직원교육실	최**	장애인 인식 개선관련	
149	2012	공주교도소	대강당	정**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150	2012	장흥교도소	장흥교도소 교육실	오**	장애인 인식 개선 관련 교 육	
151	2012	강릉교도소	강릉교도소 대강당	김**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152	2012	부산소년원	대회의실	동영상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	
153	2012	안동교도소	청사 직원교 육실	배**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154	2012	군산교도소	보안과 직원 교육실	동영상	장애인인식개선 관련 교육	동영상 교육(보 건복지부제작)
155	2012	부산보호관 찰소	본소 2층 직 원회의실	김**	장애인인식개선 관련 내용	
156	2012	천안개방교 도소	천안개방교 도소	홍**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157	2012	여주교도소	청사직원교 육실	윤**	인권강사초청교육(장애인식 개선관련등파워포인트교육)	
158	2012	화성외국인 보호소	3층 대회의 실	소장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동영상	동영상 교육
159	2012	경북북부제1	청사 교육실	동영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애니메이션 시

		교도소				청
160	2012	창원교도소	창원교도소	송**	장애인식개선	
161	2012	광주교도소	광주교도소	소장 등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162	2012	울산보호관 찰소	울산보호관 찰소	동영상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163	2012	청주여자교 도소	직원교육실	총무과 장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164	2012	공주교도소	대강당	정**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165	2012	충주구치소	교육실	김**	장애인 편의증진법 등	
166	2012	서울동부보 호관찰소	우리 소 강 당	송**	장애인 차별 예방 등	
167	2012	진주교도소	진주교도소	김**	장애인식개선 관련 동영상	
168	2012	천안개방교 도소	천안개방교 도소	홍**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169	2012	해남교도소	해남교도소	총무과 장	장애인식개선 관련 동영상 시청	
170	2012	제주출입국 관리사무소	제주출입국 사무소 3층 회의실	김**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171	2012	대구소년원	대구소년원 회의실	동영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172	2012	대구보호관 찰소 서부지 소	대구보호관 찰소 서부지 소	권**	장애인인식개선동영상시청	
173	2012	해남교도소	해남교도소	총무과 장	장애인식개선 관련 동영상 시청	
174	2012	화성직업훈 련교도소	화성직업훈 련교도소 대 회의실	동영상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175	2012	양주출입국 관리사무소	양주출입국 관리사무소	박**	장애인과 함께하는 에티켓	
176	2012	청주여자교 도소	직원교육실	총무과 장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177	2012	청주여자교 도소	직원교육실	총무과 장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178	2012	수원출입국 관리사무소	수원출입국 관리사무소	박**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내용	
179	2012	대구교도소	대구교도소 직원교육실	우**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180	2012	경북북부제2 교도소	청사 대회의 실	소장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181	2012	여수출입국 관리사무소	여수출입국 관리사무소	관리과 장	장애인 차별금지법	
182	2012	울산출입국 관리사무소	울산출입국 관리사무소	관리과 장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183	2012	서울남부구 치소	서울남부구 치소대회의	주**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훈시 및 동영상 시청



			실			
184	2012	전주출입국 관리사무소 군산출장소	전주출입국 관리사무소 군산출장소	정**	장애인 인식개선위한 내용 (동영상시청등)	
185	2012	부산소년원	대회의실	동영상	겉데기 장애인 복지법 바꾸 기	
186	2012	창원보호관 찰소	창원보호관 찰소	양**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187	2012	창원보호관 찰소	창원보호관 찰소	양**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188	2012	천안개방교 도소	천안개방교 도소	홍**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189	2012	대구센터	센터장실	동영상	장애인차별금지 및 장애인식 개선 관련 동영상 시청	
190	2012	서울북부보 호관찰소	서울북부보 호관찰소 강 당	동영상	장애인인식개선 동영상 시청	
191	2012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	사무소내 회 의실	관리팀 장	장애인에 대한 직접, 간접 차별내용 등	
192	2012	충주구치소	교육실	동영상	장애인식개선 관련	
193	2012	제주교도소	제주교도소	동영상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동영상시청(보 건복지부 제공)
194	2012	제주소년원	제주소년원 회의실	안**	장애인식개선 동영상 교육	
195	2012	대구보호관 찰소영덕지 소	대구보호관 찰소영덕지 소	이**	장애인식개선 교육	
196	2012	창원보호관 찰소통영지 소	창원보호관 찰소통영지 소	김**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197	2012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직원교육실	송**	장애인식개선 관 련 내용	시청각 및 법령 교육
198	2012	대전교도소	대전교도소	동영상	장애인식개선, 성매매방지	
199	2012	위치추적대 전관제센터	위치추적대 전관제센터	동영상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200	2012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 보호과	사무소내 회 의실	보호과 장	장애인인식개선 동영상 시청 등	
201	2012	서울남부교 도소	직원교육실	소장	장애인차별인식개선및 권리구제절차	시청각영상 보건복지부배포 자료
202	2012	제주교도소	제주교도소	동영상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동영상시청(보 건복지부 제공)
203	2012	대전보호관 찰소공주지 소	대전보호관 찰소공주지 소	조**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204	2012	대구출입국 관리사무소	대구출입국 관리사무소	김**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교육	
205	2012	창원청소년 비행예방센 터	자체회의실	동영상	장애인식개선관련영상시청	
206	2012	제주교도소	제주교도소	동영상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동영상시청(보 건복지부 제공)
207	2012	제주교도소	제주교도소	동영상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동영상시청(보 건복지부 제공)
208	2012	안산청소년 비행예방센 터	안산청소년 비행예방센 터 회의실	조**	장애인식개선 관련 동영상 시청	
209	2013	안산청소년 비행예방센 터	안산청소년 비행예방센 터 회의실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 안내 등	
210	2012	인천청소년 비행예방센 터	인천청소년 비행예방센 터	정**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211	2012	경주교도소	직원교육실	동영상	장애인식개선 동영상교육	
212	2012	전주소년원	원내회의실	남**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동영상시청
213	2012	창원보호관 찰소진주지 소	창원보호관 찰소진주지 소	박**	장애인차별금지인식개선용 동영상 시청	
214	2012	청주출입국 관리사무소	청주출입국 관리사무소	과장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 인식 개선	
215	2012	청주보호관 찰소충주지 소	청주보호관 찰소충주지 소	이**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216	2012	김천소년교 도소	직원교육실	장**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217	2012	경북북부제1 교도소	청사 교육실	동영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동영상 시청
218	2012	경북북부제2 교도소	청사 대회의 실	소장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219	2012	광주교도소	광주교도소	소장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220	2012	양주출입국 관리사무소	양주출입국 관리사무소	박**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 개 선 동영상 시청(보건복지부 자료 발취)	
221	2012	김천소년교 도소	직원교육실	장**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222	2012	청주교도소	직원교육실	이**	장애인 인식 개선 관련	
223	2012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청사교육실	강**	장애인식개선 동영상 교육	
224	2012	김천소년교 도소	직원교육실	장**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225	2012	수원구치소	수원구치소	동영상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226	2012	원주교도소	보안과 직원 교육실	동영상	장애 인식개선 동영상	

227	2012	통영구치소	직원교육실	총무과 장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228	2012	광주지방교 정청	직원교육실	동영상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동영상 교육(보 건복지부제작)
229	2012	서울소년분 류심사원	서울소년분 류심사원	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동영 상 시청 "장애인 차별금지 및 장애인식개선"	
230	2012	서울북부청 소년부행예 방센터	서울북부청 소년부행예 방센터	김**	장애인식 개선	
231	2012	인천구치소	인천구치소	서**	장애인식개선 동영상 시청 등	
232	2012	서울남부구 치소	서울남부구 치소대회의 실	주**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훈시 및 동영상 시청
233	2012	춘천교도소	춘천교도소	현**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234	2012	강릉교도소	강릉교도소 대강당	김**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235	2012	부산교도소	부산교도소	배**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236	2012	공주교도소	대강당	오**	장애인차별인식개선 동영상	
237	2012	홍성교도소	대회의실	이**	장애인식개선동영상시청	
238	2012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청사2층 교 육실	안**	장애인식개선 관련 VTR시 청	
239	2012	대전지방교 정청	대회의실	동영상	장애인식개선 동영상교육	
240	2012	대전교도소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소장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식개 선 교육	
241	2012	울산보호관 찰소	울산보호관 찰소	동영상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242	2012	성동구치소	성동구치소	동영상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243	2012	춘천보호관 찰소원주지 소	춘천보호관 찰소 원주지 소	허**	장애인식개선 교육	
244	2012	전주보호관 찰소남원지 소	전주보호관 찰소남원지 소	전**	장애인인식개선 관련 내용	
245	2012	인천구치소	인천구치소	서**	장애인식개선 동영상 시청 등	
246	2012	성동구치소	성동구치소	동영상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247	2012	의정부보호 관찰소	의정부보호 관찰소	박**	장애인 인식 개선 관련	
248	2012	수원출입국 관리사무소	수원출입국 관리사무소	박**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동영상 교육
249	2012	전주출입국 관리사무소	전주출입국 관리사무소	전**	장애인인식개선 관련 내용	
250	2012	인천구치소	인천구치소	서**	장애인식개선 동영상 시청 등	
251	2012	밀양구치소	밀양구치소	최**	장애인 차별금지 교육	

		총무과	청사2층 대 회의실			
252	2012	청주외국인 보호소	청주외국인 보호소	과장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 식개선	동영상 교육
253	2012	성동구치소	성동구치소	동영상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254	2012	청주보호관 찰소	청주보호관 찰소	안**	장애인식개선관련교육	
255	2012	서울구치소	청사3층 대 회의실	동영상	장애인차별금지 및 장애인 식개선	
256	2012	경북북부제3 교도소	직원교육실	동영상	장애인식개선 동영상교육	
257	2012	서울남부청 소년비행예 방센터	서울남부청 소년비행예 방센터	유**	장애인차별금지법	
258	2012	대전보호관 찰소논산지 소	대전보호관 찰소논산지 소	이**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259	2012	대구보호관 찰소구미지 소	대구보호관 찰소구미지 소	김**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교육 등	
260	2012	대전보호관 찰소	대전보호관 찰소	동영상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261	2012	안양교도소	안양교도소	동영상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262	2012	군산교도소	보안과 직원 교육실	동영상	장애인인식개선 관련 교육	동영상 교육(보 건복지부제작)
263	2012	인천보호관 찰소	인천보호관 찰소	김**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264	2012	수원보호관 찰소안산지 소	수원보호관 찰소안산지 소	정**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동영상 활용
265	2012	천안교도소	직원교육실	박**	장애인 차별사례 등 교육	
266	2012	영월교도소	청사 대회의 실	동영상	장애인 인식개선 및 차별예 방 동영상 시청	
267	2012	목포교도소	보안과 직원 교육실	동영상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보건복지부제공 동영상강의
268	2012	대전소년원	대전소년원	고**	장애인인식개선동영상시청 (장애인차별금지및 장애인식개선동영상)	
269	2012	의정부보호 관찰소고양 지소	의정부보호 관찰소고양 지소	김**	장애인 인식 개선 관련	
270	2013	서울서부보 호관찰소	서울서부보 호관찰소	동영상	장애인인식개선 동영상 시청	
271	2012	춘천보호관 찰소강릉지 소	춘천보호관 찰소강릉지 소	김**	차별금지법 및 인식개선 등	
272	2012	안양소년원	안양소년원	동영상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자료출처:보건

			직원의회의실			복지부 홈페이지
273	2012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	장**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274	2012	전주보호관찰소	전주보호관찰소	한**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275	2012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소강당	동영상	우리모두함께차별없는 사회를만들어가요	보건복지부 제작
276	2012	치료감호소	2층 소강당	김**	장애인차별 인식 개선 내용	
277	2012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윤**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278	2012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과장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동영상 교육
279	2012	울산구치소	울산구치소 직원교육실	현**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280	2012	대구구치소	대회의실	총무과장	장애인식개선 관련 동영상	
281	2012	서울소년원	서울소년원 대회의실	김**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282	2012	여주교도소	청사직원교육실	강**	장애인식 개선 등 동영상 시청	
283	2012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동영상시청	
284	2012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오산출장소	수원출입국 오산출장소	박**	장애인 인권교육 관련 내용	
285	2012	대구보호관찰소포항지소	포항지소 2층 강당	동영상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286	2012	전주교도소	직원교육실	총무과장	장애인 인식개선 동영상 교육 등	
287	2012	경북북부제2교도소	청사 대회의실	소장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288	2012	창원교도소	창원교도소	송**	장애 차별금지 내용	
289	2012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출입국 사무소 3층 회의실	장**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290	2012	충주구치소	교육실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	
291	2012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정**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 동영상 시청 등	
292	20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대회의실	동영상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293	2012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정**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 동영상 시청 등	
294	2012	포항교도소	청사2층대회	동영상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의실			
295	2012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정**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 동영상 시청 등	
296	2012	청주소년원	청주소년원회의실	김**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297	2013	영월교도소	청사 대회의실	동영상	장애인 인식개선 및 차별예방 동영상 시청 및 토의	
298	2012	부산구치소	직원교육실	김**	장애인식개선 관련교육 및 동영상시청	
299	2012	부산구치소	직원교육실	김**	장애인식개선 관련교육 및 동영상시청	
300	2012	부산구치소	직원교육실	김**	장애인식개선 관련교육 및 동영상시청	
301	2012	부산구치소	직원교육실	김**	장애인식개선 관련교육 및 동영상시청	
302	2012	경북북부제2교도소	청사 대회의실	소장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303	2013	의정부교도소	직원교육실	동영상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304	2013	춘천보호관찰소속초지소	춘천보호관찰소속초지소	이**	장애인복지법,차별금지법등	
305	2013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유**	장애인차별금지법	
306	2013	창원보호관찰소	창원보호관찰소	양**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307	2013	창원보호관찰소	창원보호관찰소	양**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308	2013	청주여자교도소	직원교육실	총무과장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309	2013	전주교도소	직원교육실	총무과장	장애인 인식개선 동영상 교육 등	
310	2013	광주보호관찰소해남지소	광주보호관찰소해남지소	표**	장애인식개선 관련 동영상 시청등 교육	
311	2013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오산출장소	수원출입국오산출장소	박**	장애인 인권교육 관련 내용	
312	2013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대회의실	주**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훈시 및 동영상 시청
313	2013	강릉교도소	강릉교도소대강당	최**	장애인 편견 없애기	
314	2013	공주교도소	대강당	오**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315	2013	대전교도소	대전교도소	부소장	장애인인식개선,보안교육	
316	2013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우리 소 가 당	조**	장애인 인식 개선 등	
317	2013	대구보호관	대구보호관	김**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교육	

		찰소구미지 소	찰소구미지 소		등	
318	2013	서울남부청 소년비행예 방센터	서울남부청 소년비행예 방센터	유**	장애인 인식개선 동영상 시 청	
319	2013	청주청소년 비행예방센 터	청주청소년 비행예방센 터	동영상	편견과차별없는사회,장애인 차별금지및권리구제방법및절 차교육	
320	2013	인천청소년 비행예방센 터	(사)어둠속의 대화	조**	서울서대문구소재어둠속의 대화체험교육장을방문시각장 애인의안내에따라1시간동안 시각장애체험활동실시	
321	2013	경북북부제2 교도소	청사 회의의 실	소장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322	2013	수원보호관 찰소	수원보호관 찰소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 주요내용	
323	2013	서울북부보 호관찰소	서울북부보 호관찰소 강 당	동영상	장애인 인권 다큐 동영상 시 청	
324	2013	장흥교도소	장흥교도소 교육실	김**	장애인 인식 개선 관련 교 육	
325	2013	수원출입국 관리사무소	수원출입국 관리사무소	박**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내용	동영상 교육
326	2013	청주출입국 관리사무소	청주출입국 관리사무소	과장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 인식 개선	
327	2013	대구출입국 관리사무소	대구출입국 관리사무소	김**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교육	
328	2013	창원청소년 비행예방센 터	자체회의실	동영상	장애인인식개선 관련 영상시 청	
329	2013	대구소년원	대구소년원 회의실	동영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330	2013	김천소년교 도소	직원교육실	박**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331	201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청사2층 교 육실	정**	장애인 차별 금지 교육	
332	2013	대전교도소	대전교도소	부소장	장애인인식개선	
333	2013	순천교도소	순천교도소	동영상	장애인 인식개선	동영상 교육
334	2013	공주교도소	대강당	오**	장애인인식개선 동영상	
335	2013	군산교도소	보안과 직원 교육실	동영상	아름다운 소통	동영상 교육(보 건복지부제작)
336	2013	안양교도소	안양교도소	방**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337	2013	청주여자교 도소	직원교육실	총무과 장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338	2013	대구구치소	대회의실	조**	장애인에대한 올바른 이해 와 인식개선	
339	2013	통영구치소	강당	총무과 장	장애인식전환 관련	

340	2013	서울소년부 류심사원	서울소년부 류심사원	한**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민원 응대 등	
341	2013	서울소년원	서울소년원 대회의실	이**	장애인식개선관련 내용	
342	2013	전주보호관 찰소남원지 소	전주보호관 찰소남원지 소	오**	장애인인식개선 관련 내용	
343	2013	경북북부제1 교도소	청사 교육실	동영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동영상 시청
344	2013	울산구치소	울산구치소 직원교육실	문**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345	2013	청주교도소	직원교육실	이**	장애인 인식 개선 관련	
346	2013	경북북부제2 교도소	청사 대회의 실	소장	장애인 차별금지 교육	
347	2013	진주교도소	진주교도소	김**	장애인식개선 및 차별금지	
348	2013	천안교도소	직원교육실	박**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349	2013	창원교도소	창원교도소	천**	장애인 차별금지 내용	
350	2012	대구보호관 찰소 상주지 소	소내 강당	동영상	장애인식개선관련동영상시청	
351	2013	안동교도소	청사 직원교 육실	장**	장애권리구제관련 교육	
352	2013	충주구치소	교육실	송**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외부강사
353	2013	여주교도소	청사직원교 육실	안**	성희롱예방 및 장애인식 개 선 교육	
354	2013	대전보호관 찰소홍성지 소	대전보호관 찰소홍성지 소	최**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355	2013	광주출입국 관리사무소	광주출입국 관리사무소	소장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동영상 교육
356	2013	창원보호관 찰소진주지 소	창원보호관 찰소진주지 소	김**	장애인 차별 금지법 이해	
357	2013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청사교육실	강**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358	2013	양주출입국 관리사무소	양주출입국 관리사무소	박**	영역별 인권위 주요 권고사 례로 확인하는 장애인 차별 사례 확인	
359	2013	대전교도소	대전교도소	소장	장애인 인식 개선 위한 차 별금지 교육	
360	2013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 관리과	사무소내 3 층 대회의실	관리과 장	장애인인식개선 동영상 시청 등	
361	2013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 조사과	사무소내 회 의실	조사과 장	장애인차별 금지법 등	
362	2013	부산보호관 찰소동부지	부산보호관 찰소동부지	홍**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소	소			
363	2013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	사무소내 회 의실	출장소 장	장애인에 대한 직접, 간접 차별내용 등	
364	2013	대구보호관 찰소영덕지 소	대구보호관 찰소영덕지 소	이**	장애인식개선 교육	
365	2013	안산청소년 비행예방센 터	안산청소년 비행예방센 터 회의실	강**	장애인식개선 관련 동영상 시청	
366	2013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직원교육실	송**	장애인식개선 관 련 내용	시청각 및 법령 교육
367	2013	대구교도소	대구교도소 직원교육실	주**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368	2013	홍성교도소	대회의실	이**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369	2013	천안개방교 도소	천안개방교 도소	정**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370	2013	공주교도소	대강당	오**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371	2013	청주여자교 도소	직원교육실	총무과 장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372	2013	전주출입국 관리사무소 군산출장소	전주출입국 관리사무소 군산출장소	정**	장애인 인식개선위한 내용 (동영상시청등)	
373	2013	서울구치소	청사3층 대 회의실	동영상	아름다운 소통/장구	
374	2013	충주구치소	교육실	소장	장애인등록증의 신분증 인 정	
375	2013	청주교도소	직원교육실	송**	장애인 인식 개선 관련	
376	2013	울산구치소	울산구치소 직원교육실	문**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377	2013	인천보호관 찰소서부지 소	인천보호관 찰소서부지 소	안**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378	2013	인천보호관 찰소부천지 소	인천보호관 찰소부천지 소	조**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379	2013	대구보호관 찰소영덕지 소	대구보호관 찰소영덕지 소	이**	장애인식개선 교육	
380	2013	화성직업훈 련교도소	화성직업훈 련교도소 대 회의실	동영상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381	2013	포항교도소	청사2층대회 의실	소장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382	2013	강릉교도소	강릉교도소 대강당	최**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383	2013	천안교도소	직원교육실	박**	종교, 장애인 차별금지 교	

					육	
384	2013	창원청소년 비행예방센 터	자체회의실	센터장	장애인인식개선 관련 내용	
385	2013	청주보호관 찰소충주지 소	청주보호관 찰소충주지 소	신**	장애인차별금지법등 장애인식개선관련교육	
386	2013	부산보호관 찰소	본소 2층 직 원회의실	김**	장애인인식개선 관련 내용	
387	2013	치료감호소	대강당	동영상	장애인차별 인식 개선 내용	
388	2013	창원보호관 찰소진주지 소	창원보호관 찰소진주지 소	문**	장애인 복지법	
389	2013	대구지방교 정청	대구지방교 정청	동영상	장애인식개선 동영상교육	
390	2013	밀양구치소 총무과	밀양구치소 청사2층 대 회의실	권**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391	2013	서울북부청 소년부행예 방센터	서울북부청 소년부행예 방센터	김**	장애인식 개선	
392	2013	청주보호관 찰소	청주보호관 찰소	안**	장애인식개선관련교육	
393	2013	안양교도소	안양교도소	동영상	장애인차별금지	
394	2013	성동구치소	성동구치소	동영상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395	2013	성동구치소	성동구치소	동영상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396	2013	청 주 보호관찰 소영동지 소	청 주 보호관찰 소영동지 소	이**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397	2013	성동구치소	성동구치소	동영상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398	2013	전주출입국 관리사무소	전주출입국 관리사무소	김**	장애인인식개선 관련 내용	
399	2013	광주교도소	광주교도소	소장 등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400	2013	춘천교도소	춘천교도소	김**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401	2013	강릉교도소	강릉교도소 대강당	최**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 구 현	
402	2013	제주소년원	제주소년원 회의실	김**	장애인편견해소동영상시청 장애인차별금지법교육	
403	2013	청주소년원	청주소년원 회의실	김**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404	2013	수원출입국 관리사무소	수원출입국 관리사무소	박**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405	2013	양주출입국 관리사무소	양주출입국 관리사무소	양**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 시청 각 교육	

406	2013	청주여자교 도소	직원교육실	총무과 장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407	2013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	사무소내 3 층 대회의실	관리과 장	장애인과 함께하는 에티켓 교육 등	
408	2013	군산교도소	보안과 직원 교육실	동영상	장애인차별인식개선	동영상 교육(보 건복지부제작)
409	2013	전주보호관 찰소	전주보호관 찰소	두**	장애인식개선관련동영상시청	
410	2013	대전지방교 정청	대회의실	윤**	장애인에 대한 이해	
411	2013	경북북부제3 교도소	직원교육실	동영상	장애인식개선 동영상교육	
412	2013	전주출입국 관리사무소 군산출장소	전주출입국 관리사무소 군산출장소	정**	장애인 인식개선위한 내용 (동영상시청등)	
413	2013	창원교도소	창원교도소	윤**	장애인식개선	
414	2013	여주교도소	청사직원교 육실	이**	장애인처우기법	
415	2013	안양소년원	안양소년원 직원회의실	동영상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자료출처:보건 복지부 홈페이 지
416	2013	경북북부제1 교도소	청사 교육실	동영상	장애인 차별 및 인식 개선 교육	동영상 시청
417	2013	광주지방교 정청	직원교육실	동영상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동영상 교육(보 건복지부제작)
418	2013	대전소년원	대전소년원	곽**	장애인에 대한 시선 및 배려 등	
419	2013	서울남부구 치소	서울남부구 치소대회의 실	박**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훈시 및 동영상 시청
420	2013	경북직업훈 련교도소	경북직업훈 련교도소	강**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장애인 차별금지	
421	2013	공주교도소	대강당	윤**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422	2013	창원보호관 찰소진주지 소	창원보호관 찰소진주지 소	김**	장애인 인권 보호	
423	2013	인천구치소	인천구치소	김**	장애인식개선 동영상 시청 등	
424	2013	인천구치소	인천구치소	김**	장애인식개선 동영상 시청 등	
425	2013	전주소녀원	원내회의실	남**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426	2013	춘천보호관 찰소	춘천보호관 찰소	이**	장애인복지법, 차별금지법 등	
427	2013	춘천보호관 찰소강릉지 소	춘천보호관 찰소강릉지 소	김**	차별금지법 및 인식개선 등	
428	2013	경주교도소	직원교육실	동영상	장애인식개선 동영상교육	
429	2013	양주출입국	양주출입국	이**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 시청	

		관리사무소 고양출장소	관리사무소 고양출장소		각 교육	
430	2013	청주보호관 찰소제천지 소	청주보호관 찰소제천지 소	남**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431	2013	목포교도소	보안과 직원 교육실	동영상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보건복지부제공 동영상강의
432	2013	해남교도소	해남교도소	총무과 장	장애인식개선 관련 동영상 시청	
433	2013	대구청소년 비행예방센 터	강당	권**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434	2013	부산교도소	부산교도소	문**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435	2013	의정부교도 소	직원교육실	동영상	장애인식개선관련내용	
436	2013	안동교도소	청사 직원교 육실	김**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437	2013	부산구치소	직원교육실	동영상	장애인식개선 동영상교육	

## Central Justice Center

Santa Ana, CA 92701

출처 : <http://www.occourts.org/directory/ada/>

### 시설 안내

**일반 주차:** Santa Ana는 Civic Center Area에 주차 미터기를 설치했습니다. 유료 주차장은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공공 승강기는 동관 및 서관 전층에서 운행합니다.

**공중 화장실 - 서관:** 공중 화장실은 승강기 근처에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 - 동관:** 1층 및 2층 화장실은 로비 동쪽에 있습니다. 3층 화장실은 승강기들 사이에 있습니다. 4층부터 11층에 있는 화장실은 승강기 서쪽에 있습니다.

### 장애인 시설 안내

**주차:** Parton Avenue와 Bush Street에 위치한 주차 미터기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료입니다. Civil Center West 및 Flower Street에 위치한 건물 근처에 있는 장애인용 유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배심원용 (Juror) 주차장:** 이에 대한 정보는 Office of the Jury Commissioner의 연락처인 (714) 834-70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장애인용 화장실은 전층에 있습니다. 1층 화장실은 서관 남쪽 끝에 위치한 보안 창구 근처에, 2층 화장실은 서관 승강기 근처에, 3층 화장실은 승강기 사이에, 4층부터 11층에 있는 화장실은 승강기 서쪽에 있습니다.

### 서비스 안내

**음식:** 법원 구내 식당은 동관 3층에 위치하며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중전화:** 법원 전층에 있습니다.

### 장애인 서비스 안내

장애인용 편의제공에 대한 정보는 법원 메인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개별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원 직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안내 서비스는 신청하시는 경우 제공됩니다.

장애인 보조견(Service animals)을 환영합니다.

**공중전화:** 장애인용 전화가 1층 및 3층부터 11층에 있습니다.

**TDD(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신장치) 유료 전화**는 서관 3층 승강기 옆과 Jury Services에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경우 언어 및 미국표준수화(ASL) 통역사가 도움을 드립니다(아래 신청서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청각장비 또는 컴퓨터 지원에 의한 전사 장비**는 청각을 상실한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법원 방문시 이러한 보조청각장비, 컴퓨터 지원에 의한 전사 장비 또는 ASL 통역사가 필요하신 경우, 미리 아래 링크의 편의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657) 622-729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성.** 보안관(Sheriff)이 귀하가 증인, 소송당사자 등으로 법원을 방문하는 경우 어디로 가실지 또한 대체 서비스를 찾으시는 경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귀하가 심리에 참여하거나 증인인 경우, 편의제공 사무실 연락처인 (657) 622-776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직원이 귀하의 필요에 따른 요청에 응할 것입니다.

### 서비스 신청 및 제안서

법조인들과 행정 직원들은 모든 분들이 법원의 서비스와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신청과 제안을 환영합니다. 1층에 위치한 보안 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 신청서 및 제안서를 작성한 후 근무 중인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시

기 바랍니다. 또한, 법원 직원은 귀하의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신청서는 다음 주소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Orange County Superior Court  
ADA Coordinator P.O. Box 1994  
Santa Ana, CA 92702

편의제공 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링크된 사법 위원회(Judicial Council)의 신청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편의제공 서비스 신청

법원의 목적 중 하나는 가능한 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고 평등하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지역사회 삶의 질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사법 위원회(California Judicial Council)는 법원 절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특별 편의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법원 규칙(Rule of Court)를 제정하였습니다. 편의제공 신청서는 법원 로비 및 법원 내 모든 카운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신청서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고등법원, ADA 정보 웹사이트(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Orange ADA Information Website)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법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직접 “편의제공 신청서”라는 문서를 다운로드 하기 위하여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본 신청서를 읽기 위해서는 어도비 프로그램이(Adobe Acrobat Reader) 필요합니다. 동 프로그램 다운을 위하여 여기를 클릭하세요. 어떤 제안이나 의견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작성된 신청서를 민원실(public assistance window) 직원에게 제출하시거나 다음 주소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Orange County Superior Court  
ADA Coordinator  
P.O. Box 1994  
Santa Ana, CA 92702

고등법원은 귀하가 가능한 한 편리하게 법원을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법원과 직원들은 귀하에게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도움이나 편의제공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편의제공 가능성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편의제공 사무실 연락처인 (657) 622-776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안이나 의견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 **미국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고등법원은 장애를 이유로 법원의 프로그램, 서비스, 혜택이나 활동에 대한 이용, 접근이나 운영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법원 관련 ADA 사안에 대한 질문, 불만이나 추가 정보 요청은 법원의 ADA 코디네이터(ADA Site Coordinator)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ADA 코디네이터는 모든 불만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불만은 차별적인 행위가 발생되었다고 주장되는 날부터 구십(90)일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Central Justice Center의 ADA 코디네이터의 주소와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700 Civic Center Drive West Santa Ana, CA 92071

전화: (657) 622-7766

오렌지 카운티 고등법원 및 다른 사법 센터의 시설/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는 법원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내문 (Instruction Sheet)**

**MC-410**

**(법원 이용자용)**

#### **장애인의 편의제공 신청서 및 회신**

(Per. C.R.C. 1.100)

**참고로 본 안내문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1. 법원 방문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 신청서 MC-410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원 직원에게 요청하시거나 ADA 코디네이터의 연락처인 657-622-7766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 질문이 있으신 경우 “편의제공 신청서”의 신청인 부문에 귀하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해당하는 경우)를 남기시면 직원이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2. 작성하신 신청서를 법정이나 제출 카운터에 있는 직원에게 제출하시거나 다음 주소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최소 5일 전에 법원에 해당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Central Justice Center ADA Site Coordinator 귀하  
700 Civic Center Drive West Santa Ana CA 92702

법원 공무원이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할 것입니다. 법원이 귀하의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귀하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C.R.C.1.100참조). 귀하는 가능한 한 우편으로 또는 해당하는 경우 다른 형식으로 본 조치에 대한 회신을 받을 것입니다. 귀하의 신청 상태에 대하여 확실하지 않으시면, ADA 코디네이터 연락처인 657-622-7766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개정. 2009년 12월 21일)

# Harbor Justice Center Laguna Hills

Civil/Small Claims Division

23141 Moulton Parkway

Laguna Hills, CA 92653-1206

(657)622-5700

## 시설 안내

**일반 주차:**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Moulton Parkway에서 진입하신 후 건물뒷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본 주차장은 법원 주차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승강기:** 공공 승강기는 1층에 위치한 아트리움 출입문쪽에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 공중 화장실은 2층에 있습니다.

**보안관(Sheriff):** 보안관 사무실은 1층에 있으며 주차장 출입구에서 아트리움 반대편에 있습니다.

## 장애인 시설 안내

**주차:** 장애인용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장애인용 화장실은 2층에 있습니다.

## 서비스 안내

**음식:** 식당 및 패스트 푸드 영업장이 근처에 있습니다. 스낵 바는 건물 1층에 있습니다.

**대중교통:** 대중교통 버스가 법원 시설 앞 정거장에서 정차합니다.

## 장애인 서비스 안내

장애인용 편의제공에 대한 정보는 민사부(Civil Divisions) 카운터에서 근무하는 법원 직원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개별 안내 서비스는 (657) 622-5760에 연락하셔서 신청하시는 경우 제공됩니다.

장애인 보조견(Service animals)을 환영합니다.

보조청각장비 또는 컴퓨터 지원에 의한 전사 장비는 청각을 상실한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미리 신청하시는 경우 언어 및 미국표준수화(ASL) 통역사가 도움을 드립니다. 법원 방문시 이러한 보조청각장비, 컴퓨터 지원에 의한 전사 장비 또는 ASL 통역사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표시된 편의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성. 법원 직원 및 보안관(Sheriff)이 귀하가 증인, 소송당사자 등으로 법원을 방문하는 경우 어디로 가실지 또한 대체 서비스를 찾으시는 경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귀하가 심리에 참여하거나 증인인 경우, 편의제공 사무실 연락처인 (657) 622-576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신청 및 제안서

법조인들과 행정 직원들은 모든 분들이 법원의 서비스와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신청과 제안을 환영합니다. 법원 내 모든 카운터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 신청서 및 제안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 카운터 직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편의제공 서비스 신청

법원의 목적 중 하나는 가능한 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고 평등하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사법 위원회(California Judicial Council)는 법원 절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특별 편의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법원 규칙(Rule of Court)를 제정하였습니다. 편의제공 신청서는 법원 내 모든 카운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신청서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고등법원, ADA 정보 웹사이트(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Orange ADA Information Website)에서 열람하시거나 사법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직접 “편의제공 신청서”라는 문서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본 신청서를 읽기 위해서는 어도비 프로그램(Adobe Acrobat Reader)이 필요합니다. 동 프로그램 다운을 위하여 여기를 클릭하세요

요. 작성된 신청서를 제출 카운터 직원에게 제출하시거나 다음 주소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Superior Court, Harbor Justice Center - Laguna Hills Facility  
**Court Administration/ADA Site Coordinator**  
23141 Moulton Parkway  
Laguna Hills, CA 92653

**미국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고등법원은 장애를 이유로 법원의 프로그램, 서비스, 혜택이나 활동에 대한 이용, 접근이나 운영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법원 관련 ADA 사안에 대한 질문, 불만이나 추가 정보 요청은 법원의 ADA 코디네이터(ADA Site Coordinator)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ADA 코디네이터는 모든 불만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불만은 차별적인 행위가 발생되었다고 주장되는 날부터 구십(90)일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THE HARBOR JUSTICE CENTER (LAGUNA HILLS)의 ADA 코디네이터의 주소와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Superior Court, Harbor Justice Center - Laguna Hills Facility  
**ADA Site Coordinator** 23141 Moulton Parkway

Laguna Hills, CA 92653  
전화: (657) 622-5760

오렌지 카운티 고등법원 및 다른 사법 센터의 시설/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는 법원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ARBOR JUSTICE CENTER - LAGUNA HILLS**

**안내문 (Instruction Sheet)**

MC-410

(법원 이용자용)

**장애인의 편의제공 신청서 및 회신**

(Per. C.R.C. 1.100)

참고로 본 안내문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1. 법원 방문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 신청서 MC-410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원 직원에게 요청하시거나 ADA 코디네이터의 연락처인 (657) 622-576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 질문이 있으신 경우 “편의 제공 신청서”의 신청인 부문에 귀하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해당하는 경우)를 남기시면 직원이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2. 작성하신 신청서를 법정이나 제출 카운터에 있는 직원에게 제출하시거나 다음 주소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최소 5일 전에 법원에 해당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Harbor Justice Center - Laguna Hills  
ADA Site Coordinator 귀하  
23141 Moulton Parkway Laguna Hills  
CA 92653-1206

법원 공무원이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할 것입니다. 법원이 귀하의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귀하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C.R.C.1.100참조). 귀하는 가능한 한 우편으로 또는 해당하는 경우 다른 형식으로 본 조치에 대한 회신을 받을 것입니다. 귀하의 신청 상태에 대하여 확실하지 않으시면, ADA 코디네이터 연락처인 (657) 622-576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개정. 2010년 7월 27일)

# Harbor Justice Center Newport Beach

4601 Jamboree Road  
NewportBeach, CA92660-2595  
(657)622-5400

## 시설 안내:

- ▶ 주차: 모든 주차는 무료입니다.
- ▶ 승강기: 승강기는 건물 북쪽 및 남쪽 끝에 있습니다. 자세한 위치는 위 링크 상의 지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중 화장실:
  - ▶ 1층: 여성 화장실과 남성 화장실이 보안관(Sheriff) 사무실 근처에 있습니다.
  - ▶ 2층: 화장실은 H4, H5 및 H12 근처에 있습니다.
- ▶ 공공 센터(Public Center): 1층에 위치한 형사 사건부(Criminal Operations) 창구 번호 8이며 휠체어 접근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시설 안내:

주차: 장애인용 주차장이 건물 앞면 출입구와 동일한 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장애인용 화장실은 1층에 보안관 사무실 근처에 있습니다.

## 서비스 안내:

음식: 음식 섭취는 시설 내에서 금지합니다. 음식 서비스 차량(catering truck)이 다음 시간 대에 주차장에서 음식을 판매합니다:

- ▶ 오전 7:30 - 8:15
- ▶ 오전 9:45 - 10:30
- ▶ 오후 12:15 - 1:00

배심원 회의실(Jury Assembly Room)에 있는 자동판매기는 배심원이 사용할 수 있음

니다.

**공중 전화**는 1층에 위치한 보안관 사무실 근처에 있습니다.

#### **장애인 서비스 안내:**

장애인용 편의제공에 대한 **정보**는 제출 카운터에서 근무하는 법원 직원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개별 안내 서비스**는 신청하시는 경우 제공됩니다.

**장애인 보조견(Service animals)**을 환영합니다.

**전화:** 장애인용 전화와 TDD(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신장치) 전화가 1층에 위치한 보안관 사무실 근처에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경우 **언어 및 미국표준수화(ASL)** 통역사가 도움을 드립니다(아래 신청서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청각장비 또는 컴퓨터 지원에 의한 전사 장비**는 청각을 상실한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미리 신청하시는 경우 **언어 및 미국표준수화(ASL)** 통역사가 도움을 드립니다. 법원 방문시 이러한 보조청각장비, 컴퓨터 지원에 의한 전사 장비 또는 ASL 통역사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링크의 편의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657-622-548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성.** 보안관(Sheriff)이 귀하가 증인, 소송당사자 등으로 법원을 방문하는 경우 어디로 가실지 또한 대체 서비스를 찾으시는 경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귀하가 심리에 참여하거나 증인인 경우, 편의제공 사무실 연락처인 657-622-54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직원이 귀하의 필요에 따른 요청에 응할 것입니다.

#### **서비스 신청 및 제안서:**

법조인들과 행정 직원들은 모든 분들이 법원의 서비스와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귀하의 신청과 제안을 환영합니다. 법원 로비 보안관 보안 창구와 법원 내 모든 카운터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 신청서 및 제안서를 작성하신 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및 제안서는 다음으로 송부하실 수 있습니다:

Orange County Superior Court  
Harbor Justice Center Newport Beach **Administration/ADA Site Coordinator**  
4601 Jamboree Road  
Newport Beach, CA 92660-2595

편의제공 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링크된 사법 위원회(Judicial Council)의 신청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편의제공 서비스 신청:**

법원의 목적 중 하나는 가능한 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고 평등하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사법 위원회(California Judicial Council)는 법원 절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특별 편의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법원 규칙(Rule of Court)를 제정하였습니다. 편의제공 신청서는 각 법정 및 법원 내 모든 카운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신청서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고등 법원, ADA 정보 웹사이트(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Orange ADA Information Website)에서 열람하시거나 사법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직접 “편의제공 신청서”라는 문서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본 신청서를 읽기 위해서는 어도비 프로그램(Adobe Acrobat Reader)이 필요합니다. 동 프로그램 다운을 위하여 여기를 클릭하세요. 귀하의 제안이나 의견을 항상 환영합니다. 작성된 신청서를 민원실(public assistance window) 직원에게 제출하시거나 다음 주소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Orange County Superior Court  
Harbor Justice Center Newport Beach **Administration/ADA Site Coordinator**  
4601 Jamboree Road  
Newport Beach, CA 92660-2595

고등법원은 귀하가 가능한 한 편리하게 법원을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법원과 보안 사무실 직원들은 귀하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도움이나 편의제공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미국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고등법원은 장애를 이유로 법원의 프로그램, 서비스, 혜택이나 활동에 대한 이용, 접근이나 운영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법원 관련 ADA 사안에 대한 질문, 불만이나 추가 정보 요청은 법원의 ADA 코디네이터(ADA Site Coordinator)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ADA 코디네이터는 모든 불만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불만은 차별적인 행위가 발생되었다고 주장되는 날부터 구십(90)일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HARBOR JUSTICE CENTER의 ADA 코디네이터의 주소와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Orange County Superior Court  
Harbor Justice Center Newport Beach **ADA Site Coordinator**  
4601 Jamboree Road Newport Beach, CA 92660-2595  
전화: (657) 622-5485

오렌지 카운티 고등법원 및 다른 사법 센터의 시설/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는 법원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ARBOR JUSTICE CENTER - NEWPORT BEACH**

### **안내문 (Instruction Sheet)**

MC-410

(법원 이용자용)

### **장애인의 편의제공 신청서 및 회신**

(Per. C.R.C. 1.100)

**참고로 본 안내문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1. 법원 방문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 신청서 MC-410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원 직원에게 요청하시거나 ADA 코디네이터의 연락처인 (657) 622-5485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 질문이 있으신 경우 “편의제공 신청서”의 신청인 부문에 귀하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해당하는 경우)를 남기시면 직원이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2. 작성하신 신청서를 법정이나 제출 카운터에 있는 직원에게 제출하시거나 다음 주소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최소 5일 전에 법원에 해당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Harbor Justice Center - Newport Beach

ADA Site Coordinator 귀하

4601 Jamboree Road Newport Beach CA 92660-2595

법원 공무원이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할 것입니다. 법원이 귀하의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귀하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C.R.C.1.100참조). 귀하는 가능한 한 우편으로 또는 해당하는 경우 다른 형식으로 본 조치에 대한 회신을 받을 것입니다. 귀하의 신청 상태에 대하여 확실하지 않으시면, ADA 코디네이터 연락처인 (657) 622-5485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개정. 2009년 11월 2일)

# Lamoreaux Justice Center

341 The City Drive

Orange, CA 92868

(657)622-5500

## 시설 안내

**일반 주차:** 주차는 시설 중앙 출입구 북서쪽에 위치한 주차장 시설에 하시며됩니다.

**승강기:** 공공 승강기는 보안 검색 장비를 통과한 후 건물 중앙 출입구 바로안쪽에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 화장실은 각 시설 1층 건물 남쪽에 있습니다. 여성용 화장실은 복도의 남쪽 끝 방향에 위치하는 데 아트리움 동쪽을 따라 가시면 있습니다. 남성용 화장실은 복도의 남쪽 끝 방향에 위치하는데, 아트리움의 서쪽을 따라 가시면 있습니다.

## 장애인 시설 안내

**주차:** 주차장은 적절한 장애인용 주차허가증을 가진 자에게 허용됩니다. 주차장은 건물 중앙 출입구의 북서쪽에 위치한 공공 주차장 건물에 위치합니다.

**화장실:** 장애인용 화장실은 건물 각 층에 있습니다.

## 서비스 안내

**공중전화**는 1층에 위치하며 서쪽 복도 끝에 있는 남성용 화장실 밖에 있습니다.

**음식:** 구내 식당은 Manchester Office Building 중앙 출입구(광장 건너편)의 북쪽에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6:30에서 오후 3:30입니다.

**어린이 회의실:** 증언을 하거나 기타 법원 관련 필요에 의해 동반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특별 회의실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안관의 보안 창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법 조력자(Family Law Facilitator):** (변호사에 의해 대리되지 않고) 당사자본인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사무실이 가족법 사안에 관련하여 설치되었습니다. 동 사무실은 1층, Self-Help Center 101호에 위치합니다.

**가정 법원 서비스 및 유언 공증 법원 서비스:** 동 사무실은 자녀 양육권/방문 계획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유언 공증, 후견인제도, 입양 및 가족 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물 서쪽 5층에 위치합니다.

**제출/신고: 청소년:** 건물 서쪽 2층에 위치합니다.

**가족법:** 건물 서쪽 7층에 위치합니다.

**유언 공증:** 건물 동쪽 7층에 위치합니다.

**법정:** Department L11는 1층에, L21 - L23은 2층에, L31 - L34는 3층에, L41 - L44는 4층에, L51 - L53은 5층에, L60 - L69는 6층에, L71 - L74는 7층에 위치합니다.

## 장애인 서비스 안내

장애인용 편의제공에 대한 정보는 1층에 있는 메인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원 서기 사무실(clerk's office)에 있는 창구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견(Service animals)을 환영합니다.

공공 TDD(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신장치) 전화/장애인용 전화는 서쪽 복도 끝에 있는 남성용 화장실 바깥쪽 1층에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경우 언어 및 미국표준수화(ASL) 통역사가 도움을 드립니다(아래 신청서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청각장비 또는 컴퓨터 지원에 의한 전사 장비는 청각을 상실한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법원 방문시 이러한 보조청각장비, 컴퓨터 지원에 의한 전사 장비 또는 ASL 통역사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링크의 편의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657-622-50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성.** 보안관(Sheriff)이 귀하가 소송당사자 등으로 법원을 방문하는 경우 어디로 가시라고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657) 622-50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직원이 귀하의 필요에 따른 요청에 응할 것입니다.

## 서비스 신청 및 제안서

법조인들과 행정 직원들은 모든 분들이 법원의 서비스와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신청과 제안을 환영합니다. 법원 행정사무실(Court Administration)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 신청서 및 제안서를 작성하신후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시거나 다음 주소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Orange County Superior Court Lamoreaux Justice Center  
**ADA Site Coordinator** 귀하  
P.O. Box 14169 Orange, CA 92863-1569  
(657) 622-5053

법원 직원이 본 신청서 작성시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편의제공 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링크된 사법 위원회(Judicial Council)의 신청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편의제공 서비스 신청

법원의 목적 중 하나는 가능한 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고 평등하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사법 위원회(California Judicial Council)는 법원 절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특별 편의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법원 규칙(Rule of Court)를 제정하였습니다. 편의제공 신청서는 법원 내 법원 서기 사무실에 있는 제출 카운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신청서는 오렌지 카운티 고등 법원 웹사이트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법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직접 “편의제공 신청서”라는 문서를 다운로드 하기 위하여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본 신청서를 읽기 위해서는 어도비 프로그램(Adobe Acrobat Reader)이 필요합니다. 동 프로그램 다운을 위하여 여기를 클릭하세요. 어떤 제안이나 의견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작성된 신청서를 민원실(public assistance window) 직원에게 제출하시거나 다음 주소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Orange County Superior Court Lamoreaux Justice Center  
**ADA Site Coordinator** 귀하  
Orange, CA 92863-1569 (657) 622-5053

고등법원은 귀하가 가능한 한 편리하게 법원을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법원과 보

안관 사무실 직원들은 귀하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도움이나 편의제공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미국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고등법원은 장애를 이유로 법원의 프로그램, 서비스, 혜택이나 활동에 대한 이용, 접근이나 운영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법원 관련 ADA 사안에 대한 질문, 불만이나 추가 정보 요청은 법원의 ADA 코디네이터(ADA Site Coordinator)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ADA 코디네이터는 모든 불만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불만은 차별적인 행위가 발생되었다고 주장되는 날부터 구십(90)일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THE LAMOREAUX JUSTICE CENTER 의 ADA 코디네이터의 주소와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Orange County Superior Court Lamoreaux Justice Center

**ADA Site Coordinator** 귀하

P.O. Box 14169 Orange, CA 92863-1569

전화: (657) 622-5053

오렌지 카운티 고등법원 및 다른 사법 센터의 시설/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는 법원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LAMOREAUX JUSTICE CENTER**

#### **안내문 (Instruction Sheet)**

MC-410

(법원 이용자용)

#### **장애인의 편의제공 신청서 및 회신**

(Per. C.R.C. 1.100)

참고로 본 안내문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1. 법원 방문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 신청서 MC-410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원 직원에게 요청하시거나 ADA 코디네이터의 연락처인 657-622-5056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 질문이 있으신 경우 “편의제공 신청서”의 신청인 부문에 귀하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해당하는 경우)를 남기시면 직원이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2. 작성하신 신청서를 법정이나 제출 카운터에 있는 직원에게 제출하시거나 다음 주소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최소 5일 전에 법원에 해당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Lamoreaux Justice Center

ADA Site Coordinator 귀하

P.O. Box 14169 Orange CA 92863-1569

법원 공무원이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할 것입니다. 법원이 귀하의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귀하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C.R.C.1.100참조). 귀하는 가능한 한 우편으로 또는 해당하는 경우 다른 형식으로 본 조치에 대한 회신을 받을 것입니다. 귀하의 신청 상태에 대하여 확실하지 않으면, ADA 코디네이터 연락처인 657-622-5056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개정. 2009년 11월 23일)

# North Justice Center

1275 N. Berkeley Avenue

Fullerton, CA 92832

(657)622-5600

## 시설 안내

**일반 주차:** 주차는 무료입니다.

**승강기:** 공공 승강기는 건물의 서관 및 중앙에서 운행합니다.

**공중 화장실 - 남쪽 빌딩:** 화장실은 1층, 3층 및 4층에 있습니다.

**북쪽 빌딩:** 화장실은 3층과 4층에 있습니다.

## 장애인 시설 안내

**주차:** 위층과 아래층 주차장에서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쪽빌딩 1층, 3층 및 4층에 있습니다.

## 서비스 안내

**공중전화:** 남쪽빌딩 1층에, 중앙 3층에 있습니다.

**음식:** 도보 거리 내에 패스트 푸드 식당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건물 내 음식 또는 음료수 섭취는 금지됩니다. 배심원이 이용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가 있습니다.

## 장애인 서비스 안내

장애인용 편의제공에 대한 정보는 법원 서기 사무실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견(Service animals)을 환영합니다.



보조청각장비 또는 컴퓨터 지원에 의한 전사 장비는 청각을 상실한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법원 방문시 이러한 보조청각장비, 컴퓨터 지원에 의한 전사 장비 또는 ASL 통역사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링크의 편의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성.** 보안관(Sheriff)이 귀하가 증인, 소송당사자 등으로 법원을 방문하는 경우 어디로 가실지 또한 대체 서비스를 찾으시는 경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귀하가 심리에 참여하거나 증인인 경우, 편의제공 사무실 연락처인 (657) 622-564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직원이 귀하가 신청하는 경사로(ramp) 또는 다른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 서비스 신청 및 제안서

법조인들과 행정 직원들은 모든 분들이 법원의 서비스와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신청과 제안을 환영합니다. 3층 315실에 위치한 행정실 (Administration)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 신청서 및 제안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및 제안서는 다음 주소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Orange County Superior Court North Justice Center  
**ADA Site Coordinator**  
P.O. Box 5000 Fullerton, CA 92838-0500  
(657) 622-5649

편의제공 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링크된 사법 위원회(Judicial Council)의 신청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편의제공 서비스 신청

법원의 목적 중 하나는 가능한 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고 평등하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사법 위원회(California Judicial Council)는 법원 절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특별 편의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법원 규칙(Rule of Court)를 제정하였습니다. 편의제공 신청서는 법원 로비 및 법원 내 모든 카운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신청서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고등 법원, ADA 정보 웹사이트(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Orange ADA Information Website)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법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직접 “편

의제공 신청서”라는 문서를 다운로드 하기 위하여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본 신청서를 읽기 위해서는 어도비 프로그램(Adobe Acrobat Reader)이 필요합니다. 동 프로그램 다운을 위하여 여기를 클릭하세요. 어떤 제안이나 의견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작성된 신청서를 민원실(public assistance window) 직원에게 제출하시거나 다음 주소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Orange County Superior Court North Justice Center

**ADA Site Coordinator**

P.O. Box 5000 Fullerton, CA 92838-0500

(657) 622-5649

고등법원은 귀하가 가능한 한 편리하게 법원을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법원과 보안 사무실 직원들은 귀하에게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도움이나 편의제공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미국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고등법원은 장애를 이유로 법원의 프로그램, 서비스, 혜택이나 활동에 대한 이용, 접근이나 운영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법원 관련 ADA 사안에 대한 질문, 불만이나 추가 정보 요청은 법원의 ADA 코디네이터(ADA Site Coordinator)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ADA 코디네이터는 모든 불만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불만은 차별적인 행위가 발생되었다고 주장되는 날부터 구십(90)일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The North Justice Center

ADA Site Coordinator의 주소와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275 N. Berkeley Ave. Fullerton, CA 92832

전화: (657) 622-5649

오렌지 카운티 고등법원 및 다른 사법 센터의 시설/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는 법원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NORTH JUSTICE CENTER**

**안내문 (Instruction Sheet)**

MC-410

(법원 이용자용)

## 장애인의 편의제공 신청서 및 회신

(Per. C.R.C. 1.100)

참고로 본 안내문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1. 법원 방문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 신청서 MC-410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원 직원에게 요청하시거나 ADA 코디네이터의 연락처인 (657) 622-564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 질문이 있으신 경우 “편의제공 신청서”의 신청인 부문에 귀하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해당하는 경우)를 남기시면 직원이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2. 작성하신 신청서를 법정이나 제출 카운터에 있는 직원에게 제출하시거나 다음 주소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최소 5일 전에 법원에 해당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North Justice Center

ADA Site Coordinator 귀하

1275 N. Berkeley Ave. Fullerton, CA 92832

법원 공무원이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할 것입니다. 법원이 귀하의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귀하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C.R.C.1.100참조). 귀하는 가능한 한 우편으로 또는 해당하는 경우 다른 형식으로 본 조치에 대한 회신을 받을 것입니다. 귀하의 신청 상태에 대하여 확실하지 않으시면, ADA 코디네이터 연락처인 (657) 622-564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개정. 2009년 10월 8일)

# West Justice Center

8141 13th Street

Westminster, CA 92683

(657) 622-5900

## 시설 안내

**일반 주차:** 무료 주차는 공공 도서관 근처 13번가에 위치한 법원 건물 건너 편 13번가와 All American Way의 코너에서 가능합니다.

**승강기:** 공공 승강기는 건물 동쪽 끝, 민사/소액 청구 사건부(Civil/Small Claims department)와 징수부(Collections department) 사이에 위치합니다.

**공중 화장실:** 공중 화장실은 건물 전체 편리한 곳에 위치합니다. 즉, 1층에는 중앙 로비 근처에, 1층과 2층 모두 건물 북쪽 끝에 위치합니다.

**공중전화**는 배심원 회의실 안에 있으며 2층에는 W13 바깥쪽에 위치합니다.

## 장애인 시설 안내

**주차:** 허가증을 가진 장애인은 13번가 및 13번가와 All American Way 코너에 위치한 메인 주차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표시된 공간은 15번가와 Jackson가 근처에 위치한 북쪽 및 서쪽 주차장입니다.

**장애인 배심원용 (Juror) 주차장:** 이에 대한 정보는 Office of the Jury Commissioner의 연락처인 (714) 834-70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모든 화장실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으며 건물 전체에 있습니다. 주요 화장실 시설이 중앙 로비 근처에 있습니다. 다른 화장실 역시 1층과 2층 건물 북쪽에 있습니다.

## 장애인 서비스 안내

장애인용 편의제공에 대한 정보는 제출 카운터 직원에게서 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원 직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안내 서비스는 신청하시는 경우 제공됩니다.

장애인 보조견(Service animals)을 환영합니다.

전화: 장애인용 전화가 배심원 회의실에 있습니다.

**TDD(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신장치) 유료 전화**는 법원 행정실(Court Administration)에 있습니다.

**언어 및 미국표준수화(ASL):** 신청하시는 경우 통역사가 도움을 드립니다(아래 신청서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청각장비 또는 컴퓨터 지원에 의한 전사 장비**는 청각을 상실한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법원 방문시 이러한 보조청각장비, 컴퓨터 지원에 의한 전사 장비 또는 ASL 통역사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링크의 편의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657-622-59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성.** 보안관(Sheriff)이 귀하가 증인, 소송당사자 등으로 법원을 방문하는 경우 어디로 가실지 또한 대체 서비스를 찾으시는 경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귀하가 심리에 참여하거나 증인인 경우, 편의제공 사무실 연락처인 (657) 622-59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직원이 귀하의 필요에 따른 요청에 응할 것입니다.

## 서비스 신청 및 제안서

법조인들과 행정 직원들은 모든 분들이 법원의 서비스와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신청과 제안을 환영합니다. 안내 데스크 또는 법원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 신청서 및 제안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및 제안서는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제출하시거나 다음 주소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West Justice Center

**Court Administrator/ADA Site Coordinator**

8141 13<sup>th</sup> Street Westminster, CA 92683

편의제공 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링크된 사법 위원회(Judicial Council)의 신청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편의제공 서비스 신청

법원의 목적 중 하나는 가능한 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고 평등하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사법 위원회(California Judicial Council)는 법원 절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특별 편의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법원 규칙(Rule of Court)를 제정하였습니다. 편의제공 신청서는 법원 서기 사무실 및 법원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신청서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고등 법원, ADA 정보 웹사이트(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Orange ADA Information Website)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법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직접 “편의 제공 신청서”라는 문서를 다운로드 하기 위하여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본 신청서를 읽기 위해서는 어도비 프로그램 (Adobe Acrobat Reader)이 필요합니다. 동 프로그램 다운을 위하여 여기를 클릭하세요. 어떤 제안이나 의견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작성된 신청서를 민원실(public assistance window) 직원에게 제출하시거나 다음 주소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West Justice Center

**Court Administrator/ADA Site Coordinator**

8141 13<sup>th</sup> Street Westminster, CA 92683

## 미국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고등법원은 장애를 이유로 법원의 프로그램, 서비스, 혜택이나 활동에 대한 이용, 접근이나 운영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법원 관련 ADA 사안에 대한 질문, 불만이나 추가 정보 요청은 법원의 ADA 코디네이터(ADA Site Coordinator)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ADA 코디네이터는 모든 불만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불만은 차별적인 행위가 발생되었다고 주장되는 날부터 구십(90)일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WEST JUSTICE CENTER의 ADA 코디네이터의 주소와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Orange County Superior Court West Justice Center

8141 13<sup>th</sup> Street Westminster, CA 92683

전화: (657) 622-5944

팩스: (657) 622-8066

오렌지 카운티 고등법원 및 다른 사법 센터의 시설/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는 법원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내문 (Instruction Sheet)**

MC-410  
(법원 이용자용)

**장애인의 편의제공 신청서 및 회신**  
(Per. C.R.C. 1.100)

**참고로 본 안내문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1. 법원 방문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 신청서 MC-410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원 직원에게 요청하시거나 ADA 코디네이터의 연락처인 657-622-594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 질문이 있으신 경우 “편의제공 신청서”의 신청인 부문에 귀하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해당하는 경우)를 남기시면 직원이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2. 작성하신 신청서를 법정이나 제출 카운터에 있는 직원에게 제출하시거나 다음 주소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최소 5일 전에 법원에 해당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West Justice Center  
ADA Site Coordinator 귀하  
8141 13<sup>th</sup>Street Westminster, CA 926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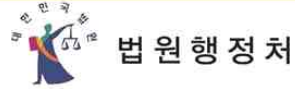
법원 공무원이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할 것입니다. 법원이 귀하의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귀하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C.R.C.1.100참조). 귀하는 가능한 한 우편으로 또는 해당하는 경우 다른 형식으로 본 조치에 대한 회신을 받을 것입니다. 귀하의 신청 상태에 대하여 확실하지 않으면, ADA 코디네이터 연락처인 657-622-594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개정. 2009년 11월 9일)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김현주,  
변호사 박은수와  
함께하는 토크쇼

조금 다를 뿐입니다...  
나와 너,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에 초대합니다

일시: 2013. 11. 11(월) / 장소: 00지방법원



## 무대등장 & 인사말







## 강사소개 : 박은수



5

## 강사소개 : 박은수



6

## 오늘의 주제



7

## 오늘의 주제



인식개선교육 의무  
'법'에도 있어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 소수자 권리보호는  
법원의 의무”

8

## 강사소개 : 김현주



9

## 강사소개 : 김현주



10

## 강사소개 : 김현주



11

## 강사소개 : 김현주



12



## 장애인차별 사례 - 용어



15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5개 장애유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만성신부전증 및 신장이식자
		심장장애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심장기능 이상자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기능 이상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질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정신적 장애	발달 장애	자폐성 장애	소아자폐, 비전형적 자폐 등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

16

## 장애인차별 사례 - 용어



17

## 용어 - 미국의 DAA, ADA 논쟁



President George Bush signs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t the White House July 26, 1990. (file photo © AP/WWP)

Disabled American Act → American with Disability Act → Differently Able Person

18



## 장애인차별 사례 - 실생활



19

## 장애인차별 사례 - 실생활



'오아시스' 공주 역의 문소리 씨:  
뇌성마비 장애인 역할  
뇌성마비는 지적 능력의 문제 없음



프랭클린 루즈벨트 (1882~1945, 미국 32대 대통령)

20

## 장애인차별 사례 - 실생활



21

## 장애인식개선 - 장애도 개성



Stephen Hawking



Stevie Wonder



오토타케ひろただ



강원래



이희아 -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지선



김세진 - 절단장애 /수영국가대표



김진호 - 자폐성장애 /수영선수

22

## 장애인식개선 – 당신도 장애인?



“안경이 발명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세종대왕 1439년(세종21)  
안질로 시각장애 발생..  
시각에 장애가 있었으나  
1443년 훈민정음 완성 발표

23

## 장애인식개선 – 당신도 장애인?



24

## 장애인식개선 – 함께 사는 세상

### “Barrier free → Universal Design”

“장애인에게 편리하면 모두에게 편리하다”



25

## 장애인식개선 – 동정은 NO!!, “당연한 권리보장”



26

## 장애인식개선 – 장애인의 권리보장!!

“Nothing about us without us”

“Make the Right real”



27

## 법원의 역할 – 소수자 권리보장

정부나 국회는 선출된 권력을 통해서 구성됩니다.  
우리 헌법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사법부를 구성하도록 규정한 것은

**바로 소수자의 권리가 다수의 권력에 의해  
무시되지 않도록**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사법부에게 맡겼다는 뜻입니다.**



憲法

28

## 법원의 역할 - 사법지원 가이드라인



29

## 법원의 역할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 까지 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0

장애체험을 권해드립니다.



31



“**차이**가 **차별**이  
되지않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동등한 인권이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보다 나은 <장애인식 개선교육> 시행을 위한 설문조사**

※ 총 10개의 짧은 객관식 설문입니다. 해당 항목에 “√” 또는 “○” 표시를 해 주세요.

본 설문조사는 통계·분석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1. 귀하께서는 이번 교육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법원의 방침 또는 상관의 지시라서
- ② 동료 등 주위의 권유로
- ③ 연예인 등 명사의 출연에 흥미를 느껴서
- ④ 포스터 또는 언론 기사 등을 보고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 ⑤ 평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 ⑥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 ⑦ 기타 ( )

2. 귀하께서는 본 교육이 법률에 정해진 교육이라는 점을 알고 계셨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3. 이번 교육으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나 차별 사례들
- ② 장애인의 권익 보호가 법원의 의무라는 사실
- ③ 장애는 ‘차이’에 불과하고 ‘개성’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
- ④ 장애인에게 편리하면 모두에게 편리하다는 점
- ⑤ 장애인에 대해 ‘동정’이 아니라 ‘그들의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
- ⑥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발간돼 있다는 사실
- ⑦ 잘 모르겠다.

4. 이번 교육 내용 중 법원공무원 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괄호 안에 3순위까지 순위를 매겨 주세요)

- 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들 ( )
- ② 지체, 시각, 청각 등 장애유형별 차별의 실제 사례 ( )
- ③ 장애인의 권익 보호가 법원의 의무라는 사실 ( )
- ④ “장애도 하나의 개성이다”, “장애인에게 편리하면 모두에게 편리하다” 등 장애에



-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점의 정립 ( )
- ⑤ 장애인에 대해 '동정'이 아니라 '그들의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 ( )
- ⑥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사실과 활용 팁 ( )
- ⑦ 잘 모르겠다.

5. 귀하께서는 이번 교육을 받기 전에 법원행정처에서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책자를 발간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6. 오늘과 같은 인식개선교육이 사법부에서 확대시행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6-1.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면(위 6번 질문에서 ①번 또는 ②번을 택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법원의 의무이므로
- ② 법원에서 하는 일(직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 ③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움이 되므로
- ④ 법원의 이미지 제고에 좋기 때문에
- ⑤ 법을 지키는 것은 법원의 의무이므로
- ⑥ 잘 모르겠다.

7. 귀하께서는 이번 교육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8. “토크쇼” 방식이 “1인 강연” 방식보다 집중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9. 이번 교육에서 특히 어떤 점이 좋았다고 느끼셨습니까?(2개까지 복수 응답)

- ① 유명 연예인과 명사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 ② 기획이 참신해서 좋았다.
- ③ 장애 인식 개선과 관련해 모르는 것을 많이 알게 돼 좋았다.
- ④ 하고 있는 일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좋았다.
- ⑤ 기타 ( )

10. 이번 교육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까지 복수 응답)

- ① 기획은 참신했으나 1인 강사 교육보다 산만한 것 같았다.
- ② 음향, 배경 등 무대장치에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다.
- ③ 재미는 있었지만 알맹이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 ④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다.
- ⑤ 기타 ( )

※ 다음은 본 설문조사의 원활한 통계·활용을 위한 질문입니다.  
(통계·분석·활용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i.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 ② 여

ii.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iii. 귀하의 법원 근무 연차는?

- ① 5년 이하 ② 5~10년 ③ 10~15년 ④ 15~20년 ⑤ 20년 이상

※ 기타 이번 장애인식 개선교육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 감사합니다 §§

부록 5. 장애인식 개선교육 설문조사 통계표



※ 조사·통계 분석 기관 : 리서치뷰

※ 설문 항목별 교차분석 통계 등 더 자세한 로-데이터는 법원행정처에 있습니다.

1. 단순 복수응답 문항 조사 결과

복수응답 빈도표		응답		케이스 퍼센트
		N	퍼센트	
교육 참여 동기	법원 방침, 상관 지시	574	39.0	54.0
	주위 권유	131	8.9	12.3
	연예인 출연	276	18.8	26.0
	포스터, 언론보도	134	9.1	12.6
	평상시 관심	257	17.5	24.2
	업무상 필요	99	6.7	9.3
합계		1471	100.0	138.4
새롭게 알게 된 점	장애인 차별적 용어 및 사례	307	16.4	29.2
	장애인 권익 보호는 법원의 의무	233	12.4	22.2
	장애는 '개성'이고, '차이'에 불과	352	18.8	33.5
	장애인에게 편리하면 모두에게 편리	354	18.9	33.7
	'동정'이 아니라 '권리'가 필요하다는 인식	435	23.2	41.4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 발간	176	9.4	16.7
	잘 모르겠다	16	0.9	1.5
합계		1873	100.0	178.2
법원 직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장애인 차별 용어	399	13.8	37.9
	장애유형별 차별 사례	319	11.0	30.3
	장애인 권익 보호는 법원의 의무	605	20.9	57.5
	장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점의 정립	664	23.0	63.1
	'동정'이 아니라 '권리'가 필요하다는 인식	664	23.0	63.1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 발간	228	7.9	21.7
	및 활용 팁	12	0.4	1.1
합계		2891	100.0	274.5
교육 확대 필요한 이유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가 법원 의무라	453	34.1	49.2
	서 직무에 도움되므로	86	6.5	9.3

	사회적 약자 이해에 도움되므로	699	52.6	76.0
	법원 이미지가 좋아지므로	38	2.9	4.1
	준법은 법원의 의무이므로	42	3.2	4.6
	잘 모르겠다	11	0.8	1.2
	합계	1329	100.0	144.5
좋았던 점	연예인을 볼 수 있었던 점	372	25.2	35.5
	기획 참신	502	34.0	47.9
	모르는 것을 많이 알게 된 점	564	38.2	53.8
	직무에 도움된 점	34	2.3	3.2
	기타	6	0.4	0.6
	합계	1478	100.0	141.0
보완해야 할 점	산만함	145	15.5	17.7
	음향, 배경 등 무대장치	286	30.6	34.9
	내용 부실(알맹이 부족)	203	21.7	24.8
	짧은 시간	204	21.8	24.9
	기타	98	10.5	12.0
	합계	936	100.0	114.1

## 2. 단수 응답 또는 3순위 복수응답 문항 조사 결과

빈도표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법정 의무교육 사전 인지 여부	그렇다	407	37.2	37.7	37.7
	아니다	674	61.6	62.3	100.0
	합계	1081	98.8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3	1.2		
	합계	1094	100.0		
법원 직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1순위	장애인 차별 용어	182	16.6	17.3	17.3
	장애유형별 차별 사례	56	5.1	5.3	22.6
	장애인 권익 보호는 법원의 의무	255	23.3	24.2	46.8
	장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점의 정립	306	28.0	29.1	75.9
	'동정'이 아니라 '권리'가 필요하다는 인식	202	18.5	19.2	95.1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 발간 및 활용 팁	40	3.7	3.8	98.9
	잘 모르겠다.	12	1.1	1.1	100.0
	합계	1053	96.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1	3.7		
	합계	1094	100.0		

법원 직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2순위	장애인 차별 용어	89	8.1	9.5	9.5
	장애유형별 차별 사례	118	10.8	12.5	22.0
	장애인 권익 보호는 법원의 의무	162	14.8	17.2	39.2
	장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점의 정립	191	17.5	20.3	59.5
	'동정'이 아니라 '권리'가 필요하다는 인식	296	27.1	31.5	91.0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 발간 및 활용 팁	85	7.8	9.0	100.0
	합계	941	8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53	14.0		
합계		1094	100.0		
법원 직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3순위	장애인 차별 용어	128	11.7	14.3	14.3
	장애유형별 차별 사례	145	13.3	16.2	30.4
	장애인 권익 보호는 법원의 의무	188	17.2	21.0	51.4
	장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점의 정립	167	15.3	18.6	70.0
	'동정'이 아니라 '권리'가 필요하다는 인식	166	15.2	18.5	88.5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 발간 및 활용 팁	103	9.4	11.5	100.0
	합계	897	82.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97	18.0		
합계		1094	100.0		
가이드라인' 발간 사전 인지도 여부	그렇다	268	24.5	25.2	25.2
	아니다	795	72.7	74.8	100.0
	합계	1063	97.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1	2.8		
합계		1094	100.0		
교육 확대 필요성 여부	매우 그렇다	449	41.0	42.7	42.7
	조금 그렇다	415	37.9	39.4	82.1
	보통이다	162	14.8	15.4	97.5
	조금 그렇지 않다	20	1.8	1.9	99.4
	매우 그렇지 않다	6	.5	0.6	100.0
합계	1052	96.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2	3.8		
합계		1094	100.0		
장애인식 개선	매우 그렇다	367	33.5	34.9	34.9

교육 효과 평가	조금 그렇다	527	48.2	50.1	85.0
	보통이다	144	13.2	13.7	98.7
	조금 그렇지 않다	14	1.3	1.3	100.0
	합계	1052	96.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2	3.8		
합계		1094	100.0		
교육 집중도 평가	매우 그렇다	472	43.1	45.7	45.7
	조금 그렇다	333	30.4	32.3	78.0
	보통이다	194	17.7	18.8	96.8
	조금 그렇지 않다	27	2.5	2.6	99.4
	매우 그렇지 않다	6	.5	0.6	100.0
	합계	1032	94.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62	5.7		
합계		1094	100.0		
성별	남	619	56.6	58.8	58.8
	여	433	39.6	41.2	100.0
	합계	1052	96.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2	3.8		
합계		1094	100.0		
연령	20대	70	6.4	6.7	6.7
	30대	443	40.5	42.1	48.8
	40대	361	33.0	34.3	83.1
	50대	176	16.1	16.7	99.8
	60대이상	2	.2	0.2	100.0
	합계	1052	96.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2	3.8		
합계		1094	100.0		
근무 연수	5년 이하	249	22.8	23.8	23.8
	5~10년	255	23.3	24.4	48.1
	10~15년	208	19.0	19.9	68.0
	15~20년	130	11.9	12.4	80.4
	20년 이상	205	18.7	19.6	100.0
	합계	1047	95.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7	4.3		
합계		1094	100.0		
소속	서울중앙지법 고등법원	207	18.9	18.9	18.9
	인천지법	192	17.6	17.6	36.5
	대법원	339	31.0	31.0	67.5
	가정법원	62	5.7	5.7	73.1
	행정법원	62	5.7	5.7	78.8
	수원지법	72	6.6	6.6	85.4
	동부지법	68	6.2	6.2	91.6
	남부지법	92	8.4	8.4	100.0
	합계	1094	100.0	100.0	

### 3. 복수 응답 빈도

복수응답 빈도표		응답		케이스
		N	퍼센트	퍼센트
교육 참여 동기	법원 방침, 상관 지시	574	39.0%	54.0%
	주위 권유	131	8.9%	12.3%
	연예인 출연	276	18.8%	26.0%
	포스터, 언론보도	134	9.1%	12.6%
	평상시 관심	257	17.5%	24.2%
	업무상 필요	99	6.7%	9.3%
합계		1471	100.0%	138.4%
새롭게 알게 된 점	장애인 차별적 용어 및 사례	307	16.4%	29.2%
	장애인 권익 보호는 법원의 의무	233	12.4%	22.2%
	장애는 '개성'이고, '차이'에 불과	352	18.8%	33.5%
	장애인에게 편리하면 모두에게 편리	354	18.9%	33.7%
	'동정'이 아니라 '권리'가 필요하다는 인식	435	23.2%	41.4%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 발간	176	9.4%	16.7%
	잘 모르겠다	16	.9%	1.5%
합계		1873	100.0%	178.2%
법원직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장애인 차별 용어	399	13.8%	37.9%
	장애유형별 차별 사례	319	11.0%	30.3%
	장애인 권익 보호는 법원의 의무	605	20.9%	57.5%
	장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점의 정립	664	23.0%	63.1%
	'동정'이 아니라 '권리'가 필요하다는 인식	664	23.0%	63.1%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 발간 및 활용 팁	228	7.9%	21.7%
	잘 모르겠다.	12	.4%	1.1%
합계		2891	100.0%	274.5%
교육 확대 필요한 이유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가 법원 의무라서	453	34.1%	49.2%
	직무에 도움되므로	86	6.5%	9.3%

	사회적 약자 이해에 도움되므로	699	52.6%	76.0%
	법원 이미지가 좋아지므로	38	2.9%	4.1%
	준법은 법원의 의무이므로	42	3.2%	4.6%
	잘 모르겠다	11	.8%	1.2%
	합계	1329	100.0%	144.5%
좋았던 점	연예인을 볼 수 있었던 점	372	25.2%	35.5%
	기획 참신	502	34.0%	47.9%
	모르는 것을 많이 알게 된 점	564	38.2%	53.8%
	직무에 도움된 점	34	2.3%	3.2%
	기타	6	.4%	.6%
	합계	1478	100.0%	141.0%
보완해야 할 점	산만함	145	15.5%	17.7%
	음향, 배경 등 무대장치	286	30.6%	34.9%
	내용 부실(알맹이 부족)	203	21.7%	24.8%
	짧은 시간	204	21.8%	24.9%
	기타	98	10.5%	12.0%
	합계	936	100.0%	114.1%

#### 4. 단순 빈도

빈도표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법정 의무교육 사전 인지 여부	그렇다	407	37.2	37.7	37.7
	아니다	674	61.6	62.3	100.0
	합계	1081	98.8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3	1.2		
	합계	1094	100.0		
법원 직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1순위	장애인 차별 용어	182	16.6	17.3	17.3
	장애유형별 차별 사례	56	5.1	5.3	22.6
	장애인 권익 보호는 법원의 의무	255	23.3	24.2	46.8
	장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점의 정립	306	28.0	29.1	75.9
	'동정'이 아니라 '권리'가 필요하다는 인식	202	18.5	19.2	95.1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 발간 및 활용 팁	40	3.7	3.8	98.9
	잘 모르겠다.	12	1.1	1.1	100.0
	합계	1053	96.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1	3.7		
	합계	1094	100.0		
법원 직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2순위	장애인 차별 용어	89	8.1	9.5	9.5
	장애유형별 차별 사례	118	10.8	12.5	22.0
	장애인 권익 보호는 법원의 의무				
	장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점의 정립	191	17.5	20.3	59.5
	'동정'이 아니라 '권리'가 필요하다는 인식	296	27.1	31.5	91.0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 발간 및 활용 팁	85	7.8	9.0	100.0
	합계	941	8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53	14.0	
	합계	1094	100.0		
법원 직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3순위	장애인 차별 용어	128	11.7	14.3	14.3
	장애유형별 차별 사례	145	13.3	16.2	30.4
	장애인 권익 보호는 법원의 의무				
	장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점의 정립	167	15.3	18.6	70.0
	'동정'이 아니라 '권리'가 필요하다는 인식	166	15.2	18.5	88.5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 발간 및 활용 팁	103	9.4	11.5	100.0
	합계	897	82.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97	18.0	
	합계	1094	100.0		
가이드라인' 발간 사전 인지 여부	그렇다	268	24.5	25.2	25.2
	아니다	795	72.7	74.8	100.0
	합계	1063	97.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1	2.8		
	합계	1094	100.0		
교육 확대 필요성 여부	매우 그렇다	449	41.0	42.7	42.7
	조금 그렇다	415	37.9	39.4	82.1
	보통이다	162	14.8	15.4	97.5
	조금 그렇지 않다	20	1.8	1.9	99.4
	매우 그렇지 않다	6	.5	.6	100.0
	합계	1052	96.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2	3.8		

합계		1094	100.0		
장애인식 개선교육 효과 평가	매우 그렇다	367	33.5	34.9	34.9
	조금 그렇다	527	48.2	50.1	85.0
	보통이다	144	13.2	13.7	98.7
	조금 그렇지 않다	14	1.3	1.3	100.0
	합계	1052	96.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2	3.8		
합계		1094	100.0		
교육 집중도 평가	매우 그렇다	472	43.1	45.7	45.7
	조금 그렇다	333	30.4	32.3	78.0
	보통이다	194	17.7	18.8	96.8
	조금 그렇지 않다	27	2.5	2.6	99.4
	매우 그렇지 않다	6	.5	.6	100.0
	합계	1032	94.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62	5.7		
합계		1094	100.0		
성별	남	619	56.6	58.8	58.8
	여	433	39.6	41.2	100.0
	합계	1052	96.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2	3.8		
합계		1094	100.0		
연령	20대	70	6.4	6.7	6.7
	30대	443	40.5	42.1	48.8
	40대	361	33.0	34.3	83.1
	50대	176	16.1	16.7	99.8
	60대 이상	2	.2	.2	100.0
	합계	1052	96.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2	3.8		
합계		1094	100.0		
근무 연수	5년 이하	249	22.8	23.8	23.8
	5~10년	255	23.3	24.4	48.1
	10~15년	208	19.0	19.9	68.0
	15~20년	130	11.9	12.4	80.4
	20년 이상	205	18.7	19.6	100.0
	합계	1047	95.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7	4.3		
합계		1094	100.0		
소속	서울중앙지법 고등법원	207	18.9	18.9	18.9
	인천지법	192	17.6	17.6	36.5
	대법원	339	31.0	31.0	67.5
	가정법원	62	5.7	5.7	73.1
	행정법원	62	5.7	5.7	78.8
	수원지법	72	6.6	6.6	85.4
	동부지법	68	6.2	6.2	91.6

	남부지법	92	8.4	8.4	100.0
	합계	1094	100.0	100.0	

부록 6. 유형별/등급별 등록장애인 현황(보건복지부, 2012년 12월 말 기준)

장애 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합계
지체	36,908	74,574	163,859	260,357	392,731	393,702	1,322,131
시각	33,135	7,742	12,750	13,727	21,183	164,027	252,564
청각	6,698	47,085	43,875	57,156	64,216	39,559	258,589
언어	91	1,765	7,440	8,441	4	2	17,743
지적	49,252	58,928	65,076	1	0	0	173,257
뇌병변	59,672	60,203	62,353	31,695	24,432	19,442	257,797
자폐성	8,620	5,628	2,658	0	0	0	16,906
정신	3,682	35,057	55,887	6	3	3	94,638
신장	3,282	46,048	52	460	13,592	0	63,434
심장	234	1,037	6,029	22	419	3	7,744
호흡기	2,158	3,602	8,089	2	28	0	13,879
간	329	633	800	173	6,653	0	8,588
안면	102	414	926	1,244	21	2	2,709
장루. 요루	9	119	808	5,708	6,730	0	13,374
간질	112	493	1,804	5,397	0	0	7,806
합계	204,284	343,328	432,406	384,389	530,012	616,740	2,511,159